

계간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3호(통권 제7호)

2011년 8월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차]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5
I. 재정정책 동향	7
1. 2010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	7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9
3. 최근 재정상황	14
II. 이슈 및 분석	15
1. 주요국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 송호신	15
2. 유럽의 재정위기 업데이트 / 이은경	28
III. 국내외 보고서	45
1. 주요 보고서 요약	45
2. 보고서 목록	58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73
I. 주요국 동향	75
II. 미국 (FY2011: 2010.10~2011.9)	78
III. 일본 (FY2011: 2011.4~2012.3)	92
IV. 영국 (FY2011-12: 2011.4~2012.3)	110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28
VI. 독일 (FY2011: 2011.1~2011.12)	143
VII.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158
VIII. 호주 (FY2011-12: 2011.7~2012.6)	175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191
I. 미국 (2011년 5월 기준)	193
II. 일본 (2011년 5월 기준)	198
III. 영국 (2011년 6월 기준)	204
IV. 프랑스 (2011년 5월 기준)	209
V. 독일 (2011년 6월 기준)	213
VI. 캐나다 (2011년 5월 기준)	219
VII. 호주 (2011년 5월 기준)	224

제 1 부 재정정책 동향과 이슈

Ⅰ. 재정정책 동향

Ⅱ. 이슈 및 분석

Ⅲ. 국내외 보고서

I

재정정책 동향*

1. 2010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 기획재정부가 2010년도 예산사업(38개 부처, 482개 사업, 51.3조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33개 사업은 '우수' 이상으로, 132개 사업은 '미흡' 이하로 평가됨
-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재정부가 이를 점검하여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10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등급별 사업 비중

평가대상연도	우수 이상	보통	미흡 이하
'09년도	26개(4.7%)	393개(71.2%)	132개(24.1%)
'10년도	33개(6.8%)	317개(65.8%)	132개(27.4%)

평가단계별 점수 (100점 만점 기준)

총점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환류
62.7	92.0	70.1	65.9	55.1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성과관리 역량 제고와 재정운용의 효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환류해 나갈 계획임
 -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예산을 10% 이상 삭감
 -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부처의 2012년도

*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hspark@kipf.re.kr)

- 성과계획서를 보완하여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
- 자율평가의 중요 요소인 성과지표 및 지표의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부처 사업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

2. 2012회계연도 예산 편성

- **(재정전략회의)** 4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2011~2015년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 속도가 빠르고 양호한 모습
 - 그러나 잠재성장률 저하,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중장기 위협요인이 상존하여 건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히, 향후 수년간은 내년도 선거일정, 무상복지 논쟁 등을 감안시 중장기 재정건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임
 -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할 필요

- **(편성지침)** 4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4월말 각 부처에 통보됨
 - 2012년도에는 안정적 경제운용과 미래대비를 위해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
 - 2012년도에는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 마련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 억제 등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할 예정
 - 2012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하여 재정수지가 2011년 (GDP 대비 $\Delta 2.0\%$)보다 개선되도록 재정을 운용
 - 재정수반 법률에 대한 정부 내 협의절차 강화 등 재정규율 강화로 불합리한 지출소요를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
 -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 관리도 강화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략적으로 지원
 -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 지원
 - 녹색성장과 미래대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 국민안전과 국격 제고에 중점
 - 아울러, 재정규율 강화 및 지출 효율화, 현장밀착형 재정운용 등 재정운용 방식도 개선해 나갈 예정
 - 2012년 주요 신규 도입 제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R&D예산편성 절차 변경
 - 국유재산관리기금 신설로 국유재산 관리 강화
 - 보조사업 존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효율화
- **(지방재정협의회)** 기획재정부는 5.23~6.23까지 1개월 동안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
- 15개 시·도를 당일 일정으로 방문해 중앙·지방 간 재정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현안에 관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
 - 이번 협의회는 금년 처음 시행한 ‘찾아가는 예산실’을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한 것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현장점검까지 병행하여 현장밀착형 예산편성을 추진
 - 이번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현안과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
 - 현장점검에서는 국책사업과 지역의 대표사업, 지역간 갈등사업 현장 등을 방문해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
-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 기획재정부는 KDI와 공동으로 6.22일부터 6.29일까지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2년 예산편성을 위한 「열린 나라살림 토론회」를 개최
- 총괄·복지·고용 등 13개 분야별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국회,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부처 및 재정당국 담당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일반국민도 질의·토론을 통해 참여
 - 금번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중점 논의

-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및 중장기 재정위험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
- 최근 주요 정책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에 대하여 국민참여와 정책수혜자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

○ 주요 토론과제

- 총괄·총량 : 2011~2015년 재정총량·재원배분 등 중기재정운용방향
- 교육 : 대학지원 등 교육분야 재정운용방향, 평생학습사회 구현 방안
- 보건·복지 : 향후 복지분야 재정투자방향,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 고용 : 청년창업·창직 등 고용지원 방향, 정부 직접지원 일자리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 R&D : 향후 R&D 투자방향, 정부 출연(연) 예산편성 지원방안
- SOC : 4대강 이후 SOC 투자방향, 철도운영 효율화 방안
- ODA : 공적개발원조(ODA) 인력양성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지방재정 : 중앙·지방 중기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 **(정책고객참여 예산)** 지난 6월 개최한 ‘나라살림 정책토론회’에 이어 예산편성 이래 최초로 예산사업 수혜자를 정책고객으로 선정, 설문조사와 간담회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정책고객참여 예산편성’을 본격 실시

- ‘일과 사람 중심의 삶의 질 선진화’라는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일자리 관련 취약계층을 5대 정책고객으로 선정
 - 5대 정책고객 : ① 여성, ② 노인, ③ 청년, ④ 베이비부머, ⑤ 근로빈곤층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주요 사업별로 지역·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14개 예산사업에 대해 200명씩 총 2,800명의 정책고객을 선정
- 7월중 조세연구원 및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 효과 및 제도개선사항을 조사
 -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재정당국이 예산·기금 편성전에 시행해온 일반국민 대

상의 정책 수요 조사와 달리, 사업별 정책고객을 선정하여 사업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층적·다각적으로 조사하여 각 부처의 예산확대 위주의 설문조사와 차별화된 것이 특징

- 설문조사 후 정책고객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

- **(예산요구)** 6월 30일까지 50개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서 기준으로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6조원으로 2011년 대비 7.6% 증가, 2010~2014 중기계획상의 2012년 총지출 규모(324.8조원) 대비 7.8조원 많은 수준
 - 2012년 요구 증가율 7.6%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는 수준
 - 요구 증가율(전년 대비, 총지출 기준) 추이
 - : ('07) 6.8% → ('08) 8.4% → ('09) 7.4% → ('10) 4.9% → ('11) 6.9%
 - 특히 경직적 지출 요구 증가분이 19.5조원 수준으로, 총 요구 증가분 23.5조원의 83%를 차지하여 지출구조의 경직성이 확대되는 추세

(단위: 조원)

구 분	'11년(A)	'12요구(B)	증감 (B-A)	%
총 지 출	309.1	332.6*	23.5	7.6
【예 산】	216.4	235.3	18.9	8.7
【기 금】	92.7	97.3	4.6	5.0

- **(예산편성방향)** 재정당국이 지난 7월 7일자 보도자료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을 통해 천명한 2012회계연도 예산편성방향을
 -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재정총량을 엄격하게 관리
 -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재정수지를 금년(GDP 대비 $\Delta 2.0\%$)보다 개선
 - 보조사업 존치평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세출구조조정 적극 추진
 - 지출한도를 자의적으로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을 증액하기 위해 의무지

출이나 경직성 경비를 줄여 요구한 경우에는 추후 편성과정에서 기본경비 삭감 등의 조치 검토

- 예시 : 인건비 축소, 환율 등 공통기준 미적용, 보험급여·출연금 등 의무적 지출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여타 사업 증액

○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하게 지원

– 2012년 예산은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4.23)에서 논의된 대로 ‘일’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

- 이를 위해 (i)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능동적 복지, (ii)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iii) 국민 안전 및 국격 제고 등 3대 분야를 적극 지원

– 특히,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i) 일하는 복지, (ii) 맞춤형 복지, (iii) 지속가능한 복지 등 3대 원칙 하에 차별화되는 프레임과 세부 프로그램 제시

- 2011년 서민희망예산에 이어 2012년에도 2단계 서민희망예산을 마련, 차질없이 지원

○ 향후 일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9월까지 부처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7~9월 : 예산·기금 요구 협의·보완
- 9월 중순 :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 9월 말 : 정부안 확정
- 9.30일까지 : 국회 제출

3. 최근 재정상황

- 지난 3월까지 집행된 재정상황을 종합해 보면 세입은 과거평균 정도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출진도율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재정수입의 경우 3월까지의 누적진도율이 27.6%로 세입예산 목표를 8.7조원이나 초과달성했던 지난해(29.6%)보다는 낮지만 지난 5년평균(27.3%)과 비슷한 수준
 - 재정지출은 3월 누적진도율이 29.7%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강조했던 지난해(32.0%)보다는 낮지만 지난 5년평균(27.0%)보다는 다소 높은 비슷한 수준
 - 3월까지의 누적 관리대상수지는 13.3조원 적자로 전년(19.8조원 적자)보다 작음

〈표 1-I-1〉 통합재정 추이(월별 누계 기준)

(단위: 십억원)

	수입			지출 및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소계	경상수입	자본수입	소계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			
2004년	178,760	177,432	1,329	173,538	145,148	26,992	1,398	5,222	-3,959	
2005년	191,488	190,206	1,281	186,398	158,721	24,649	3,028	5,090	-6,521	
2006년	209,573	208,091	1,482	205,928	173,688	26,493	5,746	3,646	-10,784	
2007년	243,633	241,693	1,940	209,810	169,658	33,045	7,107	33,823	3,577	
2008년	250,713	248,809	1,904	238,834	196,879	36,475	5,480	11,880	-15,631	
2009년	255,252	252,720	2,532	272,873	209,689	45,134	18,049	-17,620	-43,250	
2010년	270,923	268,540	2,383	254,231	216,937	34,209	3,084	16,692	-13,015	
2010년	본예산	284,812	281,065	3,747	279,513	238,689	36,240	4,585	5,299	-25,000
	1월	32,936	32,807	129	27,300	24,333	2,573	394	5,636	3,795
	2월	47,653	47,392	261	48,746	41,156	6,043	1,548	-1,094	-4,852
	3월	78,692	78,298	394	83,125	71,205	10,004	1,917	-4,433	-13,286
3월까지의 누적진도비	27.6%	27.9%	10.5%	29.7%	29.8%	27.6%	41.8%	-	-	
(전년도)	(29.6%)	(29.9%)	(9.6%)	(32.0%)	(32.2%)	(29.9%)	(43.6%)	-	-	
(5년 평균)	(27.3%)	(27.3%)	(21.9%)	(27.0%)	(27.7%)	(24.4%)	(19.1%)	-	-	

II 이슈 및 분석

1. 주요국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1) 주요국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현황

가. 일본(FY2011: 2011. 4~2012. 3)

- 예산당국인 재무성에서는 내각부에서 공표하는 환율을 예산편성 전제로 활용
 - 내각부에서는 발표하는 환율은 예산편성 작업을 위한 전제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이 아님을 보고서에 명시
 - 매년 12월 정부예산안이 국회 제출되기 이전에 '경제전망 및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보고서를 각의에 상정하고 다음해 1월 각의 결정에 따라 발표
 - 내각부는 내각 주도의 정책 기획·입안·종합 조정 업무를 수행하여 법률상 각 성청의 상위기관

- 예산편성환율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시기(12월) 이전의 1개월 평균을 이용하고 있음
 - FY2011의 경우 2010.11.1 ~ 11.30의 기간 평균환율(82.4 엔/달러)을 적용

*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hsong@kipf.re.kr)

平成23年度の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新成長戦略実現に向けたステップ33へ～

平成 23年 1月 24日
閣議決定

(중략)

IV. 平成23年度の経済見通し

(중략)

(注2)世界GDP(日本を除く)、円相場、原油輸入価格については、以下の前提を置いている。なお、これらは、作業のための想定であって、政府としての予測あるいは見通しを示すものではない。

(備考)円相場は、平成22年11月1日～1月30日の1か月の平均値(2.4円ドル)で同年2月以後一定と想定。

	平成21年度	平成22年度	平成23年度
世界GDP(日本を除く)の実質成長率(%)	▲ 0.1	3.9	3.2
円相場(円/ドル)	92.8	85.6	82.4
原油輸入価格(ドル/バレル)	69.1	81.9	86.6

나. 미국(FY2011: 2010. 10~2011. 9)

□ 예산당국에서는 예산편성환율을 공표하지 않음

○ 대통령 예산서에는 편성 시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환율은 포함되지 않음

－ 예산서에는 여러 주요 거시지표들(실질 및 명목 GDP, 물가지수, 실업률, 국채금리 등)에 대한 전망치가 수록되어 있음

□ 환율 전망은 주로 외화예산의 비중이 큰 국방부 등 일부 연방부처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전망 방법도 부처별로 상이

○ GAO(2005)에 따르면 국방부를 제외한 일반 연방부처는 환율 전망 시 과거 실적치에 기초하여 선택하는 역사적 방법론이나 부처별로 특정 외환거래에 특정 환율을 차별 적용하는 복수환율(multiple exchange rate)을 이용

－ 상무성은 과거 실적치를 이용하며 별도의 환율 전망 미실시

- 농무성은 하위 80개의 부서가 고유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방법으로 환율 전망
- 반면 국방부는 일반적인 연방부처가 이용하는 과거 실적에 의존하는 접근법이 아닌 ‘중심 가중평균법(centered weighted average approach)’이라는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

〈참고: 미 국방부의 환율 전망〉

- 국방부는 FY2005의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따라 국회에 예산안 제출 시 환율전망을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동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환율 전망 시 1) 민간기관의 전망치, 2) 기타 연방부처 전망방법(과거 실적치에 기초한 선택, 복수환율 등), 3)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 중 선택이 가능
 - FY2004~2005 예산안에서는 Wall Street Journal을 이용하여 예산안 제출시점 직전의 몇 개월의 일일 환율 중 외환 대비 달러가치가 가장 높은 환율을 선택하는 방식을 적용
 - 그러나 FY2006 예산안부터 ‘중심 가중평균법(centered weighted average approach)’이라는 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환율을 전망
- 중심 가중평균법은 환율의 장기 평균과 최근 실적치를 모두 반영하고 외환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환율을 전망하는 방법
 - 역사적 접근법과는 달리 동 방법론은 과거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통계적 계산을 통해 환율 전망치를 얻어 잠복 가정(hidden assumption)없이 쉽게 모사할 수 있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음
 - GAO의 검증에 따르면 동 방법론에 의한 환율 전망치는 기존 방법론에 의한 수치에 비해 실제 환율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예산 제출시점에서 환율이 크게 변동할 경우 예측력이 떨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중심 가중평균법에 따른 구체적인 환율전망방법은 공표되지 않고 있음

다. 영국(FY2011-12: 2011. 4~2012. 3)

- 재무부(HM TREASURY)의 FY2011 예산안에서 환율전망은 전년 대비 변화율로 공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망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은 예산책임청(OBR)에서 경제 및 재정 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재무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예산안을 편성

〈표 1-Ⅱ-1〉 FY2011 예산안의 OBR 환율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OBR 전망	Outturn 2009-10	Forecast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Euro/Sterling exchange rate	1.13	1.18	1.16	1.16	1.16	1.16	1.15

주: HM TREASURY, BUDGET 2011

- 예산책임청(OBR)에서는 세수추계에 환율이 활용되는 경우 환율 전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산출방식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음
 - 환율의 전제와 관련하여 UIP(Uncovered Interest Parity)와 Sterling ERI를 고려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오일 및 가스 세입(UK Oil and Gas revenue)과 유류세(Fule duties)의 추계에 이용하는 환율은 국가 간 시장금리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UIP 이론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
 -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경제전망 보고서의 부속자료에 수록된 “the Sterling ERI”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됨
 - * the Sterling ERI는 교역국가 간의 통화바스켓을 구성하여 교역량으로 가중평균한 지수로 환율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중앙은행(Bank of England)에서 매일 고시

라. 캐나다(FY2011: 2011. 4~2012. 3)

- 캐나다 재무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민간부문의 경제전망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Budget 1994부터 민간기관 경제전망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왔으며, FY2011 예산안에서 민간기관은 총 15개로 구성
 - 민간기관은 투자은행, 투자관련 정보회사,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
 -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BMO Capital Markets,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 CIBC World Markets,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Desjardins, Deutsche Bank of Canada, IHS Global Insight, Laurentian Bank Securities, National Bank Financial Group, Royal Bank of Canada, Scotiabank, TD Bank Financial Group, UBS Securities Canada, and the University of Toronto (Policy and Economic Analysis Program)
- FY2011에서는 GDP, 물가, 금리, 실업률 등에 대한 민간기관의 경제전망 평균치를 산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2011년 환율은 99.7 US cents/C\$로 예상하고 있음
 - 예산안 공표시점 직전인 2011년 3월 초,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경제전망 수치 및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공표

〈표 1-Ⅱ-2〉 민간기관 환율예측의 평균

(단위: US cents/C\$)

민간전망 조사시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2015
2009년 12월	95.5	98.3	97.7	99.3	98.5	97.2	98.2
2010년 9월	95.8	96.7	98.2	98.0	97.5	97.0	97.5
2011년 3월	97.1	99.7	98.8	98.1	97.4	96.5	98.1

주: 캐나다 2011 예산안

마. 호주 (FY2011-12: 2011. 4~2012. 3)

- FY2011-12 예산안에서는 예산편성 시 이용하는 경제변수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환율은 최근의 평균치를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산정방식은 향후 환율이 최근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임

○ 환율은 TWI*와 US dollar 두 가지 기준으로 산출됨

* TWI(Trade-Weighted Index)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교역국들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향후 환율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척도

- 호주의 TWI는 연방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에서 명목환율과 함께 고시하고 있으며 21개 통화바스켓 교역국과의 무역 가중치 정보도 공개

□ FY2011-12 예산안의 경제전망에서 이용하는 TWI는 78, US dollar는 107 cents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 및 산출 시기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예산안의 경제전망과 달리 중기계획 수립 시의 환율은 과거의 장기적인 교역조건과 실질실효환율의 관계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실효환율에 각국의 상대적인 물가수준을 반영한 지수로 장기적인 환율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수단

바. 뉴질랜드 (FY2011: 2011. 4~2012. 3)

□ FY2011 예산안에서는 경제전망에 대한 가정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중 환율은 1분기 평균 TWI(Trade-Weighted Index)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FY2011 예산안의 경우 예산편성환율은 2011년 1분기 TWI 평균치를 이용한 것임

* TWI(Trade-Weighted Index)는 자국 통화의 가치를 교역국들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향후 환율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척도

○ 뉴질랜드 TWI는 연방은행(Reserve Bank of New Zealand)에서 공표하고 있으며, 통화바스켓은 주요 교역 국가의 통화인 US \$, Australian \$, 일본 Yen, Euro 및 영국 Pound로 구성

□ 뉴질랜드 재무부에서는 2011년 TWI는 1분기 평균인 67.2로 확정 발표

○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명목)환율에 대하여는 공표하고 있지 않음

〈표 1-Ⅱ-3〉 뉴질랜드 연방은행의 TWI 전망

	2010 Actual	2011 Forecast	2012 Forecast	2013 Forecast	2014 Forecast	2015 Forecast
TWI	65.3	67.2	66.7	64.5	60.3	56.0

주: 재무부의 경제전망은 2011년 4월 13일에 확정

〈참고: 영국 Sterling ERI, 호주 TWI, 뉴질랜드 TWI〉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예산편성환율의 책정을 위해 실효환율의 일종인 TWI (Trade-Weighted Index)를 고려하고 있음
 - 실효환율(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과 교역상대국 간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통화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척도
 - 교역국 간의 물가수준 반영 여부에 따라 명목 또는 실질실효환율로 구분
 -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의 종합적인 통화가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은 자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
 - TWI(Trade-Weighted Index)는 실효환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교역국의 통화에 대한 가중치를 무역규모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경우를 의미
- TWI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환율과 함께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별 산출방식에는 차이가 존재함
 - 자국과 교역국간의 환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여하는 무역가중치 책정방식에 차이가 존재
 - 무역가중치는 보통 교역국가별 수출 및 수입의 점유율을 이용하고 있으나 통화바스켓의 구성 등은 국가별로 다르게 구성
 -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TWI는 교역국 간의 통화바스켓에 무역가중치를 기하평균하여 산출
 - 통화바스켓은 수출 또는 수입규모의 최근 3년 평균 점유율이 1.0% 이상인 국가

의 통화로 구성

- 가중치는 교역국과의 수입, 수출 및 제3국에서의 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설정

$$TWI = \prod_{i=1}^n (e_{i, \text{sterling}})^{w_i}$$

$e_{i, \text{sterling}}$ = units of foreign currency i per Sterling,

w_i = weight of the foreign currency

○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의 TWI는 교역국 간의 통화바스켓에 무역가중치를 기하평균하여 산출

- 통화바스켓은 총 21개국으로 구성

- 무역가중치는 상품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총무역액의 점유율로 설정

$$TWI_t = \left[\frac{A \$}_t}{A \$}_0 \right]^{\alpha_1} \times \left[\frac{E_t^2}{E_0^2} \times \frac{A \$}_t}{A \$}_0 \right]^{\alpha_2} \times \dots \times \left[\frac{E_t^{23}}{E_0^{23}} \times \frac{A \$}_t}{A \$}_0 \right]^{\alpha_{23}} \times TWI_0$$

$$= \left[\frac{E_t^2}{E_0^2} \right]^{\alpha_2} \times \dots \times \left[\frac{E_t^{23}}{E_0^{23}} \right]^{\alpha_{23}} \times \frac{A \$}_t}{A \$}_0 \times TWI_0$$

$A \$$ = units of US dollars per Australian dollar, E^i = units of foreign

currency i per US dollar ($i = 2, \dots, 23$), α_1 = weight of the US

dollar, α_i = weight of the foreign currency i ($i = 2, \dots, 23$), $0 =$

base period, $t =$ current period

○ 뉴질랜드 중앙은행(Reserve Bank of Newzealand)의 TWI는 교역국 간의 통화바스켓에 무역 및 GDP 가중치를 기하평균하여 산출

- 통화바스켓은 미국, 일본, 유로, 호주, 영국 등으로 구성

- 가중치는 무역과 교역국 GDP를 각 50%씩 부여하는 방식

- 무역가중치는 상품수출과 수입액을 합한 총무역액의 점유율로 설정
- 교역국 GDP는 IFS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

$$TWI_t = \left(\frac{E_{NT_t}^{US}}{E_{NZ_0}^{US}} \right)^{W_{US}^{NZ}} \times \left(\frac{E_{NZ_t}^{AU}}{E_{NZ_0}^{AU}} \right)^{W_{AU}^{NZ}} \times \left(\frac{E_{NZ_t}^{JP}}{E_{NZ_0}^{JP}} \right)^{W_{JP}^{NZ}} \times \left(\frac{E_{NZ_t}^{EU}}{E_{NZ_0}^{EU}} \right)^{W_{EU}^{NZ}} \times \left(\frac{E_{NZ_t}^{UK}}{E_{NZ_0}^{UK}} \right)^{W_{AU}^{UK}}$$

E_{NZ}^{US} is the value of NZ dollar in terms of US dollars, and W_{US}^{NZ} is the weight of the US dollar

2) 우리나라 예산편성환율 결정

- 정부에서는 예산안 작성 지침을 통해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 기준환율을 통보하고 있음
 - 2008년 예산안 작성 지침까지는 기준환율의 수치를 수록하였으나, 2009년 예산안 편성부터는 환율변동의 추이를 보아가며 필요 시 수정하여 추후 통보하는 방식

- 예산편성환율의 산출 방식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통상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전 일정기간(보통 3개월)의 평균 환율을 산출하여 결정하고 있음
 - 환율 실적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은 환율 전망이 간편하고, 외환시장에 의도하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의 경제전망에서도 환율의 동향은 보고하고 있으나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는 없음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중에 환율은 일반에 공표되지 않으며 예산안의 국회 심의 및 의결 후에 확정예산 자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음
 - 「나라살림 예산개요(참고자료)」의 예산연대표를 통해 공개
 - 예산연대표는 FY1948부터 현재까지 일반재정세입·세출(결산기준) 및 GNP, GDP deflator, 예산편성환율(구 공정환율) 등으로 구성

[그림 1-Ⅱ-1]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1995~2011)

(단위: 원/달러)



3)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비교

- 예산편성환율의 공표, 결정방식, 결정방식의 공개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조사대상 7개국 중 6개국의 예산편성환율은 재무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편성
 - 미국은 부처별로 환율을 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출방법 및 적용방식에 대해서는 비공개

- 예산당국에서 예산편성환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하는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영국, 캐나다이며 예산안 관련 문서에 예산편성환율이 공표되고 있음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우리나라는 최근의 환율 실적치(평균)를 예산편성환율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
 - 상술한 네 국가 모두 예산편성 및 경제전망을 위한 전제로서 예산편성환율을 사용
 - 일본: 국회제출 직전 1개월 환율의 평균 이용

- 뉴질랜드: 예산편성연도의 1분기 TWI 평균 이용
: 뉴질랜드는 중앙은행의 TWI(Trade-Weighted Index)를 이용
 - TWI는 자국통화의 가치를 교역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지수로 교역국들을 모두 감안된 명목실효환율 개념임
 - 우리나라: 국회제출 직전 3개월 평균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 「나라살림」을 통해 예산편성환율이 공표되고 있음
: 2008년 말 이후로 급격히 커진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의 산출기간을 조정하여 2011년 예산편성에는 2010. 4. 25 ~ 2010. 9. 24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
 - 호주: 예산편성시기 최근 평균, 호주의 경우 평균 산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영국은 OBR에서 환율을 전망하고 이를 예산편성의 전제로 활용
 - 환율 전망치는 공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망 방식은 공개하지 않음
 - 캐나다 환율은 민간전망치를 예산편성환율에 활용
- 예산편성환율의 결정방식은 최근 실적치, 민간평균, TWI 지수 등을 이용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시지표 전망 또는 예산편성의 전제로 가정하고 있음
- 최근 실적치를 이용하는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로 모두 예산편성을 위한 수단으로 환율을 전제하고 있음
 - 일본은 예산안 국회제출 직전 1개월 평균환율을 이용
 - 호주는 예산안 제출시점의 평균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산출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호주와 뉴질랜드는 TWI(Trade-Weighted Index)를 이용하여 거시지표 전망 및 예산편성 전제로 사용
 - TWI는 자국통화의 대외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로 교역국 간의 환율 및 무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
 - 뉴질랜드는 예산편성연도의 1분기 TWI의 평균 이용

- 호주는 예산안 제출시점의 평균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평균산출 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영국은 OBR에서 환율전망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환율로 결정
 -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UIP(Uncovered Interest Parity) 이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고 언급
 - UIP는 환율이 국가 간 시장금리 차이에 따라 결정됨을 가정하는 이론
 - 그러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는 경제전망의 성격으로 민간기관들의 환율전망 평균치를 이용
 - FY1994부터 거시지표에 대해 민간평균을 이용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총 15개 민간기관으로 구성
 - 예산안 공표시점 직전인 2011년 3월 초,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경제전망 수치 및 위험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공표

<표 1-Ⅱ-4>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국가	예산편성환율 결정부처	예산편성환율 공표 여부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예산편성환율 결정 방식 공개 수준	예산편성환율 성격 (전제 or 전망)	출처 및 관련 공식보고서
일본	내각부의 예산 편성환율을 재무성에서 이용	공표 (82.4 Yen/\$)	최근 실적치 ○ 부처별로 상이 - 국방부: CWA (centered weighted average) - 상무부: 과거 실적치 중 선택 - 농무부: 복수환율	국회제출 직전 1개월(11월) 환율의 평균	예산편성의 전제	内閣府, 平成23年度経済見通しと経済財政運営の基本的態度
미국	각부처 (국방부, 상무부, 농무부 등)	Budget 등 예산문서에 공표되어 있지 않음	○ UIP 및 Sterling ERI - UIP: 오일·가스, 유류세수 추계 시 전망 - Sterling ERI: 담배세수 추계 시 전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 (실질적으로 비교)	각 부처별 전망 또는 실적치 이용	GAO, Review of DOD's Report on Budgeting for Exchange Rates for Foreign Currency Fluctuations, 2005. ※ 부처별로 환율편성 방식이 상이하 여 일반화하기 어려움
영국	예산 책임장 (OBR)의 환율 전망을 재무부 (Treasury)에서 이용	공표 (Euro/Sterling exchange rate: 전년대비) 1.16%	민간기관 평균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 (실질적으로 비교)	전망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ar. 2011. OBR, Forecasting the Public Finances, Briefing Paper No. 1, Jan. 2011.
캐나다	재무부 (Minister of Finance)	공표 (99.7 US cents/캐나다\$)	민간기관 평균	예산안 공표 직전 민간기관 전망 환율의 평균	민간기관 전망	Minister of Finance, The Next Phase of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A Low-Tax Plan for Jobs and Growth, 22 Mar 2011.
호주	재무부 (The Treasury)	공표 (TWI: 78, 환율: 1.07\$/호주\$)	TW(Trade-Weighted Index) 참조 및 최근 실적치 - TW는 자국통화의 대외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	예산편성시점의 TWI 및 평균 환율(US\$) - 평균신출기간은 비공개	예산편성 및 경제전망의 전제	The Treasury, BUDGET Strategy and Outlook, Budget Paper No. 1, 2011-12, 10 May 2011
뉴질랜드	재무부 (The Minister of Treasury)	공표 (TWI: 67.2) - 단순 US달러 대비 환율 이 아닌 여러 국가의 통화에 대한 종합 환율	TW(Trade-Weighted Index) 참조 - TW는 자국통화의 대외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수	예산편성연도의 1/4 분기 TWI 평균 - 구체적인 개별 명목 환율 수치는 비공개	예산편성 및 경제전망의 전제	The Minister of Treasury, 2011 BUDGET, 19 May 2011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공표 (국회제출 이후 공개)	최근 실적치(예산안제출시점 직전 일정기간 평균) - 통상 3개월 평균	- 예산안 심의 및 의결 후 「나라살림」을 통해 공개	예산편성의 전제	* 예산안 확정 후 공개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참고자료), 각 연도.

2. 유럽의 재정위기 업데이트 (이탈리아)*

가. 유럽의 재정위기 현황

-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PIIGS 5개국(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
 - 2009년 대비 2010년 EU 지역의 재정적자는 감소하였으나 정부부채는 증가하여, 2010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9.1%, 정부부채는 85.1%를 기록
- 지금까지 그리스(2010년 5월), 아일랜드(2010년 11월), 포르투갈(2011년 4월) 이하 3개국이 IMF/EU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강도 높은 긴축예산안 제시
- 그러나 그리스가 2011년 7월, 추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음
 - 가장 먼저 1,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1년 7월 추가 구제금융지원(1,090억유로)에 합의
 - 그리스는 제1차 구제금융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크게 감소시켰지만(2009년 15.4% → 2010년 10.5%) 경제성장률 및 실업 등 경제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
 - 긴축재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제대로 시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
 -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머지 국가들에게도 재정위기가 전염될 것이라는 우려가 증가하면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구제금융 제공 합의
 - 2010년 11월 말,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와 2011년 5월, 780억유로를 지원받은 포르투갈도 추가적인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
 - 2013년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F)를 승계하는 유럽안정기금(ESM)의 지원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이들 국가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조정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표 1-Ⅱ-5〉 2010년 PIIGS 국가들의 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단위: GDP대비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재정수지	2008	△3.5	△2.7	△7.3	△9.8	△4.2
	2009	△10.1	△5.4	△14.3	△15.4	△11.1
	2010	△9.1	△4.6	△32.4	△10.5	△9.2
국가부채	2008	71.6	106.3	44.4	110.7	39.8
	2009	83.0	116.1	65.6	127.1	53.3
	2010	93.0	119.0	96.2	142.8	60.1
		Euro Area	독일	프랑스	영국	
재정수지	2008	△2.0	0.1	△3.3	△5.0	
	2009	△6.3	△3.0	△7.5	△11.4	
	2010	△6.0	△3.3	△7.0	△10.4	
국가부채	2008	69.9	66.3	67.7	54.4	
	2009	79.3	73.5	78.3	69.6	
	2010	85.1	83.2	81.7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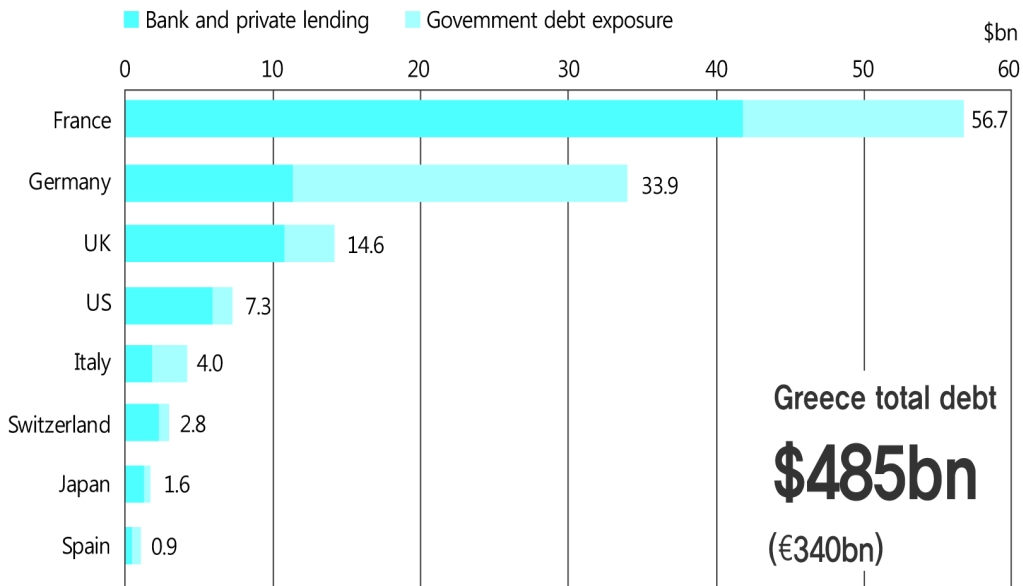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2011.4.26)

- 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 회원국 중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에 자금을 공급하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FSF)의 역할을 강화
- 2010년 6월 7일 설립된 안정기금(EFSF)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회원국들의 출자금과 보증을 담보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구제금융으로 운용하는 메커니즘
 -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논의 시부터 유럽의 공식적인 재정위기 해결 메커니즘으로서 신속적 운영(flexibility)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authority)을 부여하여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위상 획득
 - 회원국 정부에 은행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을 위한 자금 대출 가능
 - 금융안정 위협시 유통시장에서 회원국 국채를 환매(bond buyback) 가능
 - 그러나 자금기반을 확대하지는 않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규모가 큰 경제가 재정위기에 빠졌을 때 유동성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
 - 현재 EFSF는 총 유동성 4,400억유로 중 3,200억유로의 자금력이 있는데, 이탈리아가 무너지는 경우 향후 2년간 5,000억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나.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원인

- 유럽 17개국은 유로화라는 통화동맹으로 엮여져, 한 국가의 재정위험이 다른 국가로 전염될 수 있음
 - 프랑스 민간 및 정부 부문이 그리스 부채의 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도 그리스 부채의 1/3을 보유하고 있음

[그림 1-Ⅱ-2] 국가별 그리스 국채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exposure)



자료: BBC(27 July 2011)

-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이 PIIGS국가 채권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이 자금 회수 시 재정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
- 따라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이 비교적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시작한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음

〈표 1-Ⅱ-6〉 유럽 주요국의 대외투자자금 현황

(단위: 억달러, %)

		채권국				대외채무 총액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채 무 국	그리스	42(2.6)	340(21.1)	530(32.9)	131(8.1)	1,609(100.0)
	아일랜드	142(2.2)	1,182(18.2)	368(5.7)	1,524(23.4)	6,502(100.0)
	포르투갈	41(1.8)	364(16.1)	270(12.0)	244(10.8)	2,255(100.0)
	스페인	299(3.5)	1,819(21.5)	1,415(16.7)	1,121(13.2)	8,464(100.0)
	이탈리아	-	1,623(14.8)	3,891(35.5)	667(6.1)	10,966(100.0)
총 대외투자자금		8,970	29,984	31,382	39,422	-

자료: BIS Quarterly Review(June 2011), 현대경제연구원(201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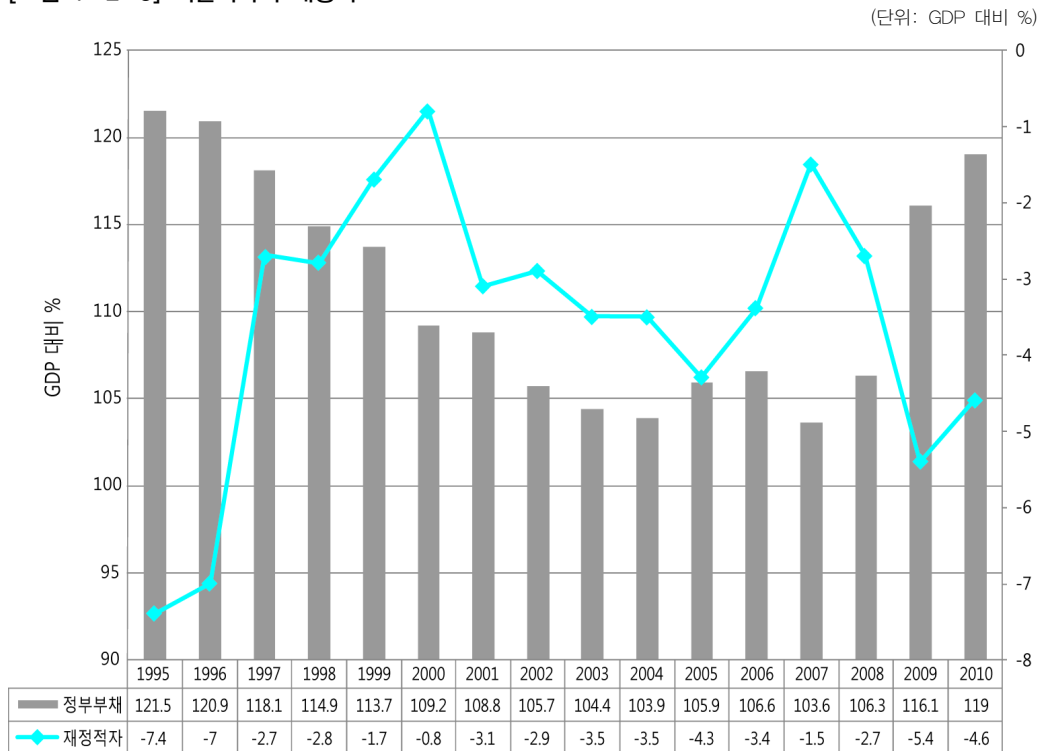
- 2010년부터 PIIGS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긴축재정정책을 발표하고는 있으나, 정치권과 국민들이 심한 반발을 표출하고 금융시장에서 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위험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다. 이탈리아 사례

1) 재정상황 및 부채위기 관련 지표

- (재정지표) 이탈리아는 1990년도 중반부터 재정적자 및 부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2000년대에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재정적자는 5.4%까지 증가
 - 1990년대 중반 국가부채가 GDP 대비 120%를 상회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감소,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100%를 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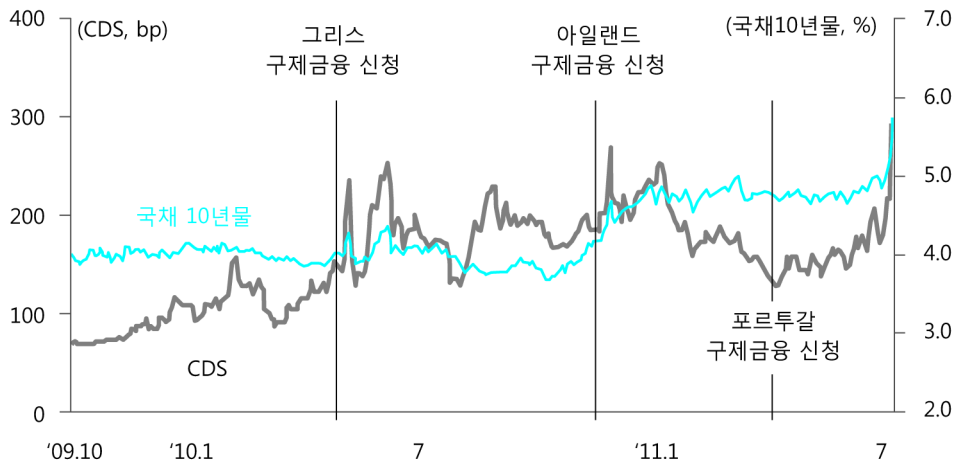
[그림 1-Ⅱ-3] 이탈리아의 재정지표



자료: Eurostat 자료(2011.7.22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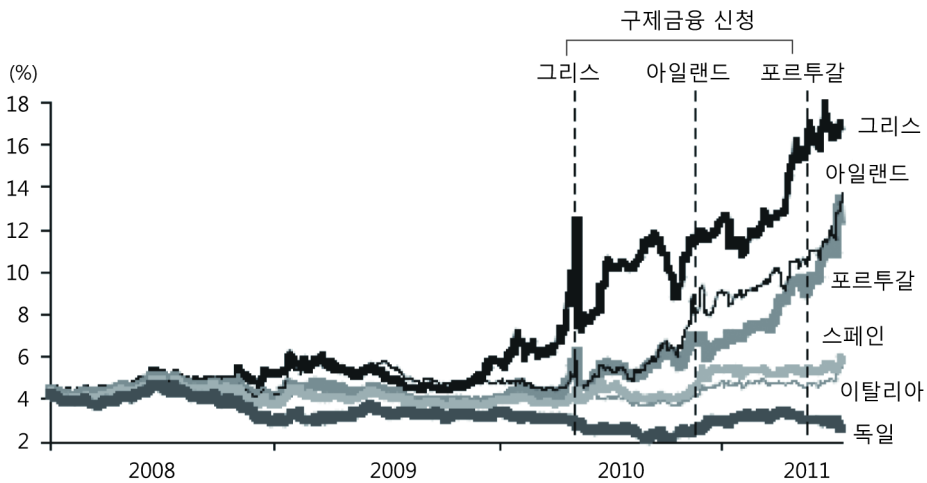
- (금융시장) 이탈리아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은 1999년 EU 가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0년 만기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그리스와 아일랜드 구제금융 신청 기간에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안정화되었으나 2011년 7월 다시 급속히 증가하여 300bp에 이르렀고 8월 11일 397.5bp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10년 만기 국채금리 역시 7월초 4%대 중반에서 7월 12일 5.62%까지 급증하였으나 8월 16일 ECB의 이탈리아 국채 매입으로 인해 5.03%까지 하락하였음
 - 독일 국채와 비교시 (8월 14일 기준으로 2.192%) 크게 증가하였음

[그림 1-Ⅱ-4] 이탈리아 CDS와 국채금리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1년 7월)

[그림 1-Ⅱ-5] 독일 국채금리(10년 만기)와 비교



자료: LG 경제경영연구소(2011. 7)

□ (신용등급) 그동안 이탈리아에 대한 신용등급 조정은 없었으나, 유럽 재정불안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관찰대상' 그룹으로 분류(2011년 7월 22일 기준)

○ 유럽의 재정위기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도 신용등급 하락 위험성 증가

- 2011년 8월, ECB는 처음으로 총 220억유로를 투입하여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였음

〈표 1-Ⅱ-7〉 이탈리아 신용등급

	무디스	S&P	Fitch
신용등급	Aa2 (부정적 관찰대상에 등재)	A+(8월 7일 기준) (부정적 전망으로 하향조정)	A1
원인	낮은 생산성, 노동 및 상품시장의 경직성 등에 따른 경제구조 취약성, 차입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어려움	낮은 경제성장 전망, 관련 개혁의 실행 여부 불투명	

자료: 국제금융센터(2011.7.25), 블룸버그(2011. 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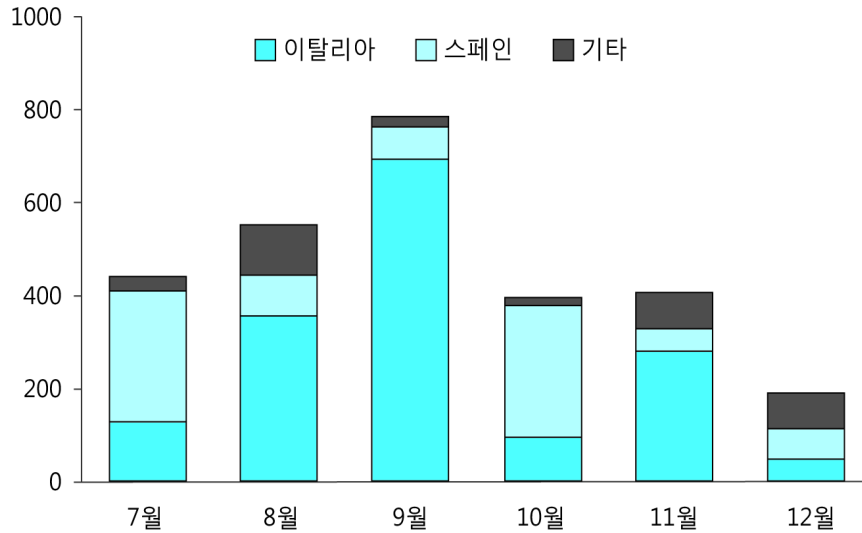
2) 재정위기 배경

□ (부채) 그리스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채 수준

- 국채의 대부분을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으며 만기가 긴 장기부채가 많으며, 주택시장 버블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보유한 부채의 양이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보다 절대적으로 큰 편
- 하반기, 특히 7~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량의 국채 보유
- 유럽 은행들 중 상당수가 이탈리아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다른 어느 유럽국가의 국채보다 높은 수준
 - 91개의 은행이 이탈리아 국채 1,000억유로 보유, 이는 스페인 국채의 22배 수준 (독일 국채량도 700억유로 수준에 불과)
 - 이탈리아 은행인 Intesa와 Unicredit이 이탈리아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Deutsche Bank(독일)와 Credit Agricole(프랑스)이 각각 100억유로씩 보유

[그림 1-Ⅱ-6] 2011년 하반기 국제 만기 도래 현황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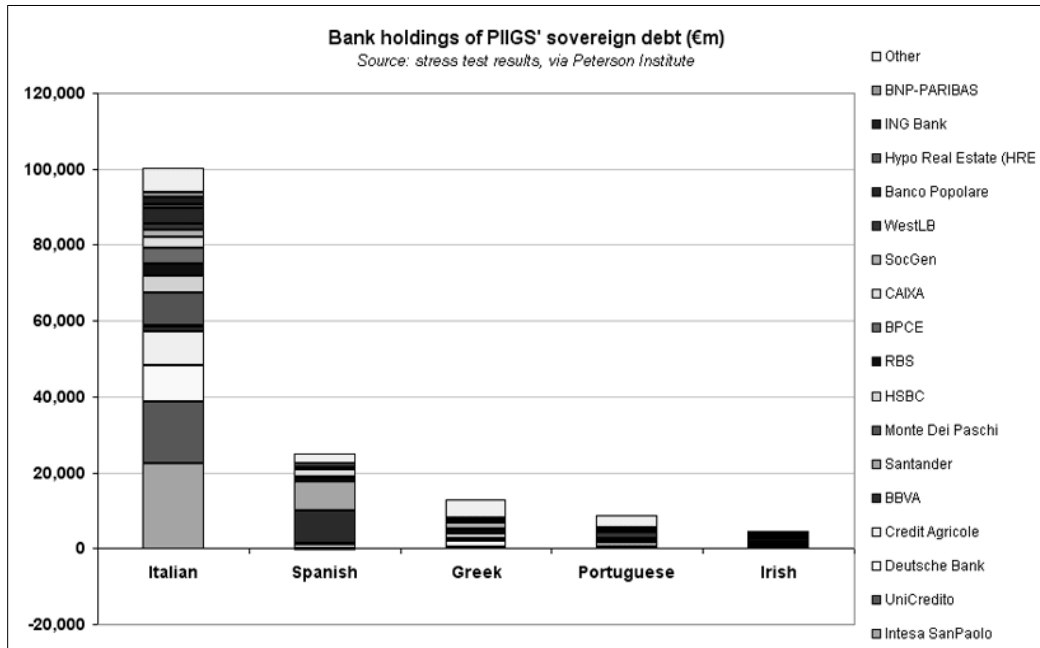


주: 기타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자료: 블룸버그, 현대경제연구원 (2011.7)에서 인용

[그림 1-Ⅱ-7] 유럽 주요 은행들의 PIIGS 국가들의 국채 보유율

(단위: 백만유로)



자료: FT (2010.10)

□ (펀더멘털) 지난 10년간 이탈리아의 경제 펀더멘털(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국제경쟁력)은 매우 약한 상태였음

○ (경제성장률)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이탈리아 경제성장률 평균은 0.59%로 PIIGS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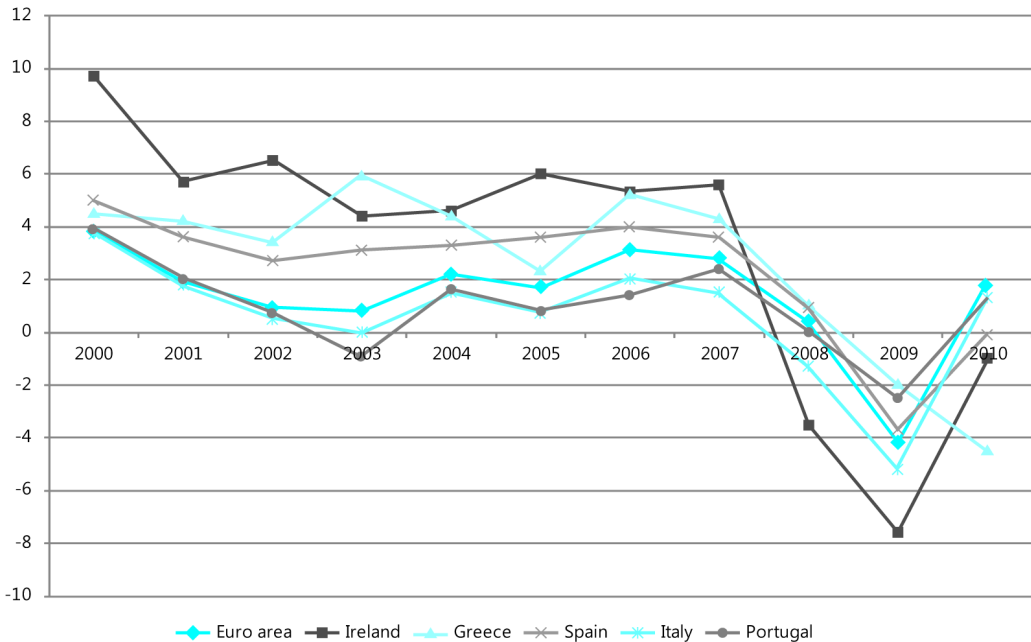
<표 1-Ⅱ-8> PIIGS 경제성장률 (2000-2010)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균
Euro area	3.8	1.9	0.9	0.8	2.2	1.7	3.1	2.8	0.4	-4.2	1.8	1.38
Ireland	9.7	5.7	6.5	4.4	4.6	6	5.3	5.6	-3.5	-7.6	-1	3.25
Greece	4.5	4.2	3.4	5.9	4.4	2.3	5.2	4.3	1	-2	-4.5	2.61
Spain	5	3.6	2.7	3.1	3.3	3.6	4	3.6	0.9	-3.7	-0.1	2.36
Italy	3.7	1.8	0.5	0	1.5	0.7	2	1.5	-1.3	-5.2	1.3	0.59
Portugal	3.9	2	0.7	-0.9	1.6	0.8	1.4	2.4	0	-2.5	1.3	0.97

자료: Eurostat(2011.07)

[그림 1-Ⅱ-8] PIIGS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자료: Eurostat(2011.07)

- 이렇게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낮은 교육수준과 고등교육의 부재
 - 서비스 부문의 과잉보호 및 과도한 규제
 -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의 어려움
 - 국민들의 큰 조세부담 및 공공지출의 비효율성
 - 사법 체계의 취약성
 - R&D 및 혁신의 부족
 - 지역적 편차: 남북간에 큰 경제적(생산 및 실업률) 편차
- (국제경쟁력) 부가가치가 낮은 상품에 주력하여 서서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90년대 중반 이래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임금증가율이 더 높아 단위노동비용 상승
- (규제) 상품시장 규제가 높은 편이어서 생산성 저해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 공기업이 많고, 규제장벽이 높으며, 초기기업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크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함
- (노동시장) 유럽 평균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이며, 노동자 그룹간 격차가 큼
 - 여성, 고령노동자, 청년 실업이 높은 편
 - 실업 위험이 높은 노동자 그룹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 (정치적 갈등)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트레몬티 재무장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면서 긴축재정정책 시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트레몬티 장관은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지출감축 및 세금 인상을 주장하였는데,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세금 인상에 반대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세금포탈, 뇌물수수 등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어 국내외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정적인 트레몬티 재무장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이 어려움
 - 재정개혁을 주도할 트레몬티 재무장관 역시 측근의 부패문제 연루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고, 최근 사임 가능성에 대한 루머가 돌고 있음

3) 이탈리아 정부의 자구적 노력

- 이탈리아 정부는 균형재정을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단축하여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건전화 방안(austerity package)이 각료회의에서 통과 (2011.08.12)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1년 3.9%에서 2012년 1.4%, 2013년 균형재정으로 수렴할 것을 목표
 - 헌법에 균형재정 목표를 도입할 계획 (아직 자세한 내용은 없음)
 - 유럽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향후 2년간 지출삭감과 세입증대를 통해 455억유로를 절감(2012년 200억유로, 2013년 255억유로)할 예정
 - 이는 7월중순 긴축예산안에 반영된 480억유로에 이은 추가적인 조치
 - 향후 60일 이내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법적 효력을 가짐
 - 세입증대 방안: 고소득자에 대한 연대기여금(solidarity contribution) 부과, 자본이득세 인상
 - 9만유로 이상 고소득자 소득에 5% 연대기여금을 부과하고, 15만유로 소득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기여금 부과
 - 정부채권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행 12.5%에서 20%로 인상
 - 지출삭감 방안: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삭감, 공공부문 인건비 삭감, 연금제도 개혁
 -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6개 주(province)를 폐지하고 8,000개 중 1,500개에 해당하는 시(municipality)를 합병하여 향후 2년간 96억유로 삭감
 - 각료들에 대한 임금삭감으로 85억유로를 절감하고 54,000명의 인력감축
 - 연금개혁: 여성의 퇴직연령 상향조정
 - 이탈리아 정부의 이러한 재정건전화 패키지는 EU에서는 환영받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
 - 지출삭감 정책은 고소득자보다는 공공부문 근로자, 연금소득자, 중산층, 지방정부 등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
 - 또한 강력한 재정긴축은 이탈리아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현재 GDP 대비 3.9%인 재정적자에서 2014년까지 균형적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안(austerity budget) 통과 (2011.07.15)
 - 이탈리아 상원, 향후 3년동안 480억유로에 해당하는 지출삭감 정책을 승인 (2011년 7월 14일)
 - 다음날, 이탈리아 하원에서 예산안 승인, 이는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빨리 예산이 승인된 기록
 - 긴축예산안 내용: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교부금 삭감, 가계에 대한 세금혜택 및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 삭감, 공공부문 임금 동결
 - 퇴직연령 상향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고려 중

- 이탈리아 재무부에서는 2011년 7월, 재정건전화 및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 (2011.07.06)
 -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공약한 재정건전화 목표를 90% 이상 충실히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10%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
 - 지금까지 달성해 온 재정건전화 방안을 법령(Decree Law)으로 법제화하였고, 이것에는 2012-2014년 다년간 예산법도 포함
 - 나머지 개혁, 특히 복지제도 개혁 등도 곧 수권법(Enabling Act)으로 구체화할 예정
 - 이러한 개혁의 범위는 내년 총선의 결과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음
 - 의회에 재정제도 개혁을 위한 발의
 - 2012-2014에 시행할 재정건전화 정책을 명시
 - 재정지출 삭감은 철저하게, 그러나 선택적으로 시행
 - 각 부처에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시행하여 부처마다 지출절감 사업을 선택
 - 대학, 문화, 리서치 부문에 대한 지출은 삭감하지 않음
 - 행정효율화(조세회피 감소, 정치 및 행정 비용 감소, 신 내부안정화조약 준수)를 달성한 지방에 대해 보상체계 도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 삭감
 - 조세 및 사회보장제 회피 감소: 지방정부가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여부

- 에 따라 지방교부금 액수 결정
 - 유럽 펀드(European Fund): 이탈리아 남부에서 유럽 펀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중앙·지방간 계획 및 통제 장치 마련
 - 정부자산 가치를 시장가로 인상
 - 정치적 비용 감축: 모든 정치 및 행정기구의 비용은 유럽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것
-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Decree for growth)
 - 기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 청년들의 창업기업에 대해 첫 5년간 5%로 고정세율 적용
 - 이탈리아 남부에서 임시노동자 고용시 세제혜택 부여
 - 연구분야에 대한 세제혜택: 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의 90%에 세제혜택
 - 기업 규모 확대: 중소기업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기업체(entity)로서 재원조달(은행 대출, EIB 펀딩), 정부 행정절차 진행, 수출시장에서 활동 가능
 - 대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전략적 투자 펀드 등
 - 벤처캐피탈 및 관광산업 육성, 수출활성화 정책
 - 규제완화 및 사법제도 강화
 -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 네트워크 사업 육성
- 2011년 5월, 국가 개혁 프로그램(National Reform Program)을 승인하여 향후 재정건전화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시행할 것을 다짐
 - 연금, 의료, 사회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연금제도를 인구변화에 맞추어 개편: 연금수령 연령을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
 - 조기 퇴직제도를 제한하고 고령자(55세 이상) 고용 인센티브 제공
 -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감시 제도
 - 예산규율(National Budget Rules) 강화: SGP에 명시되어 있는 EU 예산법과 일관성 있는 예산제도 운영
 - 재정연방제(fiscal federalism): 재정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출권한과 조세징수권 간에 불일치를 해결

- 2011년 4월 Stability Program 업데이트에서 2013-2014년에 시행할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GDP 대비 2.3%, 매년 200억유로) 발표
 - 지출삭감에 기반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정책들은 제시하지 않았음

4)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및 기타 견해

- OECD(2011.8.16)는 이탈리아의 최근 재정긴축안 승인을 환영
 - 현재 이탈리아 정부의 높은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긴축안의 조치들은 이탈리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강화하여 유로 지역 회복에 이바지할 것임
 - 긴축안에 담긴 구조적인 조치들(지방정부 구조개혁,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 촉진)은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함
- IMF(2011)는 이탈리아의 부채 감축, 금융부문 안정성 유지,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을 제안(2011년 7월 12일)
 - 최근에 통과된 중기 재정건전화 정책은 2012년 재정적자 목표 GDP 대비 3% 및 2014년까지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평가
 - 재정건전화는 주로 지출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공공부문 지출검토는 환영할 만한 조치: 공공지출 축소 및 효율화 기대
 - 공공부문 임금 삭감은 민간부문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
 - 재정의 조기집행 강조, 지방정부 단위에서 시행되는 구조개혁이 대부분 조세개혁에 대한 구체화 필요
 - 금융부문 안정성을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지방은행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개선
 - 구조개혁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증대, 고용증진, 성장효과 기대
 - 고용과 저축 장려를 위한 정책 시행이 필요
 -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공기기업의 민영화, 서비스 및 네트워크 산업 개방

- 조세제도 간소화
- 노동시장 개혁: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 고용보호, 임금협상제도 개선, 노동시장의 이원화 완화 등
- 구조개혁 이행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및 자문체계 마련

□ (FT, 2011.07.18) 미국의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는 유로존이 재정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언

- 유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유지가 중요, 회원국들이 단합하여 절대 유로 국가가 디폴트 되도록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 이러한 신뢰가 회복되면 정부부채에 대한 금리 수준은 낮아질 것
 - 유로 회원국 중 자금조달 비용이 최저보다 200bps 이상 상승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구제금융펀드에 대한 출자금 면제는 구제금융펀드에 대한 출자금 면제
 - 어떤 국가에서든 금융위기를 방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
 - 건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는 합리적인 가격에서 EU 보증 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장기간 기초수지 흑자를 운영할 수는 없음
- 단순히 부채수준을 낮추고 공약한 긴축예산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시장의 신뢰 회복

5) 평가 및 전망

□ 이탈리아 의회에서 긴축예산안이 통과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재정위기 전염 고비는 한차례 넘긴 상태

- 그러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재정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유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봄

□ (FT, 2011.7.26) 이탈리아 정부의 긴축예산안 통과 등 자구적인 노력은 충분치 못하다는

평가

- 의료 및 연금혜택 축소 등 복지지출 축소안은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대부분의 시행시기가 내년 이후로 잡혀 있어 긴축재정의 추진 의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더 큰 지출 삭감이 필요하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개혁이 결여되어 있음
- 여전히 시장에서 부채 발행 시 비용은 높고, 신용등급회사는 이탈리아 재정위험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탈리아가 그리스, 포르투갈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까지 가지는 않을 전망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3번째로 큰 경제대국이고, G7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인만큼, 이탈리아가 재정위기를 겪는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게 매우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Too Big to Fail'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국제금융센터, 「최근 글로벌 국가신용등급 동향 및 특징」, 2011.7.25

현대경제연구소, 「헤지펀드 발 이탈리아 재정위기 고조 - PIIGS 5개국의 재정위기 악순환 형성」, 2011.7.14

LG 경제경영연구소, 「이탈리아로 튼 유럽재정위기 불씨」, 2011.7.20

BBC, Q&A Greek Debt Crisis, 2011.7.27

Financial Times, “How to Save the Eurozone,” Lawrence Summers, 2011.07.18

Financial Times, “Rome to unveil fresh austerity measures,” August 12, 2011

Financial Times, “Italy: A Throne Under Threat,” 2011.07.26

IMF, “Italy: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 11/176, July 2011

IMF, “Italy—Staff Report for the 2011 Article IV Consultation; Informational Annex; Public Information Notice; Statement by the Staff Representative;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Italy,” IMF Country Report No. 11/173, July 2011

Ital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2011 Economic and Financial Document, Section III National Reform Programme, 2011.05.05

Ital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taly, July 2011,” 2011. 07. 06

Ⅲ 국내외 보고서

1. 주요 보고서 요약*

가.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1년 6월 발표)

-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한 세계경제는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11-12년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은 2.5%, 개도국은 6.5%로 예상됨
 - 일본의 지진피해 및 미국의 높은 실업률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었으나 독일, 프랑스의 투자 확대 및 개도국의 경기회복으로 세계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 2011년 2사분기에는 성장이 주춤하다가 2011년 하반기에는 다시 성장 속도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 경기 하강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며 금융시장 불안도 계속되고 있음
 - 중동의 정치불안으로 원유가 인상
 - 재고량이 적고 날씨에 민감한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 지속
 - 미국은 높은 실업률, 경기침체, 부채한도 인상 등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상존

- 세계경제는 단순한 경기회복에서 경기 확장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표 1-III-1〉 세계경제 전망

Table 1. Overview of the *World Economic Outlook* Projections

(Percent change unless noted otherwise)

	Year over Year						Q4 over Q4		
	2009	2010	Projections		Difference from April 2011 WEO Projections		Estimates 2010	Projections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World Output¹	-0.5	5.1	4.3	4.5	-0.1	0.0	4.7	4.3	4.4
Advanced Economies	-3.4	3.0	2.2	2.6	-0.2	0.0	2.7	2.3	2.6
United States	-2.6	2.9	2.5	2.7	-0.3	-0.2	2.8	2.6	2.5
Euro Area	-4.1	1.8	2.0	1.7	0.4	-0.1	2.0	1.8	2.0
Germany	-4.7	3.5	3.2	2.0	0.7	-0.1	3.8	2.6	2.4
France	-2.6	1.4	2.1	1.9	0.5	0.1	1.4	2.0	2.1
Italy	-5.2	1.3	1.0	1.3	-0.1	0.0	1.5	1.3	1.2
Spain	-3.7	-0.1	0.8	1.6	0.0	0.0	0.6	0.9	2.0
Japan	-6.3	4.0	-0.7	2.9	-2.1	0.8	2.4	0.8	2.2
United Kingdom	-4.9	1.3	1.5	2.3	-0.2	0.0	1.5	2.0	2.4
Canada	-2.8	3.2	2.9	2.6	0.1	0.0	3.3	2.7	2.7
Other Advanced Economies ²	-1.1	5.8	4.0	3.8	0.1	0.0	4.7	4.0	4.3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0.7	8.4	5.1	4.5	0.2	0.0	5.9	5.1	5.3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³	2.8	7.4	6.6	6.4	0.1	-0.1	7.5	6.9	6.6
Central and Eastern Europe	-3.6	4.5	5.3	3.2	1.6	-0.8	4.9	5.1	2.2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6.4	4.6	5.1	4.7	0.1	0.0	4.5	5.2	3.6
Russia	-7.8	4.0	4.8	4.5	0.0	0.0	4.3	5.3	3.4
Excluding Russia	-3.0	6.0	5.6	5.1	0.1	0.0
Developing Asia	7.2	9.6	8.4	8.4	0.0	0.0	9.2	8.4	8.6
China	9.2	10.3	9.6	9.5	0.0	0.0	9.8	9.4	9.5
India	6.8	10.4	8.2	7.8	0.0	0.0	9.7	7.7	8.0
ASEAN-5 ⁴	1.7	6.9	5.4	5.7	0.0	0.0	6.0	5.4	5.8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7	6.1	4.6	4.1	-0.1	-0.1	5.4	4.3	4.0
Brazil	-0.6	7.5	4.1	3.6	-0.4	-0.5	5.0	4.3	3.7
Mexico	-6.1	5.5	4.7	4.0	0.1	0.0	4.4	4.4	3.7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5	4.4	4.2	4.4	0.1	0.2
Sub-Saharan Africa	2.8	5.1	5.5	5.9	0.0	0.0
<i>Memorandum</i>									
European Union	-4.1	1.8	2.0	2.1	0.2	0.0	2.1	1.9	2.3
World Growth Based on Market Exchange Rates	-2.1	4.0	3.4	3.7	-0.1	0.0
World Trade Volume (goods and services)	-10.8	12.4	8.2	6.7	0.8	-0.2
Imports									
Advanced Economies	-12.5	11.6	6.0	5.1	0.2	-0.4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7.9	13.7	12.1	9.0	1.9	-0.4
Exports									
Advanced Economies	-12.0	12.3	6.8	6.1	0.0	0.2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7.9	12.8	11.2	8.3	2.4	-0.4
Commodity Prices (U.S. dollars)									
Oil ⁵	-36.3	27.9	34.5	-1.0	-1.1	-1.8
Nonfuel (average based on world commodity export weights)	-15.7	26.3	21.6	-3.3	-3.5	1.0
Consumer Prices									
Advanced Economies	0.1	1.6	2.6	1.7	0.4	0.0	1.6	2.6	1.6
Emerging and Developing Economies ³	5.2	6.1	6.9	5.6	0.0	0.3	6.2	5.8	5.0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percent)⁶									
On U.S. Dollar Deposits	1.1	0.5	0.6	0.8	0.0	-0.1
On Euro Deposits	1.2	0.8	1.7	2.6	0.0	0.0
On Japanese Yen Deposits	0.7	0.4	0.5	0.2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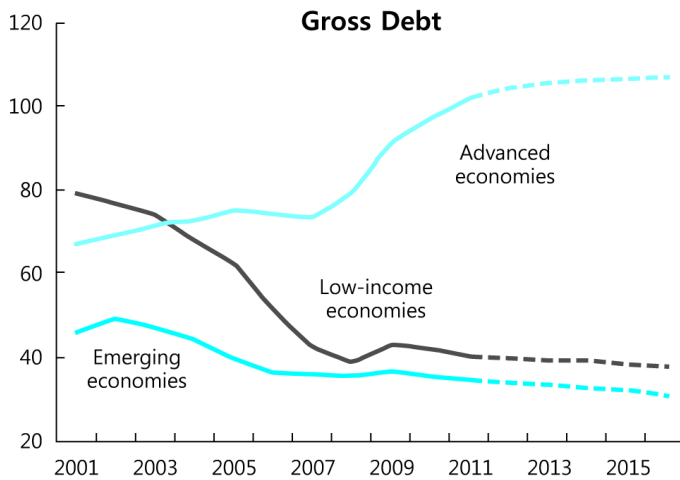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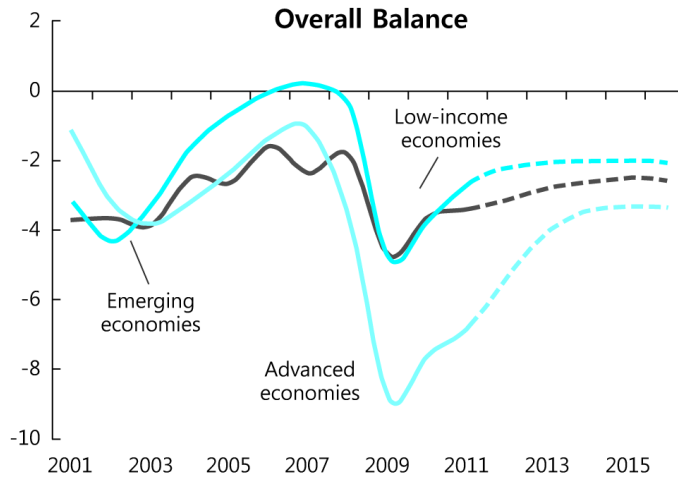
- 미국과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재정 건전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함
 - 이는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 병행해야 할 것
- 또한 금융부문 안정, 국가경쟁력 제고, 고용증대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재정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유로 국가들은 보다 유연한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위기 해결 능력을 제고해야 함
- 통화정책은 이러한 경기확장 기초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강력한 금융부문 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나. IMF, Fiscal Monitor Update (2011년 6월 발표)

- 국가별로 재정건전화 속도는 다른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속히 증가했던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는 서서히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

[그림 1-Ⅲ-1] 일반정부 재정수지와 부채 현황

(단위: GDP 대비 %)



Source: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표 1-III-2〉 각국의 재정지표 (2008-12)

(단위: GDP 대비 %)

	2008	2009	Est. Projections			Difference from April 2011		
			2010	2011	2012	Fiscal Monitor ¹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Overall Fiscal Balance								
World	-1.9	-6.7	-5.5	-4.6	-3.7	0.1	0.1	-0.2
Advanced economies	-3.6	-8.8	-7.5	-6.8	-5.3	0.1	0.3	-0.1
United States	-6.5	-12.7	-10.3	-9.9	-7.8	0.3	0.9	-0.3
Euro Area	-2.1	-6.4	-6.1	-4.3	-3.4	-0.1	0.2	0.3
France	-3.4	-7.6	-7.1	-5.8	-4.9	-0.1	0.0	0.0
Germany	0.1	-3.0	-3.3	-1.9	-1.1	0.0	0.5	0.4
Italy	-2.7	-5.3	-4.5	-4.1	-3.2	0.0	0.2	0.3
Spain	-4.2	-11.1	-9.2	-6.2	-5.1	0.0	0.0	0.6
Japan	-4.2	-10.3	-9.6	-10.5	-9.1	-0.1	-0.5	-0.7
United Kingdom	-4.9	-10.3	-10.2	-8.5	-7.0	0.3	0.0	0.0
Canada	0.1	-4.9	-5.6	-3.9	-2.6	-0.1	0.7	0.2
Emerging economies	-0.4	-4.8	-3.7	-2.7	-2.2	0.1	-0.1	-0.1
China	-0.4	-3.1	-2.6	-1.6	-0.7	0.0	0.0	0.2
India	-7.2	-9.7	-9.2	-8.5	-8.1	0.2	-0.2	-0.6
Russia	4.9	-6.3	-3.5	-1.4	-1.6	0.0	0.2	0.1
Brazil	-1.4	-3.1	-2.9	-2.8	-2.9	0.0	-0.4	-0.4
Mexico	-1.3	-4.8	-4.1	-2.7	-2.6	0.0	-0.9	-0.2
South Africa	-0.5	-5.2	-5.8	-5.7	-5.0	0.0	0.0	0.0
Low-income economies	-1.4	-4.2	-3.1	-2.9	-2.6	-0.2	-0.3	-0.2
G-20 advanced	-4.2	-9.4	-8.1	-7.6	-6.0	0.1	0.4	-0.2
G-20 emerging	-0.3	-4.8	-3.6	-2.7	-2.3	0.0	-0.2	-0.2
General Government Cyclically Adjusted Balance (Percent of Potential GDP)								
World	-2.4	-4.1	-4.4	-4.0	-3.2	0.0	0.0	-0.1
Advanced economies	-3.3	-5.5	-5.6	-5.1	-4.2	0.1	0.4	0.0
United States ²	-4.6	-6.8	-7.2	-7.2	-5.8	0.3	0.9	-0.1
Euro Area	-2.8	-4.6	-4.3	-3.2	-2.6	0.0	0.1	0.2
France	-2.9	-5.2	-4.9	-4.2	-3.6	0.4	0.2	0.1
Germany	-0.9	-1.1	-2.4	-1.9	-1.3	0.0	0.2	0.2
Italy	-2.4	-3.2	-2.8	-2.5	-1.8	0.0	0.2	0.3
Spain	-5.3	-9.7	-7.5	-4.7	-4.1	0.0	0.0	0.6
Japan	-3.7	-7.0	-7.7	-8.1	-7.7	-0.2	0.2	-0.3
United Kingdom	-5.9	-8.5	-8.0	-6.5	-5.1	0.3	0.1	0.1
Canada	0.0	-3.2	-4.0	-2.9	-2.2	0.0	0.7	0.0
Emerging economies	-2.2	-4.5	-4.0	-3.3	-3.0	0.0	-0.2	-0.2
China	-0.9	-3.4	-2.9	-1.8	-1.0	0.0	0.0	0.0
India	-9.3	-10.7	-9.6	-8.9	-8.6	0.4	-0.1	-0.9
Russia	3.7	-3.4	-1.7	-0.6	-1.3	0.1	0.1	0.0
Brazil	-2.1	-2.0	-3.1	-3.0	-2.9	-0.1	-0.4	-0.3
Mexico	-1.8	-4.5	-4.1	-3.0	-3.0	0.0	-0.9	-0.3
South Africa	-2.1	-4.8	-5.0	-4.9	-4.4	0.0	0.0	0.0
G-20 advanced	-3.4	-5.5	-5.8	-5.6	-4.5	0.2	0.5	0.0
G-20 emerging	-2.1	-4.6	-4.0	-3.3	-2.9	0.0	-0.2	-0.2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World	57.6	64.7	67.0	69.3	70.3	-0.2	-0.1	0.1
Advanced economies	79.4	91.5	96.8	101.9	104.1	0.3	0.4	0.4
United States	71.2	84.5	91.2	98.3	102.3	-0.3	-1.2	-0.6
Euro Area	69.7	79.1	85.4	87.9	88.7	1.3	1.3	1.0
France	68.3	79.0	82.4	84.8	86.6	0.6	-0.1	-0.3
Germany	66.3	73.4	83.2	82.3	81.0	3.2	2.2	1.5
Italy	106.3	116.1	119.0	120.6	120.3	0.0	0.3	0.3
Spain	39.8	53.3	60.1	67.5	69.7	0.0	3.5	2.6
Japan	195.0	216.3	220.4	233.2	236.7	0.1	4.1	3.3
United Kingdom	52.0	68.3	77.1	82.9	86.5	-0.2	-0.1	0.0
Canada	71.1	83.3	83.9	82.7	81.6	-0.2	-1.5	-1.4
Emerging economies	35.3	36.7	35.3	34.6	34.3	-0.7	-0.7	-0.4
China	17.0	17.7	17.0	16.5	15.7	-0.7	-0.6	-0.5
India	74.3	74.0	68.1	66.2	65.9	-4.1	-4.5	-4.0
Russia	7.9	11.0	11.7	11.4	12.1	1.9	2.8	3.3
Brazil	70.7	67.9	66.1	65.6	65.2	0.0	-0.1	0.2
Mexico	43.0	44.6	42.7	42.4	42.6	0.0	0.1	0.4
South Africa	27.3	31.5	36.3	40.5	42.8	0.0	0.0	0.0
Low-income economies	38.9	43.1	42.1	42.3	41.3	-0.2	-0.3	-0.6
G-20 advanced	84.3	97.3	102.9	108.4	110.9	-0.1	-0.1	0.0
G-20 emerging	35.2	35.8	33.8	32.8	32.3	-0.8	-0.7	-0.5

Sources: IMF staff estimates and projections.

Note: All country averages are PPP-GDP weighted using 2009 weights. Projections are based on IMF staff assessment of current policies.

¹ For overall fiscal balance and cyclically adjusted balance, + indicates a smaller fiscal deficit; for gross debt, + indicates a larger debt.² Excluding financial sector support recorded above the line.

- 캐나다, 미국, 유럽 선진국들은 꾸준히 재정건전화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예상보다 세입증가가 크고 지방정부 지출이 예상보다 적어 재정수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난 5월 선거 이후, FY2014까지 연방정부 예산의 균형달성 의지를 재확인, IMF는 FY2016까지 일반정부 예산의 균형 달성을 전망
 - 미국은 주식시장의 강한 회복세로 세수입이 증가, 재정적자를 상당히 감축할 수 있을 전망
 - 그러나 2011년 8월,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함에 따라 재정위험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구체적인 지출통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지출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음
 - 영국은 재정건전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 독일과 스페인은 금융부문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부채 비율 상승

- 그러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사이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함
 -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성장률의 하향조정으로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을 것
 - 포르투갈 정부는 GDP 대비 3% 목표를 1년 늦은 2013년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
 - 그리스 역시 2011년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인 7.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할 것

- 일본, 호주 등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들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여전히 재정위험이 높음
 - 일본은 낮은 경제성장률과 세수 감소, 북동부 지진피해 후 복구비용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재정적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 2011년 4월 추경(GDP 대비 0.8%) 이후 2011년 하반기에도 추경이 편성될 예정이며, 이는 2012년 세출을 GDP 대비 1%p 증가시킬 전망

- 호주는 자연재해 이후 경기 하락 및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축적된 손실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조정
- 뉴질랜드는 지진 이후 복구비용을 국가재난기금, 해외 재보험, 민간보험회사로부터 조달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차입에 의해 재원조달 (GDP 대비 2.75%)
 - 2014/15부터는 재정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
-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전망
 - 정부는 보조금 확대, 공무원 임금 및 연금 인상, 현금이전지출 증가, 세금 감면 등 재정지출 증가

다. IMF, Country Report – Republic of Korea (2011년 8월 발표)

-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여 2010년 6.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2011년 성장률은 4.5%로 전망
 - 물가상승 압력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국내적 요인과 해외 수출 둔화 및 유럽의 재정위기 등 국외적 요인은 한국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소
 -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감독 강화, 유동성 위험 관리능력 제고 등)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예금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
 -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가상승 압력을 통제하는 것으로, 2011년 인플레이션은 4.3%로 예상됨 (이는 한국은행 목표인 2~4%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
 -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긴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억제뿐만 아니라 민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음
 - 등록금 동결, 휘발유 가격 통제 등 행정부의 가격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시장 가격구조를 왜곡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음
 - 시장의 비효율성 및 경쟁을 저해하는 관행 개선 등을 추구해야 함
 - 가계부채 증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향후 급격한 부채 비용상승을 막기 위해 가계부채를 제한하는 포괄적인 정책 필요
 - 현재로서는 중립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나,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을 위한 긴축재정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함

- 2010-14 중기재정계획에서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전까지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GDP 대비 2~3%p 낮게 통제하도록 하였음
 - 보다 신축적인 환율정책 운용이 바람직함
-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외부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거시금융 정책(통화, 재정, 환율, 거시건전화 정책)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체질 강화
 - 금리 결정시 금융안정화 지표(자산가격, 비금융권 대출 스프레드, 금융권의 외환차입 비용, 용자금)를 반영하여 통화정책 체계 강화
 - 거시금융정책 내에 거시 건전성 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자본유입의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거시, 환율 정책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
 - 재정제도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중장기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수단을 발표하는 등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연금, 의료 등 미래 재정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구조적 개혁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
 - 공기업 부채 급증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정부 수준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함
-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취약성을 노출, 내수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의 다변화가 필요
 -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 간의 양극화를 좁혀야 함
 -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줄이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필요
 - 내수 진작을 통한 일자리 증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노동시장 이원화를 줄일 것
 - 급여제도를 연공서열식에서 성과급제로 전환, 여성 및 노인의 노동참여율 제고

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2011년 7월 8일)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노령·질병·실업 등에 대한 공공복지 및 민간복지)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기준, GDP 대비 12.17%(130조원)에 이룸
- 지난 2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7.5%로, 경제성장률 9.45%, 국민부담률 11.1%에 비해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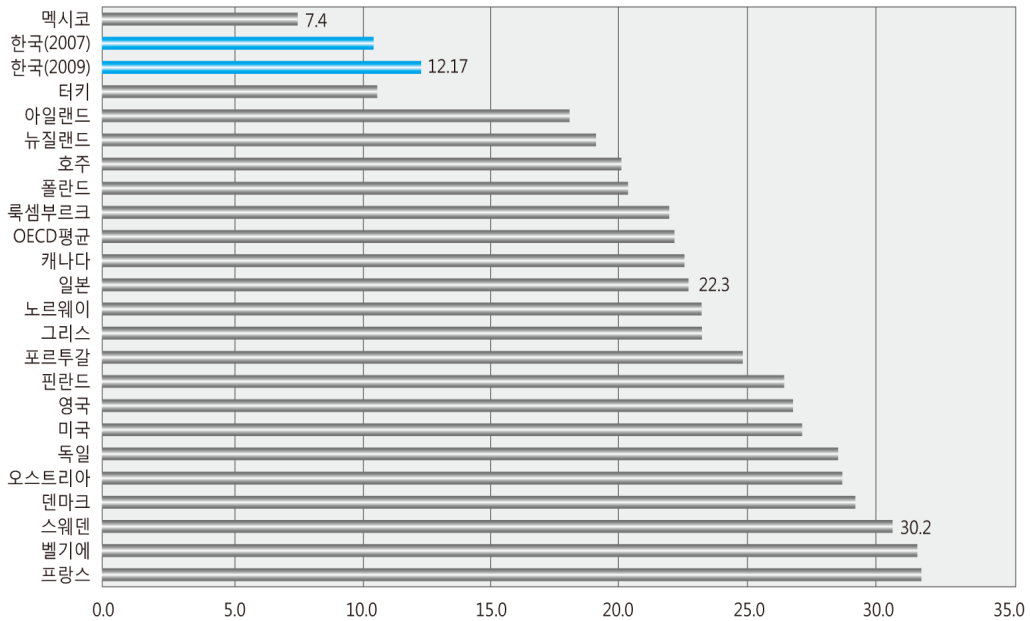
〈표 1-Ⅲ-3〉 우리나라 총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9년)

(단위: 십억원, GDP 대비 %)

연도	총사회복지지출	
	금 액	비 중
1990	6,051	3.29
1995	22,542	5.65
2000	45,673	7.48
2005	76,067	8.73
2006	90,052	9.79
2007	99,851	10.12
2008	109,906	10.95
2009	129,666	12.17
연평균증가율	17.5	(100.0)

- 이는 OECD 평균인 GDP 대비 21.77%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복지지출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작지만,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터키와 비슷하며, 멕시코(7.4%) 다음으로 낮은 수준
 - 복지지출 규모가 큰 나라는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가임
 - 그러나 최근 5년간 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3.6%로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15.3%)와 멕시코(13.3%)와 더불어 지출증가율이 높은 그룹에 속함

[그림 1-Ⅲ-2] 총사회복지지출의 국제비교 (2007년 기준)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국가의 장애인소득보장제 비교, 2011

□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요인은 사회보험 성숙, 인구구조의 변화, 여성경제활동 증가, 종교 및 기업의 사회적 공헌 증가에 기인함

- 사회보험 성숙: 연금보험 수급 대상자 증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등
- 인구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출산장려금, 노인일자리 나누기, 아동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 복지욕구 증가
-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동보육 및 노인돌봄의 사회화 등 복지 수요 증가
- 종교 및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 증가: 후원금 등 기부문화 확산, 종교계의 사회복지 시설 참여 등

□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로 빈곤율과 소득불평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복지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음

- 빈곤개선을 효과는 전체가구 기준 13.9%(2009년)이며, 특히 노인가구의 빈곤개선이 20.7%로 가장 높음
- 소득불평도 개선율은 2009년 6.2%로 이는 OECD 국가(26~87%)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 따라서 소득불평도를 완화하는 복지제도 개발 및 확대, 노동시장 이중화에 따른 불평 등 감소 등 재원분배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또한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될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마. 삼성경제연구소, 재정위기 방지의 유용한 수단, 재정준칙 (2011년 7월 27일)

- 현재 한국의 부채수준은 GDP 대비 33.5%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화, 대기업 부채, 통일 등 재정 위험요인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재정준칙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함
- 그러나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재정건전화의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 하락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재정준칙 도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재정준칙은 ①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② 구체적이며 ③ 법적구속력이 있는 ④ 장기 목표수치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을 의미
 - 바람직한 재정준칙의 요건: 실행가능성, 재정건전성, 안정적 경기운용
 -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감독이 용이할 것
 - 지속 성장이 가능한 수준의 재정준칙을 설정
 - 재정준칙 운용의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사례: 스웨덴(1996년~현재), 네덜란드(1994~현재), 호주(1998년~현재)
 - 실패사례: 미국(1986년~1993년), 일본(1997년~2003년), EU(1996년~현재)
-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스웨덴은 엄격한 지출한도 설정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경기변동

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과도한 사회보장지출, 금융권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던 스웨덴은 1996년 춘계재정계획안(Spring Fiscal Policy Bill) 도입
- 이는 GDP 대비 재정수지 2% 흑자 목표로 3개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출한도를 설정, 27개 지출 분야별로 상한선 설정
- 그런데 지출 분야별 상한선에 예비비를 두어 경기변동에 대비하는 유연성 확보
- 1998년 재정목표 달성 후 현재까지 유지

□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네덜란드는 정부지출 상한선 설정 및 세수증대에도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는 시스템 마련

- 90년대 초 유가상승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자 1994년 재정수지 지표관리 방식을 지출 총액 관리 방식(New Budget Formulation System)으로 전환
- 호황 시 세수가 증가해도 자동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고, 정권 임기인 4년간 정부의 실질 순세출에 상한선 설정
- 보수적 경제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책정하여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 1998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

□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호주는 단기와 중장기 목표를 공표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 재정 정책 성과에 대한 감독

- 호주는 1975~1995년까지 겪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예산정직법(Budget Honesty Act)을 도입
- 중장기 재정전략으로 3년 단위 지출총량, 부문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측치를 발표하고, 단기 재정전략으로 3년내 경기변동에 따른 상황 변화 반영
- 또한 재정 관련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재정정책 성과에 대한 감독을 강화
- 1998년 0.7%의 재정흑자로 전환, 2000년대 초반까지 재정흑자 유지

□ 재정건전화에 실패한 미국은 재정적자 한도를 도입하였으나,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등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

- 80년대 초 대규모 감세조치, 국방비 증액, 경기침체 등으로 균형재정이 붕괴하자 1986년 균형예산 실현을 위한 긴급 재정적자 통제법(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을 도입
-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 규모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재정지출을 자동 삭감하는 재정준칙 도입
- 성장률, 물가 등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 부족으로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1993년 준칙 폐기

□ 재정건전화에 실패한 일본은 무리한 재정목표를 설정하여, 경기를 위축시키고 목표달성에도 실패

- 90년대 버블 붕괴 후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1997년 재정구조개혁법을 도입
- 2003년까지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무리하게 증세와 지출억제를 시행
- 결국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과 더불어 경기가 위축되고,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은 더욱 증가하여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에 실패

□ 현재 최대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EU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준칙을 적용하였는데 구속력 결여로 재정건전화 실패

- EU 회원국들은 80년대 경기침체 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을 도입하여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국가채무는 GDP 대비 60% 이내로 억제하도록 함
- 이론적으로는 회원국이 2년 연속으로 적자한도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 결여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심지어 EU 핵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도 재정준칙 준수에 실패
- 정치·경제상황이 다른 회원국들에게 획일적인 준칙을 강요하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는 미비하다는 구조적 결함을 내생적으로 지니고 있음
 - 현재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재정위기가 그 실패의 결과물

2. 보고서 목록

가. 국제기구

□ IMF

1. Impact of the Global Crisis on Banking Sector Soundness in Asian Low-Income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15 (01 May, 2011)
2. Identifying Vulnerabilities in Systemically-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in a Macro-financial Linkages Framework, IMF Working Paper, WP_11_111 (01 May, 2011)
3. New Shocks and Asset Price Volatility in General Equilibrium, IMF Working Paper, WP_11_110 (01 May, 2011)
4. Identifying Fiscal Policy Transmission in Stochastic Debt Forecasts, IMF Working Paper, WP_11_107 (01 May, 2011)
5. Macroeconomic Costs of Higher Bank Capital and Liquidity Requirements, IMF Working Paper, WP_11_103 (01 May, 2011)
6.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in Central Europe: the Case of the CE4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01 (01 May, 2011)
7. Assessing Fiscal Stress, IMF Working Paper, WP_11_100 (01 May, 2011)
8. Tax Biases to Debt Finance: Assessing the Problem, Finding Solutions,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2011/11 (03 May, 2011)
9. Inflation Dynamics and the Great Recession, IMF Working Paper, WP_11_121 (01 June, 2011)
10. Precautionary Savings and Global Imbalances in World General Equilibrium, IMF Working Paper, WP_11_122 (01 June, 2011)
11. Reforming the Tax System to Promote Environmental Objectives: An Application to Mauritius, IMF Working Paper, WP_11_124 (01 June, 2011)
12. Information Rigidity in Growth Forecasts: Some Cross-Country Evidence, IMF Working Paper, WP_11_125 (01 June, 2011)

13. Measuring Fiscal Decentralization - Exploring the IMF's Databases, IMF Working Paper, WP_11_126 (01 June, 2011)
14. The IM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 Maps of Government for 74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_11_127 (01 June, 2011)
15. A New Action-based Dataset of Fiscal Consolidation, IMF Working Paper, WP_11_128 (01 June, 2011)
16. Risky Bank Lending and Optimal Capital Adequacy Regulation, IMF Working Paper, WP_11_130 (01 June, 2011)
17. The Development of Local Debt Markets in Asia, IMF Working Paper, WP_11_132 (01 June, 2011)
18. Sovereign Spreads and Contagion Risks in Asia, IMF Working Paper, WP_11_134 (01 June, 2011)
19. Global Liquidity: Availability of Funds for Safe and Risky Assets, IMF Working Paper, WP_11_136 (01 June, 2011)
20. Global and Regional Spillovers to GCC Equity Markets, IMF Working Paper, WP_11_138 (01 June, 2011)
21. Should Unconventional Balance Sheet Policies be Added to the Central Bank Toolkit? A Review of the Experience So Far, IMF Working Paper, WP_11_145 (01 June, 2011)
22. Policy Coordination in Fiscal Federalism: Drawing Lessons from the Dubai Debt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147 (01 June, 2011)
23. Post-conflict Recovery: Institutions, Aid, or Luck? IMF Working Paper, WP_11_149 (01 June, 2011)
24. The Role of Monetary Policy in Turke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F Working Paper, WP_11_150 (01 June, 2011)
25. Towards a Best Practice of Modeling Unit of Measure and Related Statistical Metadata, IMF Working Paper, WP_11_152 (01 June, 2011)
26. Raising the Consumption Tax in Japan: Why, When, How?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1/13 (16 June, 2011)

27. Iceland: Advancing Tax Reform and the Taxation of Natural Resources, Country Report No. 11/138 (16 June, 2011)
28. Kingdom of Netherlands-Netherlands: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Country Report No. 11/144 (21 June, 2011)
29. Luxembourg: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Update , Country Report No. 11/148 (28 June, 2011)

□ OECD

1. Policies to Rebalance Housing Markets in New Zealand,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78 (July 01, 2011)
2. The Sharing of Macroeconomic Risk,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77 (July 01, 2011)
3.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formal Economy,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3 (May 31, 2011)
4. Tax Competition Between Sub-Central Government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72 (May 31, 2011)
5. The Growth Effects of Current Account Reversal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43 (May 30, 2011)
6. Adjusting Fiscal Balances for Asset Price Cycl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8 (May 25, 2011)
7. Improving the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in the United Kingdom,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7 (May 25, 2011)
8. Understanding the Recent Surge in the Accumulation of International Reserv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6 (May 24, 2011)
9. Episodes of Large Capital Inflows and the Likelihood of Banking and Currency Crises and Sudden Stop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5 (May 18, 2011)
10. The Effect of Episodes of Large Capital Inflows on Domestic Credit,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4 (May 17, 2011)

11. Medium-Term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s, OECD Economics Department WP No.863 (May 17, 2011)

□ World Bank

1. Financial development and survival of African agri-food export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49 (May, 2011)
2. Political economy studies: are they actionable ? some lessons from Zamb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56 (May, 2011)
3. Economic performance under NAFTA : a firm-level analysis of the trade-productivity linkag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61 (May, 2011)
4. Mobile banking and financial inclusion : the regulatory lesso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64 (May, 2011)
5. Fiscal policy and debt dynamics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66 (May, 2011)
6. Incentive compatible reforms :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investments in Mongol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67 (May, 2011)
7. Collective action, political parties and pro-development public policy,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76 (June, 2011)
8. Assessing the long-term effects of conditional cash transfers on human capital : evidence from Colombi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681 (June, 2011)
9. The politics of power : the political economy of rent-seeking in electric utilities in the Philippin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704 (June, 2011)
10. How do ex ante simulations compare with ex post evaluations ? evidence from the impact of 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 no. WPS 5705 (June, 2011)

□ ADB

1. When Fast Growing Economies Slow Down: International Evidence and Implications

-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Jun 2011)
- 2. Effectiveness of Capital Restrictions: Do Regional and Income Differences Matter?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Jun 2011)
- 3. Can Skill Diversification Improve Welfare in Rural Areas? Evidence from the Rural Skills Development Project in Bhutan,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Jun 2011)
- 4. Financial Integration in East Asia: An Empirical Investigation,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y 2011)
- 5. Regional Corridors Development in Regional Cooperation, ADB Economics
- 6. Underlying Trends and International Price Transmission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DB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 (May 2011)

□ ECB

- 1. Determinants of credit-less recoveries, ECB WP No. 1358 (Jun 2011)
- 2. Assessing the sensitivity of inflation to economic activity, ECB WP No. 1357 (Jun 2011)
- 3. Systemic risk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a monetary model, ECB WP No. 1352 (Jun 2011)
- 4. Potential output in DSGE models, ECB WP No. 1351 (Jun 2011)
- 5. The optimal width of the central bank standing facilities corridor and banks' day-to-day liquidity management, ECB WP No. 1350 (Jun 2011)
- 6. Theoretical notes on bubbles and the current crisis, ECB WP No. 1348 (Jun 2011)
- 7. Sovereign credit ratings and financial markets linkages: application to European data, ECB WP No. 1347 (Jun 2011)
- 8. Systemic risk-taking: amplification effects, externalities, and regulatory responses, ECB WP No. 1345 (Jun 2011)
- 9. Have euro area and EU economic governance worked? Just the facts, ECB WP No. 1344 (May 2011)
- 10. Fiscal data revisions in Europe, ECB WP No. 1342 (May 2011)

11. Financial frictions and optimal monetary policy in an open economy, ECB WP No. 1338 (May 2011)
12. Who invests in home equity to exempt wealth from bankruptcy?, ECB WP No. 1337 (May 2011)
13. A monetary policy strategy in good and bad times: lessons from the recent past, ECB WP No. 1336 (May 2011)
14. The bank lending channel: lessons from the crisis, ECB WP No. 1335 (May 2011)
15. On the importance of sectoral and regional shocks for price-setting, ECB WP No. 1334 (May 2011)

나. 국내학회

□ 한국재정학회 (<http://kapf.or.kr>)

재정학연구 제4권 제2호 (2011. 05)

1.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방안/황성현
2. 독일과 우리나라의 통일비용 및 통일재원 비교 연구/염명배 · 유일호
3.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GDP 비중 추정/성명재
4. 기술보증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효과: IV-Quantile Treatment Effect 추정으로부터의 증거/우석진 · 안중범 · 정지운
5. 국민연금 사각지대 규모추정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노후빈곤완화 효과/강성호
6. 저소득 근로자 지원정책의 실효성 분석 - 실업보험, EITC, 최저임금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상호 비교/전영준

정책 세미나_ 반값등록금 논쟁과 국가재정 (2011. 06. 25)

1.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 - 반값 등록금 논란에 부쳐/이만우
2. 반값 등록금 논쟁과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방향 - 정부재정지원 규모와 방식을 중심으로/김진영

□ 한국재정정책학회 (<http://www.public.or.kr>)

재정정책논집 제 13권 1호 (2011)

1. 국민부담과 공공사회지출의 적정수준 -복지국가유형별 접근 /남상호 · 최병호
2. 가구의 특성이 현재 및 미래의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황진영 · 최건우
3.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이순배 · 이현우
4. 부양의식 및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와 소득보장효과/강성호
5. 주요국의 탄소세 운용 사례와 정책적 함의/이상호 · 유태현 · 한재명
6. 정책수단으로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연구/박정현

2011 하계 학술 대회 (2011.07.01)

1.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과 정책과제/박인화
2.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이용화
3. Fiscal Policy Making and “Fiscal Policy Committee”(재정정책 결정과정에서 재정정책
위원회의 역할)/이성규
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국가 재편과 한국의 복지정책 방향/석재은
5. 사회복지 재원의 안정적 조달방안/최성은
6. 지속가능지역경제발전과 정부 간 재정관계/우명동
7. 독일의 노동시장개혁과 정부 간 재정관계의 변화/김상철
8.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고용/김상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9.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김상호(관동대학교)
10. 인적자본분포의 불평등과 정부지출의 효율성/황진영
11. 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김대영
12.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출 국제비교/박승준 · 홍인기
13. 민법상의 법정 부부재산제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개선방안/
박성만 · 정범식
14.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정찬홍
15. 혼성체와 혼성상품의 국제거래와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김진우

□ 한국지방재정학회 (<http://www.kalf.or.kr>)

한국지방재정논집 제 16권 제1호(2011년 05월)

1. 지방재정 건전성 분석/허명순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이현우 · 이미애
3. 지역고용창출 지원기능과 정부 간 재정관계에 대한 소고/우명동

□ 한국경제학회 (<http://www.kea.ne.kr>)

경제학연구 제59권 2호 (2011년 06월)

1. 인구 고령화의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노동공급 및 공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김태정
2.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 확충의 비교/이태규 · 박갑제

다. 국내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재정포럼

1. 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안종석 외 (2011.05)
2. 정치구조가 조세 ·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박상원 외 (2011.05)
3. FTA 확대에 대응한 관세율체계 변화 연구/정재호 · 이홍식 (2011.05)
4.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김승래 · 류덕현 (2011.05)
5. 선진국의 의료부문 재정 건전화 정책/이은경 (2011.06)
6.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박형수 · 송호신 (2011.06)
7. 발생주의회계 및 비용회계와 재정관리에 관한 연구/박노욱 · 박형수 · 송호신 (2011.06)
8. 사회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전병목 · 이은경 (2011.06)

세미나 자료

1. 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한국조세연구원 (2011.05)

기타연구자료

1. KIPF 재정동향 제2권 제2호(제6호) (2011.05)
2. KIPF 공공기관 동향/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06)
3. 주요국의 공공기관(III) - 싱가포르, 중국, 이탈리아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2011.06)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예산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1 (2011.06.15)
2. [2010 결산분석 시리즈 1] 2009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2011.06.21)
3.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 (2011.07.04)
4.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 [국회운영 · 법제사법 · 정부 · 기획재정 · 외교통상
통일] (2011.07.04)
5.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 [국방 · 행정안전 · 교육과학기술] (2011.07.04)
6.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I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 농림수산식품 · 지식경
제] (2011.07.04)
7.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V [보건복지 · 환경노동 · 국토해양 · 여성가족]
(2011.07.04)

경제분석 보고서

1.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4호) (2011.05.04)
2.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 모형 - 기존 모형의 검토 및 개선방안 - (2011.06.01)
3. [경제현안분석 제 62호] 재정의 경기안정화 효과 분석 - 자도안정화 장치를 중심으로
(2011.06.07)
4. NABO 경제 및 재정통계(제15호) (2011.06.11)
5. NABO 경제동향&이슈(통권 제10호) (2011.06.27)

기타보고서

1. [지표] 2011년 주요 재정·경제 지표 (2011.03.31)
2.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겨로가보고서 (2011.05.31)

포럼/간담회

1.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효과 (2011.04.05)
2.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 변천 및 관련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2011.04.29)
3. 우리나라 조세재정 정책효과 분석 (2011.05.04)
4. 정부 규제개혁 평가 (2011.05.11)
5. 국방분야 중장기 자원 배분 연구 (2011.05.18)
6. 국가 R&D 사업 성과 평가: 기업 R&D지원 성과 평가 (2011.05.18)
7. 환경산업육성사업 평가 (2011.06.01)
8. 사학연금 수입/지출 추계 (2011.06.02)
9. 신용카드 사용의 세수효과 분석 (2011.06.08)
10. 부가가치세법 관련 (2011.06.09)
11.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2011.06.16)
12. 보험료 부과체계 및 개선방안 (2011.06.28)
13. 가계부채 취약성 점검 (2011.07.05)
14. 재정통계개편 및 정부범위 설정을 위한 주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산정 (2011.07.06)
15.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징과 민감도 분석 (2011.07.07)
16. 국회의 연중 예산심사 방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2011.07.08)
17. 2010년도 신규 재정사업 평가 (2011.07.12)
18. 저축은행 공적자금 (2011.07.15)
19. 개인신용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상환위험 분석 (2011.07.21)

□ KDI (<http://www.kdi.re.kr>)

보고서

1. KDI 산업연관표 DB(2010) (2011.04.27)
2. click 경제교육 2011. May (2011.04.27)
3.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 (2011.04.29)
4.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2011년 1/4분기) (2011.04.29)
5. 나라경제 2011.5 (2011.04.30)
6. KDI 경제동향 2011.5 (2011.05.06)
7. 공천제도와 입법생상성: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 (2011.05.18)
8. KDI 경제전망, 2011 상반기 (2011.05.20)
9. Economic Bulletin, May 2011 (2011.05.23)
10. 나라경제 2011. 6 (2011.05.30)
11.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5월 (2011.05.31)
12. click 경제교육 2011. June (2011.05.31)

국제회의/세미나/공청 · 토론회

1. KDI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싱크탱크의 역할」 (2011.04.29)
2. KDI · 서울대학교 공동 국제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이론과 정책」 (2011.05.27)
3.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지구 책임적 문명 건설」(2011.06.21)

□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 국제경제정보 제2010-31호: 일본의 소비세 인상 논란의 배경과 전망 (2011.05.12)
2. 국제경제정보 제2011-19호: 일본의 재정상황 악화 배경과 전망 (2011.05.13)
3. 국제경제정보 제2011-21호: 유로지역내 경제력 불균형 현황과 과제 (2011.05.19)
4. 국제경제정보 제2011-25호: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의 재부상 배경과 전망 (2011.06.02)
5. 국제경제정보 제2011-24호: 중국 불태화 정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011.06.02)

6.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화적 운용에 관한 연구 (2011.06.02)
7. 자본유출입에 대한 정책대응 사례와 평가 (2011.06.02)
8. 국제경제정보 제2011-27호: 최근 글로벌 불균형 축소 논의의 주요 내용 (2011.06.23)
9. 국제경제정보 제2011-28호: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2011.06.23)
10. 국제경제정보 제2011-29호: 브라질의 환율안정 정책의 유효성 (2011.06.30)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보고서

-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 손민중, SERI 경제포커스 제 336호 (2011.05.03)
- 중국 통화금융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엄정명, SERI 경제포커스 제 337 호 (2011.05.17)
-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과 경제적 파장/이은미 · 문외술 · 손민중, CEO인포메이션 제 806 호 (2011.06.01)
- 미국의 위상을 위협하는 재정적자: 원인과 해소 전망/이동원, SERI 경제포커스 제 340 호 (2011.06.14)

□ LG 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보고서

1. Weekly 포커스: 균형 환율 수준과 향후 환율 정책 방향/이창선 (2011.05.11)
2. LGERI 리포트: 장기적인 물가 압력, 경제 구조 변화 요구한다/신민영 · 윤상하 (2011.06.28)
3. LGERI 리포트: 근본대책 마땅찮은 남유럽 위기, 세계경제 위기의 불씨/유승경 · 배민근 (2011.07.05)
4. 동향과 진단: 이탈리아로 튼 유럽재정위기 불씨/이창선 · 배민근 (2011.07.18)

□ 한국경제연구원 (<http://www.keri.org>)

1.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김영신 (2011.05.20)

□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CFE 리포트

1. 대학 등록금 문제의 현황과 해법 찾기/현경아 (2011.06.30)

2012정책제안

1. 재정준칙을 법률로 만들자/ 현진권 (2011.07.14)

□ 국가경영전략연구원 (<http://www.nsi.or.kr>)

1. [705회] G2시대 중국 경제의 향방/오승렬 (2011.05.18)
2. [709회] 한국경제, 과연 이래도 괜찮은가?/장용성 (2011.06.15)
3. [711회] 2012년 중국 정치 판도 어떻게 바뀔까?/김기재 (2011.06.29)
4. [713회] 향후 국정운영 방향/김황식 (2011.07.1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 미·중 간 ‘중복 부과’ 분쟁에 대한 WTO 판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나수엽·여지나 (2011.05.04)
2. 2011년 G20 회의의 주요 의제와 특징/윤덕룡·오승환 (2011.05.13)
3.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조달 실태와 중국 재정 상황 평가/최필수 (2011.05.17)
4.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과 시사점/권율·박수경 (2011.06.27)
5. 그리스의 채무재조정 가능성과 향후 전망/강유덕·이현진 (2011.06.28)

□ 한국금융연구원 (<http://www.kif.re.kr>)

보고서

1. The Roles of Financial and Monetary Stabilities for Fiscal Soundness/Man-Woo Lee · Junggun Oh · Dong Heon Kim (2011.05)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이기영·조영삼 (2011.05)
3.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외환업무 관련 효율화 방안/노형식·서병호 (2011.05)
4. KIF 금융상황지수/박성욱·이규복·이명활·임형석·장민 (2011.06)

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방안/이시연 (2011.07)
6. 국내은행의 외환부문 리스크 연계 구조에 대한 분석/박성욱 · 송민규 (2011.07)

세미나

1. 거시건전성 규제 및 감독 체계의 개선과 과제 (2011.05.12)
2. KIF금융조찬포럼-국제 · 거시금융분과 (2011.05.12)
3. 국내 금융산업 재편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2011.05.24)
4. 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시장의 변화 (2011.05.31)
5. KIF금융조찬포럼-금융시장 · 제도분과 (2011.06.09)
6. 규제개혁과 금융의 미래 (2011.06.23)
7. 한국 금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1.06.30)
8.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 (2011.07.11)

제 2 부 주요국의 재정동향

I. 주요국 동향

II. 미 국 (FY2011: 2010.10~2011.9)

III. 일 본 (FY2011: 2011.4~2012.3)

IV. 영 국 (FY2011-12: 2011.4~2012.3)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VI. 독 일 (FY2011: 2011.1~2011.12)

VII.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VIII. 호 주 (FY2011-12: 2011.7~2012.6)

I

주요국 동향*

-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과 대지진 후 일본 경제의 악화, 그리고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미국은 부채상한 인상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리더십 부족,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양당의 정치적 대립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 그 결과 S&P는 신용등급을 강등하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음
 - 일본은 지난 3월 발생한 동북부 대지진 이후, 재건을 위해 2차례에 걸친 추경을 발표하였으나 향후 몇 년간은 성장률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재원조달: 1차 추경 4.2조엔은 세출삭감 및 세외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2차 추경 2조엔은 FY2010 결산잉여금에서 조달
 - 영국은 순정부채무의 법적 상한 설정을 위한 법안을 상정하고, 연금 기여율 인상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에 위한 노력 강화
 - 프랑스는 제1-2차 수정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그리스 지원 및 유럽금융안정화기금 확충 등 지출이 증가할 예정
 - 독일 정부는 익년 예산지침이 재정건전화임을 명확히 하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함
 - 캐나다는 경기부양책에서 인프라투자 종료 시점을 2011-12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나, 향후 부채 및 재정수지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2014-15년에 균형재정 달성을 전망
 - 호주는 지난 5월 발표된 2011-12 예산안을 승인, FY2012-13에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동시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들을 제시

* 이은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eklee@kipf.re.kr)

- 각국의 건강보험은 재원조달 방식이 사회보험 방식 혹은 조세 방식이든 상관없이 재정
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원을 조세로 운영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안정 추구
 - 영국의 의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0% 수준이며 NHS 효율화, 특히 행
정관리시스템 정비 및 운영비 삭감을 통해 FY2015-16까지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계획
 - 캐나다의 보건지출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2%를 기록하였고, 향후 2007-07부
터 2013-14까지 보건이전지출을 매년 6%씩 증가시키는 10년 계획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은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어려울 전망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 지방에 보건예산 이양 등
이 권고되고 있음
 - 호주의 보건지출은 FY2008-09 기준, GDP 대비 9%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확보,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 등을 꾀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원을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일본, 독일, 프랑스는 재정건전화화를 위해 주
로 지출억제 방식을 채택하였음
 - 일본의 공공의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7.6%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
여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후기고령자 건강보험 분리
 - 독일의 총 보건지출은 GDP 대비 11.6%(2009년 기준)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로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인상하였음
 - 프랑스는 2009년 기준, GDP 대비 9.2%를 공공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건강보
험 재정건전화화를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출증가율 목표
(ONDAM)를 설정하였음
 - 건강보험이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2009년 기준 GDP
대비 16.5%로 상당히 높음
 - 공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도 GDP 대비 5.5%를 차지
(2010년 기준)

- 2010년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무보험자 감소(수혜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 및 의료 비용 증가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시행

Ⅱ

미국 (FY2011: 2010.10~2011.9)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해당사항 없음

나. 추경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11.10월 FY2010 결산 발표 예정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법정 부채 한도 상향조정

- '5.16일(현지시간) 美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한도인 14조 2,940억달러에 도달
 - 이에 따라 재무부는 8.2일까지 차입능력을 연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채권발행 중지 기간'을 선언
 - 재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백악관과 의회 간*에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연장
 - * 그간 공화당에서는 부채한도 상향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재정지출의 대폭 삭감을 주장

- 7.31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제시한 부채 조정 마감 시한(8.2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백악관과 의회지도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 이번 협상은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더불어 재정적자 감축문제를 함께 논의함으로써 민주, 공화 양당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음
 -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 감축 논의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사회보장 예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삭감에, 공화당은 세금인상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이번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안은 8.1일과 2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대통령 서명을 마침으로써 사상 초유의 채무 불이행 사태 모면
 - 8.1일 하원에서는 찬성 269 대 반대 161로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
 - 8.2일 상원은 찬성 74 대 반대 26으로 합의안을 가결하였고, 같은 날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 법안에 서명

- 이번 부채 상한선 조정 합의안은 재정적자 감축과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이 2단계로 진행

- (재정적자 감축) 1단계로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지출을 삭감하고 2단계로 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11월 23일까지 1조 5천억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제시
 - 의회는 특별위원회의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해 올해 12월 23일까지 표결
 - 특별위원회는 민주, 공화 양당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
 - 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연방지출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1조 2천억달러의 일률 삭감 조치 시행
 - 단,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고용보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은 일률 삭감에서 제외되며 메디케어의 경우 삭감 한도 설정
- (부채 상한조정) 최소 2조 1천억달러에서 최대 2조 4천억달러까지 상향 조정
 - (1단계)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고 부채한도 9천억달러 상향 조정
 - (2단계) 아래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채한도는 1조 2천억달러 상향조정되고, 하기 조건이 만족되었을 경우 각 경우에 따라 상향조정
 - 법에 규정된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이 통과될 경우 1조 5천억달러 추가 상향 조정
 -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조 2천억달러 이상의 적자감축 성공 시 적자감축액과 동일한 규모로 상향조정(단, 1조 5천억달러까지 상향조정 가능)

2) S&P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

- 8.5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상위인 트리플A(AAA)에서 한 단계 낮은 더블A플러스(AA+)로 하향조정
 - * 지난 4월 S&P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의회와 정부의 부채상한 협상이 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것과 이번 협상에서 보여진 정치적 대립이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주요 원인
 - 8.2일 정치권은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 4천억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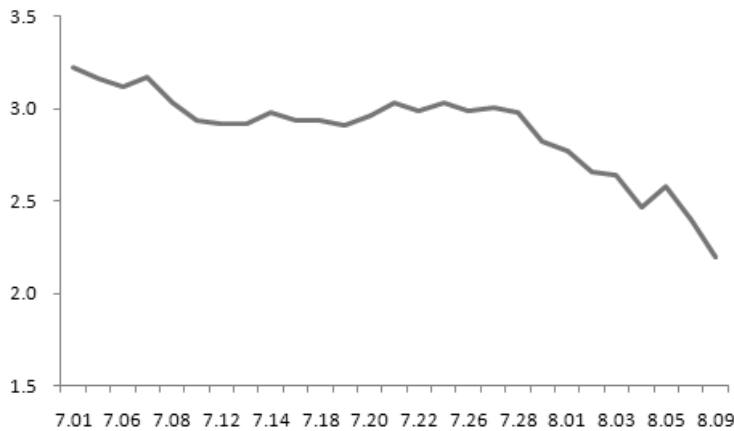
러 줄이는 내용의 계획에 합의하였으나 이는 S&P가 부채협상 과정에서 언급한 4조달러 규모의 적자감축에는 못 미치는 수준

- S&P는 향후 2년 안에 신용등급을 추가 강등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
- 단, S&P와 함께 3대 신용평사가로 꼽히는 무디스와 피치는 현재의 ‘AAA’ 신용등급을 유지

□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우려 및 유럽 채무위기로 세계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 미국이 정부 부채상한선 조정과 함께 대폭적인 지출 삭감을 결정하여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가자 미국, 유럽, 아시아의 주식시장 폭락

[그림 2-Ⅱ-1] 10년 만기 국채금리 추이



자료: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다만, 신용등급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채권가격은 오히려 강세 시현
 -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부채 협상 타결 전보다 하락 추세
 - 유럽 채무위기 등에 따른 투자 대안으로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 8.9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저금리 유지 발표로 같은 날 뉴욕 증시 반등
 - 연방준비제도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로금리에 가까운 현재의 금리 기조를 2013년 중반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3)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군 계획 발표

- 6.2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병력 철군 계획을 발표
 - 올해 말까지 1만명의 아프간 주둔 미군을 철수시키고 내년 여름까지 총 3만 3천명을 철수시킨다는 계획
 - 이는 '09.12월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을 추가 파병하면서 '11.7월 이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셈
 - 내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미군을 철수하여 '14년까지 철군을 완료
 -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재정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
 - '01년 9·11 테러 이후 약 10년간 전쟁을 치루면서 소요된 예산은 10조달러
 - 오바마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제는 국내에서 나라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6.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직속 일자리·경쟁력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
 - * 지난 1월 출범된 일자리·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인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최고경영자(CEO) 등 26명의 경제계 지도자들로 구성

<주요내용>

- ① **(직업훈련)** 민간기업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커뮤니티 칼리지나 직업학교 등과 파트너십 구축 필요
- ② **(행정절차 간소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건설 및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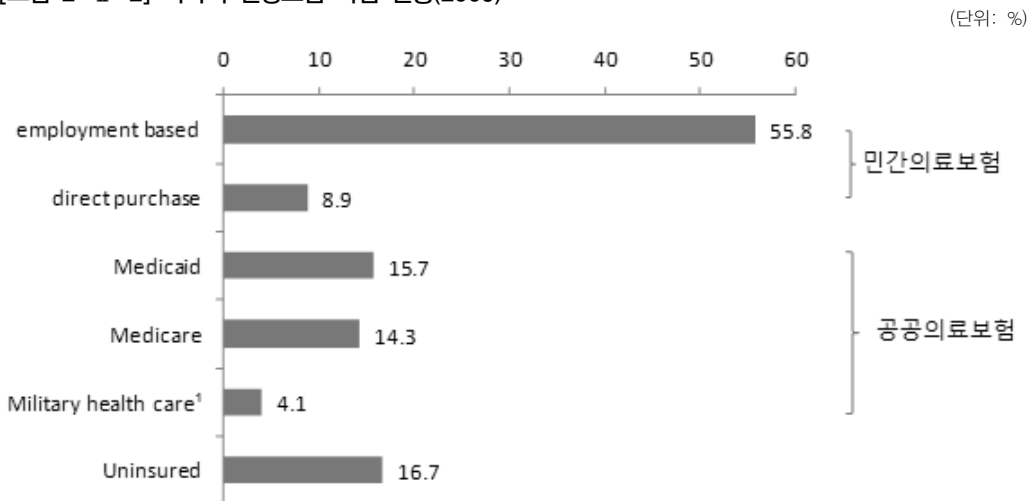
- ③ **(관광산업 진흥)**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자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광 홍보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 ④ **(중소기업 대출장벽 완화)** 중소기업청의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 및 지원 강화
- 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건설일자리 창출)**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설비 개선 사업으로 건설일자리 창출

3.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민간부문과 상대적으로 미약한 공공부문의 의료보험제도로 특징지을 수 있음
 - 공공부문의 의료보장 역할이 제한적(주로 저소득층, 노년층)이기 때문에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발생에 취약
 - 이에 '10.3월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 및 의료비용 증가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시행

[그림 2-Ⅱ-2] 미국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2009)



주: 1. Tricare와 CHAMPVA(Civilian Health and Medical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포함

2. 하나 이상의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항목에 중복 포함되어 합계가 100%가 아님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2010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s

- 여기서는 미국의 공공의료보험제도¹⁾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에 대한 제도를 소개

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외에도 저소득층 어린이, 재향군인, 연방공무원, 인디언 대상 의료보험 등이 운영

-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및 신체 장애인, 만성 신장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
-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표 2-Ⅱ-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비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행정	연방정부	주정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노인 ▶ 신체 장애인 ▶ 만성 신장질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조사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세(payroll tax), 보험료, 연방정부 일반회계 보전, 연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정부 및 연방정부 재원
보장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 A, B, C, D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 A(입원), 파트 B(외래), 파트 C(managed care), 파트 D(외래 처방약에 대한 급여) -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파트 A, B 자동가입 ※ 다만, 파트 B는 선택 가능 - B, C, D는 보충형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주에 따라 상이하나 입원비, 외래 진료비, 의사진료, 임신관련 의료서비스 등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음

□ (메디케어) '65년 사회보장법 개정으로 메디케어 도입

- (행정) 복지부(HHS) 산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메디케어 관장
- (재원조달) 메디케어를 구성하는 Part별로 재원조달 방법이 상이
 - (Part A) 주로 급여세*로 재원 조달
 - * 전체 급여액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1.45%를 납부(총 2.9%)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2.9%를 납부하는 대신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 (Part B & D)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보전
 - (Part C) 민간 보험에 대한 지급은 Part A와 B의 자금을 혼합하여 조달
 - (지출 구성비) '10년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지출 중 35%가 급여세로 충당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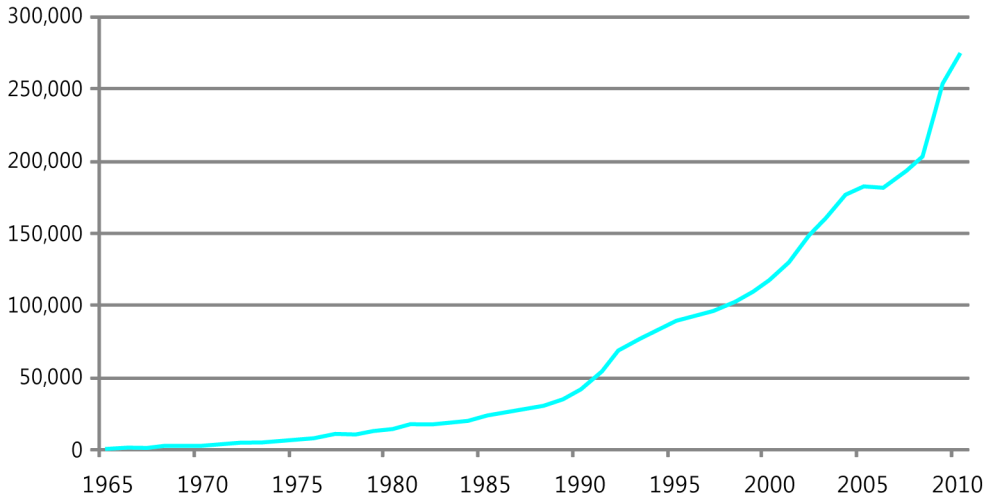
12%가 보험료, 39%가 연방정부 일반회계에서 보전

□ (메디케이드) '65년 사회보장법으로 최초 도입

- (행정) 주정부에서 메디케이드를 관장하나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센터 (CMS)에서도 주정부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서비스 전달 및 재원조달, 자격기준 등에 대한 요건 수립

[그림 2-Ⅱ-3]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보조금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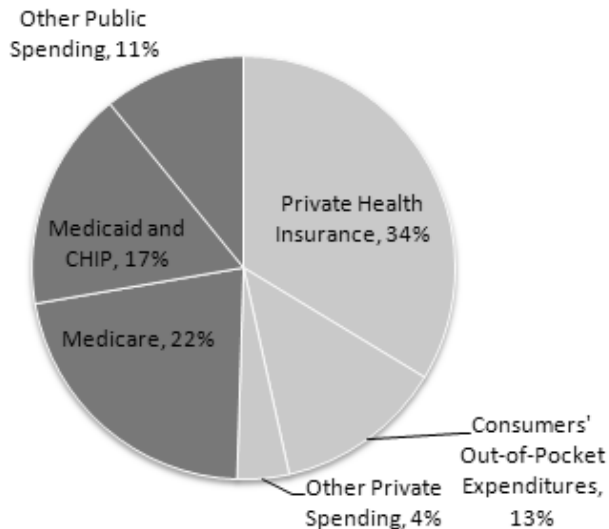
- (재원조달)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을 통해 지원되며,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재원의 최대 절반까지 부담
 - 연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비율은 주정부의 1인당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1인당 소득이 높은 주는 50%까지 지원받고 1인당 소득이 낮은 주는 그 이상의 지원을 받음

나. 건강보험 재정²⁾

- 미국의 보건·의료 지출은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
 -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은 1960년 4.8%에서 1985년 9.8%, 2009년 16.5%로 성장
 - * 민간부문+정부부문 지출
 -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도 FY1985에 GDP 대비 2.2%였던 것이 FY2010에는 5.5%로 성장

- '09년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합한 보건·의료 지출은 2조 3천억달러(GDP의 16.5%) 차지
 - 이 중 민간부분이 51%, 공공부분은 49%

[그림 2-Ⅱ-4] 보건·의료비용 지출 구성 (2009)



주: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는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

- 최근 수십년간 수급자 증가 및 1인당 비용 증가에 기인하여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은 급격히 증가

2) CBO's 2011 Long-Term Budget Outlook(2011.6)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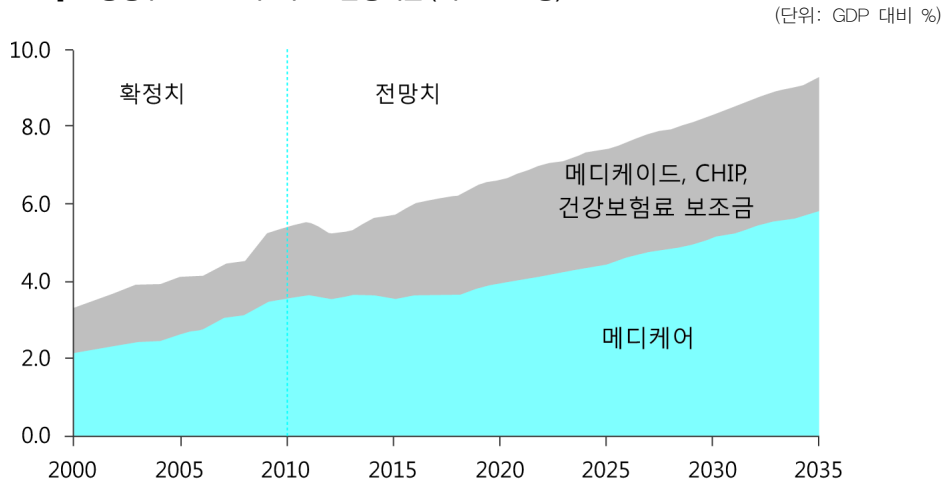
- 1985년에서 2010년 사이 메디케어에 대한 총연방지출은 GDP의 1.7%에서 3.6%로 증가하였으며, 동일 기간 메디케이드 역시 GDP의 0.5%에서 1.9%로 증가
 - 주정부까지 합한 메디케이드 총지출은 GDP의 1.0%에서 2.7%로 상승
- 1인당 보건·의료 지출 증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달 및 보급, 개인소득 증가, 건강 보험 보장범위의 확대 등에 주로 기인

- 연방정부의 보건·의료부문 법정지출은 향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
 - CBO의 기준선 전망(extended-baseline scenario)³⁾ 및 대안 전망(alternative fiscal scenario)⁴⁾ 모두에서 연방정부 보건·의료 법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
 - (FY2011)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어린이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에 대한 지출은 GDP의 5.6%*에 이를 전망
 - * 메디케어 : GDP의 3.7%, 메디케이드 및 CHIP : GDP의 1.9%
 - (기준선 전망) FY2035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CHIP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GDP의 9.4%* 전망
 - * 메디케어 : GDP의 5.9%, 메디케이드 및 CHIP, 건강보험 거래소(exchange) 정책 관련 건강보험료 보조금 : GDP의 3.5%
 - (대안 전망) FY2035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CHIP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출은 GDP의 10% 이상*이 될 전망
 - * 메디케어 : GDP의 약 7%, 메디케이드 및 CHIP, 건강보험 거래소(exchange) 정책 관련 건강보험료 보조금 : GDP의 약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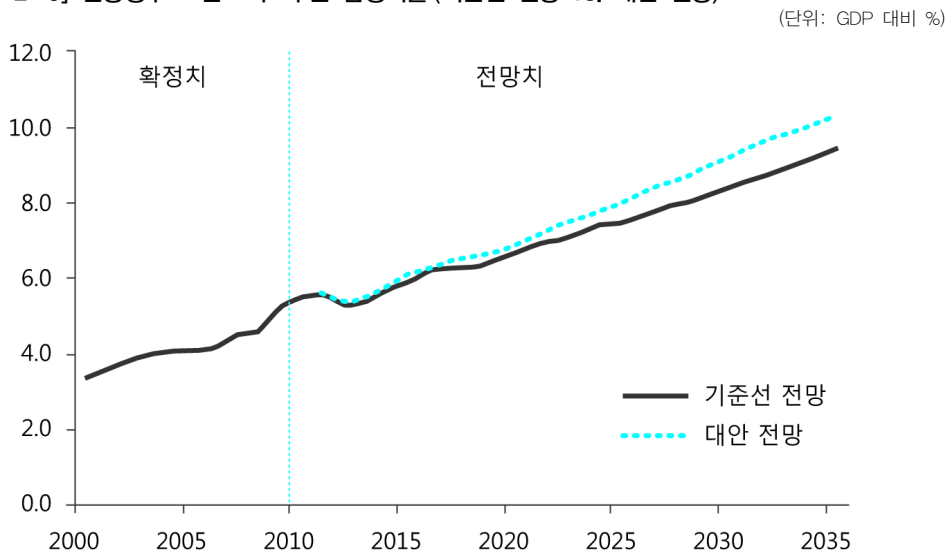
3) 관련정책이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전제

4) 현행 정책이 변경될 경우

[그림 2-Ⅱ-5] 연방정부 보건·의료부문 법정지출(기준선 전망)



[그림 2-Ⅱ-6] 연방정부 보건·의료부문 법정지출(기준선 전망 vs. 대안 전망)



다. 건강보험 개혁

- 미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국가
 - 2009년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의 63.9%가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과 같은 공공보험이 30.6%로 구성
 - 민간보험 가입자 중 대다수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55.8%)되어 있고, 개인이 직

접 구입(8.9%)하기도 함

- 같은 해 미국 인구의 약 5천만명(16.7%)은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무보험자로서 높은 의료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적

□ 대표적인 공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대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

- 2000년 4,248억달러였던 두 보험에 대한 정부지출(연방+주)은 2009년 106% 증가한 8,762억달러로 급증
- FY2010에도 메디케어에 대한 지출은 5,200억달러,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정부 지출은 2,730억달러 기록

□ '10.3월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 및 의료비용 증가 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시행

- 메디케이드 확대 및 보조금 지급
 - 연방빈곤선의 133%까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고 연방빈곤선의 400%까지 보험가입 시 세액공제를 제공
 - 영세기업에 대한 보조금 인상
- 소비자 보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 보험회사는 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음
 - 2014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직장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한 개인이나 영세기업이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 거래소(exchange) 설립·운영
- 건강보험의 유효성 증진
 - 2011년부터 보험회사는 의료서비스 및 의료품질 개선 활동에 대해 보험료의 최소 80%(개인 및 소규모 단체보험)~85%(대규모 단체보험) 지출

□ 건강보험 개혁법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세금인상 및 지출삭감 방안을 포함하여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CBO에 따르면 건강보험 개혁법으로 2010~2019년까지 1,43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주요 재원조달 방안

- 고소득자(연소득 개인 20만달러, 부부합산 25만달러 이상)에 대해 메디케어 급여세 0.9%p 인상
- 고소득자의 불로소득에 대해 3.8% 과세
- 향후 10년간 연간 1%씩 병원에 대한 메디케어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시장 가격 업데이트 축소
- 메디케어 Part C에 대한 초과지급 근절

〈표 2-Ⅱ-2〉 건강보험 개혁법의 재정수지 개선 효과 (2010~2019)

(단위: 십억달러)

총 재정수지 변화	-143
보험 적용대상 확대 조항	788
메디케이드, CHIP 지출	434
건강보험 거래소 보조금 및 관련 지출	464
영세고용주 세금공제	40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	-17
고용주에 대한 벌금 부과	-52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세 부과	-32
기타 세수 및 지출에 대한 효과	-48
보건·의료 지출 감소	-511
서비스 제공자 보수 업데이트	-157
메디케어 Part C 지출	-136
CLASS(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 보험	-70
메디케어 처방약 적용범위	-38
IPAB(Independent Payment Advisory Board)	-16
기타	-94
수입 증가 조항	-420
세금인상	-210
특정 제조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수수료 부과	-107
기타	-103

자료: CBO, Preliminary estimate of the direct spending and revenues effects estimate for proposed reconciliation legislation combined with H.R. 3590 as passed by the Senate, 2010.3.20.

○ 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806. "Restoring Fiscal Sustainability in the United States", 2010에서 재인용

Ⅲ

일본 (FY2011: 2011.4~2012.3)

1. 예산, 결산, 추경

가. FY2011 예산안 (FY2011: 2011.4~2012.3)

□ 해당사항 없음

○ FY2011 예산안 세부내용은 『재정동향』 제5호를 참조

나. FY2011 추경 (FY2011: 2011.4~2012.3)

□ FY2011 1차 추경, 4월 22일 제출된 정부안대로 국회 성립 (5.2)

□ 동북지역 대지진 복구를 위해 FY2011 1차 추경(4.2조엔)에 이어 2조엔 규모의 FY2011 2차 추경안 발표 (7.5)

○ 금번 추경은 원자력 피해보상비(2,754억엔), 이재민 지원(3,774억엔), 지진피해 복구 및 지원예비비(8,000억엔), 지방교부금 지원(5,455억엔)으로 편성

○ 2차 추경 재원은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액 FY2010 결산 잉여금에서 조달할 계획

– 1차 추경의 경우, 기존 세출 삭감 및 세외수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

⇒ 경과: 국회 심의(2011.7.25) 및 성립(2011.7.25)

<표 2-Ⅲ-1> FY2011 2차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십억엔)

세 출	금액	세 입	금액
1. 원자력재해보상관련 경비	275.4	1. 전년도 잉여금수입	1,998.8
(1) 원자력재해보상비	247.4	○ 재정법제6조 잉여금	1,453.3
(2) 원자력재해보상지원기구 경비	28.0	○ 지방교부금재원	545.5
2. 이재민 지원관련 경비	377.4	2. 국채발행	-
(1) 이중채무문제대책관련 경비	77.4		
(2) 이재민 생활지원 및 보조금	300.0		
3. 대지진복구대책본부 운영비	5		
4. 대지진 복구·지원 예비비	800.0		
5. 지방교부금	545.5		
계	1,998.8	계	1,998.8

자료: 財務省, 「平成23年度補正予算(第2号)」, 2011.7.5.

다. FY2011 결산(FY2011: 2011.4~2012.3)

- 재무성 결산개요에 따르면, FY2010 결산 잉여금은 세입잉여금(-0.1조엔) 및 세출 불용액(2.1조엔)에 따라 2조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7.29)
 - 여기서 지방교부금 재원 증가분을 제외한 순잉여금(재정법 제6조에 의거한 잉여금)은 1.5조엔 수준

-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세입예산(추경기준) 대비 3.8조엔 증가한 100.5조엔 수준
 - 세입예산 대비 법인세 및 소득세가 1.7조엔, 전년도 이월금이 3.9조엔 증가한 반면,

국채발행이 2.0조엔 감소한 데 기인

□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세입예산(추경기준) 대비 5.4조엔 감소한 95.3조엔 수준

○ 세출예산 대비 공공사업비 및 사회보장비가 1.0조엔, 이자지출 0.7조엔 감소한 반면 다음연도 이월금이 3.2조엔 증가한 데 기인

〈표 2-Ⅲ-2〉 FY2010 일반회계 결산 잉여금 전망

(단위: 십억엔)

세입	잉여금	세출	불용액
조세수입	1,843.7	불용액	2,144.8
법인세	1,478.6	공공사업비	556.1
소득세	176.3	사회보장비	396.3
기타	188.8	이자지출	692.0
		기타	500.4
세외수입	22.0		
반납금	271.7		
일본은행 납부금	△284.1		
기타	34.4		
채권발행	△2,000.0		
건설채권	0.1		
특례채권	△2000.1		
계	134.1		2,144.8
합 계		2,010.6 (A)	
지방교부금 특정 자원 증가		545.4 (B)	
재정법 제6조의 순잉여금		1,465.1 (A-B)	

자료: 財務省, 平成22年度決算概要, 2011.7.29.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일본정부는 정책추진지침에서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언급 (5.1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책추진지침’ 내용을 참조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1) 정책추진지침

- 일본정부는 대지진 및 원전사고 피해의 조기 복구와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재설계를 위해 「정책추진지침」을 발표 (5.17)
 - 동 지침은 기존 「신성장전략」(2010년 6월)의 목표 및 실천 로드맵은 유지하되 지진 등의 영향을 감안하여 주요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
 - 주요 내용은 대지진을 고려한 경제재정운영과 일본경제 재건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구성
- 대지진을 고려한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 단기: 지진의 조기 극복
 - 이재민 및 원전사고 피해자 지원, 재해지역 조기복구 및 원전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력수급 및 고용대책 등을 집중 추진
 - 일본은행은 정부와 거시경제운영에 관한 기본적 관점을 공유하고 탄력적인 금융정책 실시
 - 중기: 자율적인 성장의 토대 마련
 -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등 추진
 - 신성장동력(친환경 마을 건설, 신에너지 사업,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의 육성과 자금수요 확대(민간투자 촉진 등)의 선순환 구조 마련

- 중장기: 지속가능한 자유행 성장의 실현
 -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신에너지 환경 구축 및 신성장분야의 확대
 -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 일본경제 재건을 위한 기본방침
 - 7대 기본원칙
 - 1) 피해지역 조기 재건 지원, 2) 리스크에 대비한 경제사회 구조 확립, 3) 대외 신뢰 확보(재정 및 국가브랜드)
 - 4) 전력 등 자원 제약하에 전략적 배분, 5) 현장대처 능력 강화, 6) 국가간 유대 강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 7) 경제재건을 위한 국내외 이해 촉진
 - 재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성 확보
 - 사회보장제도와 세제를 동시에 개혁하고 6월 말까지 시안 확보
 - 재정운영전략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지속 추진
 - 신성장을 위한 국가전략 재설계
 - (혁신적 에너지 환경) 안정적 전력수급 강화와 함께 에너지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단기·중기·장기로 구성된 에너지 전략을 검토
 - (공동화 방지 해외시장 개척) 기존 국내촉진 프로그램, 아시아 거점화 등을 검증하고, 리스크에 대비한 경제 및 산업구조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국가간 유대 강화)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고차원적 경제통합 추진과 안정보장 확립 등을 검토
 - (농림어업 활성화) 일본 농수산물의 대외 신뢰도 회복에 중점

3. 건강보험제도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 일본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서 피보험대상별로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의료제도 등으로 구분
 - 건강보험은 대기업(종업원 700인 이상)에 설립된 조합관장건강보험(이하 건보조합), 민간중소기업의 종업원이 가입한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건강보험(이하 협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한 공제조합,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원보험으로 구분
 - 국민건강보험은 지자체 주민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후기고령자의료제도는 75세 이상 고령자(65~74세 장애인)를 대상으로 함

〈표 2-Ⅲ-3〉 일본 건강보험제도 현황

(2010년 4월 현재)

제도명	가입대상	보험자 (개)	가입자수 (천명)	보험료	본인부담	국고부담	
건강보험	협회	일반근로자 및 피부양자	전국건강보험협회 (1)	34,830	평균 9.34% (노사 절반씩 부담)	3세 미만: 20% 3~69세: 30% 70세 이상: 10% (소득 있을 시 30%)	급부의 16.4%
	건보조합	일반근로자 및 피부양자	건강보험조합 (1,473)	29,950	평균 7.45%		정액보조
	공제조합	공무원 및 피부양자	공제조합 (78)	9,023	평균 7.68%		없음
	선원보험	선원 및 피부양자	전국건강보험협회 (1)	144	9.25%		정액보조
국민건강보험	시정촌 ¹⁾ 국민건강보험	지역주민 및 자영업자	시정촌 (1723)	35,660	시정촌별 상이	70세 이상: 10% (소득 있을 시 30%)	급부 등의 43%
	국보조합	공법인 조합원	국민건강보험조합 (165)	3,430			급부 등의 32%~55%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75세 이상 고령자, 65~74세 장애인	후기고령자 의료광역연합 (47)	13,890	본인부담 제외 총의료비의 10%		급부의 50%	

주: 1)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정, 촌을 의미
 자료: 厚生労働省

- 일본은 독일 비스마르크의 질병보험 제도를 모방하여 1927년 노동자의 질병과 노동재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법을 도입
 - 이후 1938년에는 자영업자와 농민들까지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호법이 제정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 성장기의 일본은 1961년 전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였으며 1973년까지 급부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개선이 지속
 - 1963년 4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간의 제한이 폐지
 - 동년 10월, 세대주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적용
 - 1968년 1월, 세대원에게도 70% 급여율 실시 등
- ‘복지 원년’인 1973년에는 의료보험제도뿐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70% 급여율, 고액요양비제도(본인부담 상한제), 노인 의료비 무료화 등이 실시
 - 그러나 제1차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1970년 65세 이상 인구 7%)하면서 과도한 건강보험제도 확대가 재정 악화 우려로 이어짐
- 이후 인구 고령화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3년 노인보건제도 도입
 - 이에 70세 이상 인구의 무상의료비 정책을 폐지하고 일부 본인부담을 실시
 - 의료급여는 시정촌에서 담당하나 국가 및 지자체,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공동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공동부담 방식을 도입하여 재정부담 완화를 도모
 - 이후 1984년 피보험자 본인 부담률 10% 실시, 1986년 노인보건시설의 건립, 1987년 보험료 부담의 정비 등이 이루어짐
-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및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재정 안정을 위한 의료보험 개혁이 요구됨에 따라 1996년 “사회보장개혁”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

료제도 전반에 개혁이 실시

- 1997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10%→20%),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도입, 정부관장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등이 이루어짐
- 2000년에는 약가차액 축소, 포괄수가제 확대, 본인부담한도 폐지 등 안정적인 의료보험재정 확보를 위한 개혁이 단행
- 2002년 건강보험법 개정에서는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을 30%로 올리고, 상여금에도 보험료를 징수하는 총액보수제를 도입
 - 또한 노인의료 대상연령을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노인의료비 증가를 둔화시키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완화

〈표 2-Ⅲ-4〉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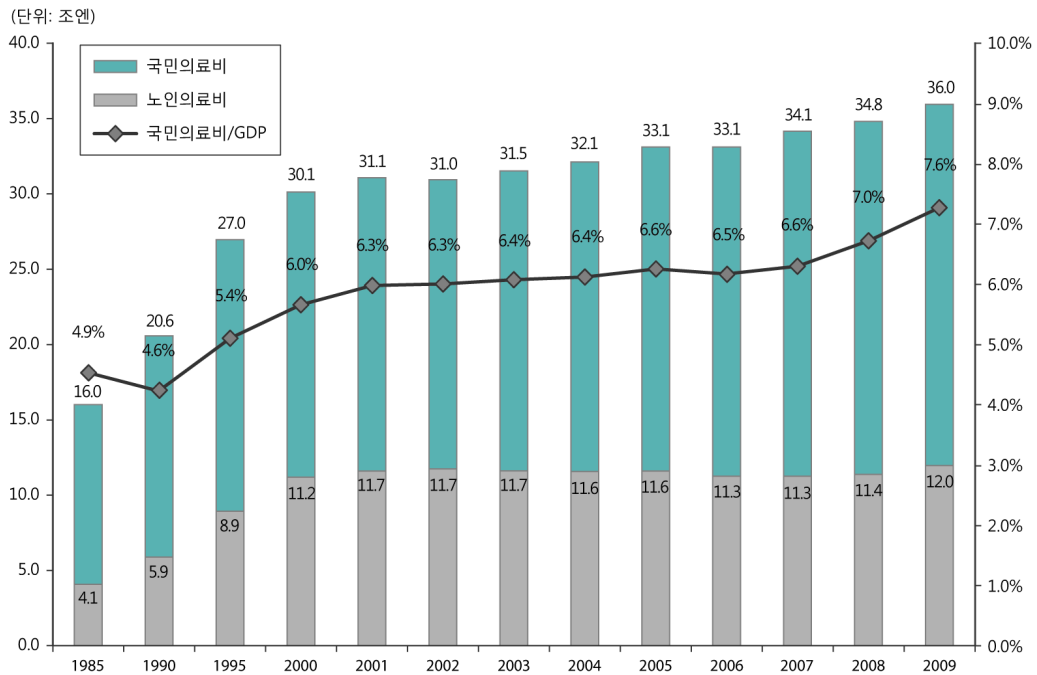
시기구분	년도	법률·정책 개요 등
제도형성기	1922	건강보험법 제정(도시 근로자 대상)
	1927	건강보험법 시행
	193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자영업자, 농어업종사자 등 대상)
제도확충기	1961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1968	국민건강보험 70% 급여 달성
	1972	노인복지법 개정(노인의료 무료화)
	1973	건강보험법 개정(피부양인 70% 급여, 고액요양비제도창설)
제도개편기	1982	노인보건법 제정(노인의료 무료화 폐지)
	1984	퇴직자의료제도 시행 건강보험법 개정(근로자 본인부담 10%로 조정 등)
	1986	노인보건시설 창설
	198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험기반안정제도 창설 등)
구조개혁기	1992	건강보험법 개정(중기재정운영 도입 등)
	199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고액의료비 공동사업의 확충 등)
	1997	개호보험법 제정
	2003	의료보험제도체계 등에 관한 기본방침 책정
	2005	개호보험법 개정(예방 중시로 전환 등) 경제 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 책정
	2006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험자 재편, 의료비적정화 등)
	2008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 도입
201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험료 인상 억제 등)	

자료: 厚生労働省

나. 건강보험 재정

- 2009년 현재 일본의 공공의료비 지출 규모는 36조엔 가량이며 GDP의 7.6%를 차지함
 - 1990년 초반까지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이 4%대를 유지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게 됨
 - 2000년대에 6% 중반으로 유지되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2008년 7%를 넘어섰고 2009년 현재 7.6%까지 올라감

[그림 2-Ⅲ-1] 공공의료비 지출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保険局調べ

- 일본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은 주로 보험료와 국고 및 지방정부 지원으로 조달되며, 지출은 보험급여비와 후기고령자지원금이 대부분임
 - (건강보험) 재원은 주로 각 보험제도의 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조달
 - 보험료는 보수, 기타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단위로 일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2008년 기준 보험요율은 전국평균 7.45~9.34%이며 제도 및 지역별로 상이

- 국고부담은 건강보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급여비, 식비, 요양비, 특정요양비, 가족요양비, 가족방분간호요양비, 고액요양비, 이송비 상병수당, 출산수당금 등에 보조적으로 지원

- 제도별로 보험급여의 16.4% 부담 및 정액보조 방식으로 이루어짐

○ (국민건강보험) 재원은 주로 보험료, 국고지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의 교부금으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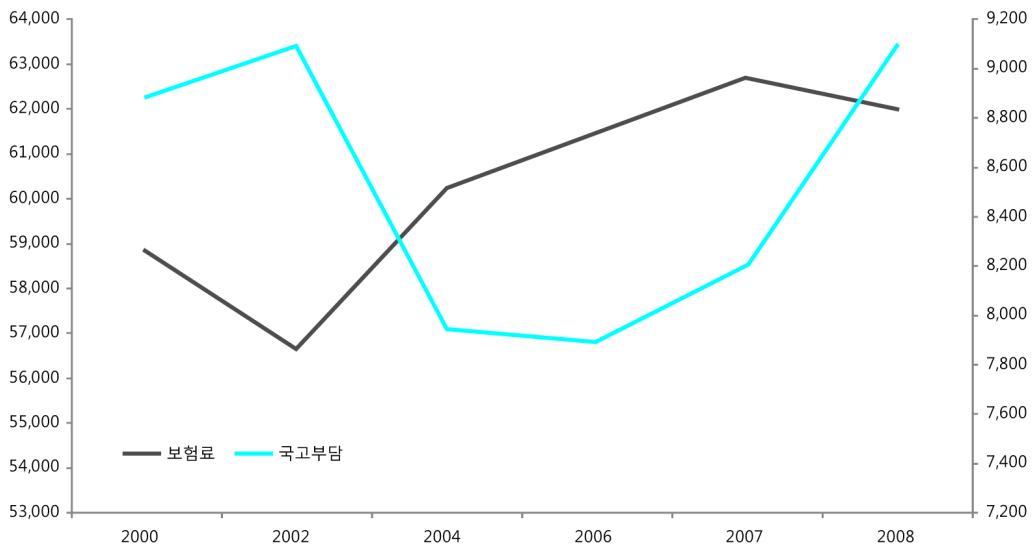
- 보험료는 당해연도의 의료비 총액에서 국가 등의 보조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세대별 부담능력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을 적용

- 국고부담은 제도별로 보험급여 등의 32~55% 부담

○ (후기고령자의료) 재원은 보험료 약 10%, 건강보험으로부터의 지원금 40%, 국가부담 50%로 조달

○ [그림 2-Ⅲ-2] 협회관장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국고지원의 비율은 2008년 현재 87:13 정도이며 2002년 이후 다소 감소했던 국고지원 규모가 현재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2-Ⅲ-2] 협회관장건강보험 보험료/국고부담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保険局調べ

□ <부표-2>의 2008년 건강보험제도별 결산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수입은 37.9조엔이며, 총지출은 38.3조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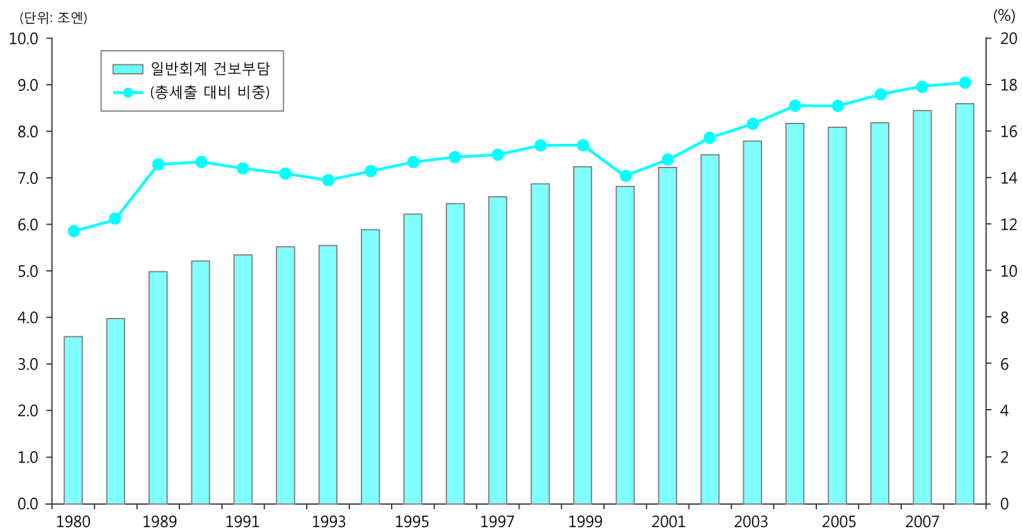
- 총수입 중 보험료 수입은 총수입 대비 48.6%(18.5조엔)이며, 국고부담 및 지방부담은 27.2%(10.3조엔)를 차지
- 총지출 중 보험급여비는 총지출 대비 70.9%(27.2조엔), 후기고령자지원금은 11.4%(4.3조엔) 수준

○ 또한 건강보험 제도별 규모는 국보(시정촌), 건보(조합), 건보(협회) 순으로 크며, 총수입 및 총지출에서 각각 66.9%(25.4조엔), 67.5%(25.9조엔)를 차지

□ 일반회계 건보 국고부담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1980년 총세출 대비 11.7%(35.9조엔)에서 2008년 18.1%(85.6조엔)로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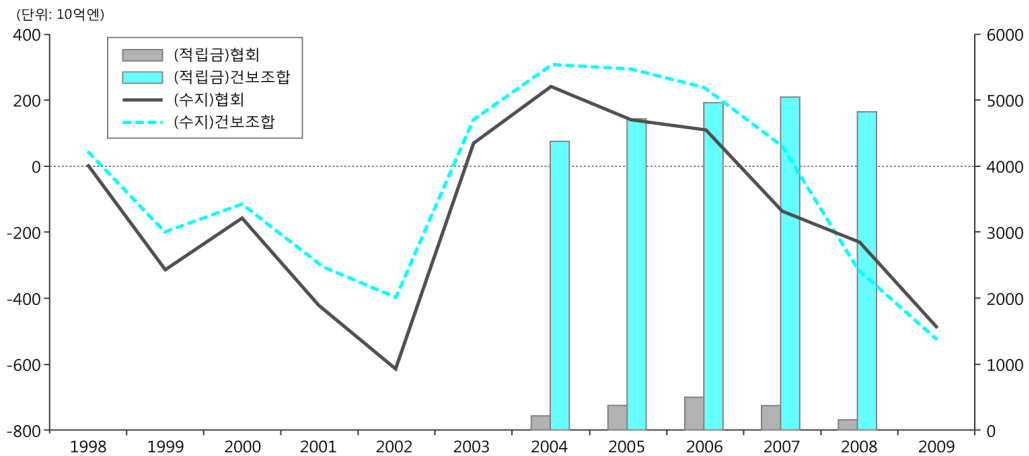
- 반면 일본 건강보험제도 중 비중이 큰 협회 및 건보조합의 재정수지는 2003년 의료제도 구조개혁 등으로 흑자를 기록
- 그러나 2007년 이후 급여비 지출 증가 등으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특히 2008년 건보(협회) 적립금이 절반수준으로 감소

[그림 2-Ⅲ-3] 일반회계 건보 국고부담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保険局調べ

[그림 2-Ⅲ-4] (건보) 협회 및 조합 재정수지 및 적립금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保険局調べ

다. 건강보험 개혁

1) 의료제도 구조개혁(2003년~현재)

□ (개혁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은 경기불황과 기업 합리화 등에 의한 보험료 수입 감소와 함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구조적인 재정위기에 직면

○ 인구구조 변화는 의료 수요가 높은 은퇴세대의 급증과 그 비용을 부담하는 현세대의 급감을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확보뿐 아니라 고령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기

○ 그러나 당시 보험제도상에서는 많은 소규모 보험자가 존재하고 대다수가 행정기관이었으며 피보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자율적이고 경쟁촉진적인 환경이 제공되지 않음

- 또한 적극적으로 재정위험을 관리할 능력 및 동기 부여에도 한계

□ 2003년 3월 후생노동성은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보수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보험제도 구축, 급부의 평등 및 부담의 공평, 고품질 의료 보장을 달성하고자 함

- (보험자의 기능 강화) 보험자 재편·통합과 자율성 보장, 피보험자의 보험자 평가 및 선택권 확보
 - 기존 시정촌이 운영하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도도부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보험 운영을 도모
 - 진료보수 체계의 개혁에서도 의료기술 및 기관의 적절한 평가 기능과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도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여 수요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2005년 6월 경제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의료비 적정화 방안을 강구
 - 공적 보험급부의 내용 및 범위를 수정하는 단기적인 의료비 적정화 대책과 함께 당뇨, 고혈압 등 생활질병에 대한 예방중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하향조정
- 2006년 10월 상기 기본방침에 의거한 대대적인 의료보험법 개정 실시
 - 주요내용
 - 보험료 징수는 시정촌이 하되 재정 운영은 도도부현 단위로 모든 시정촌이 가입한 광역연합이 실시
 - 고령 환자 부담률 인상(소득有: 20% → 30%, 소득無: 10% → 20%)
 - 고액요양비의 자기부담 한도액 인상
 - 고령자를 전·후기로 나눠 각각의 의료제도 창설 등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도도부현 단위(기존 시정촌 단위)로 고액의료비 사업을 공동으로 담당함으로써 재정위험을 분산하고 시정촌 간 보험료의 평준화,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보험재정 공동 안정화 사업을 실시
 - 건강보험(피고용자보험)의 경우 정부와는 별개로 전국 단위의 公法人을 보험자로 설립하고 도도부현별로 지부를 두어 재정을 운영하게 하고, 예산과 사업계획, 재무제표를 후생노동성 장관이 승인을 득하도록 함
 - 보험 급부내용 범위를 변경함에 있어서 노인환자 부담을 인상하고 요양병원에 입원

하는 노인 식비·거주비 부담을 인상하며 고액요양비의 자기부담한도액을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총액에 맞는 금액으로 인상함으로써 의료비 적정화 모색

- 65~75세 인구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상 인구를 후기 고령자로 나누어 각 연령별, 소득유무별 자기부담액을 조정하고, 후기고령자를 위한 보험을 별도로 도입하여 초고령화 사회 의료비 급증에 대비함 (2008년 4월부터 실시)

□ 2010년 5월에도 같은 기본방침하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시행

- 이때 시행된 개정은 특히 보험료 급증을 방지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
- (주요내용) 1) 저소득층이 많은 시정촌과 고액의료비 서비스에 대한 국가, 도도부현의 보조 확대, 2) 중소기업 직원·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경감, 3) 피부양고령자의 보험료 경감조치 연장 등

2) 후기고령자의료보험 제도

□ (도입 배경)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균수명이 긴 나라일 뿐만 아니라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22%를 차지하는 후기고령화 사회임

- 의료욕구는 높지만 보험료 부담 수준은 낮은 고령자 인구가 많아질수록 의료보험 재정적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80년대부터 노인보건제도를 실시하여 고령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
- 그러나 노인보건제도는 구조상 고령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대부분을 현역 세대가 부담하고 있어 부담과 수익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지역간 보험료 격차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음

□ 상기한 문제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고령자 보험제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08년 4월 후기고령자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옴

-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와 65~74세의 전기고령자 중 특정

장애를 가진 자를 기존 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제도로 편입하고, 본인부담을 10%(소득 있는자는 30%)로 정하여 부담-수익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또한 기존 시정촌의 업무를 도도부현별로 설치된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고령자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보험제공자 간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

〈표 2-Ⅲ-5〉 노인보건제도와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비교

구분	1983년	2008년 4월
운영주체	시정촌	후기고령자의료광역연합
피보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2001년) • 70세 이상(20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세 이상, • 65~74세 중 특정장애를 가진 자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보건에서의 보험료는 미발생 • 각 의료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 피부양자는 보험료 미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본인부담을 제외한 총의료비의 10%를 보험료로 부담 •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과
환자 본인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로서비스의 10% • 소득 있을 경우 30% 	
재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5할(정부 4/6, 도도부현 1/6, 시정촌 1/6) • 노인보건기여금(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5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비 5할(구성은 좌동) • 후기고령자지원금 4할(국민건강보험과 건강보험) • 고령자 보험료 1할

자료: 厚生労働省

□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부양가족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기고령자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야기

- 또한 2년 단위로 자기부담이 4%씩 인상되도록 제도화되었는데 이는 고령자의 보험 제도 이용 불가 문제를 더 심화시킴
- 또한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에서 담당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 의료 제도를 축소하고 민간 보험회사 선택을 권장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기 문제점에 따른 불만의 고조와 당시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 하락으로 개정 2달 후인 6월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놓음
 - 주요 내용은 보험료 경감 대책, 광역연합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체납자에 대한 보험증 회수 철회 등
 - 그러나 현재까지도 동 제도에 대한 여론이 반등되지 않고 있음 (2010년 내각부 조사에서 일반인 20%, 전문가 30%만이 현 제도가 적합하다고 응답함)
 -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를 2012년도 말에 폐지하고 2013년부터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하기로 하고 현재 공청회 등을 통해 그 형태와 방식을 고안중

<부표-1> 일본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제도명		보험급여			보험료		재원	
		본인부담	의료급여	고액양상비제도, 고액외 및 간호합산제도	입원외담비	한정급여	보험료율	국고부담
일반피용자	협회	국립공무원 지방공무원 사학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무교육 취학후~70세 미만: 30% 의무교육 취학전: 20% 70세~75세 미만: 20% (일반소득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양상비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부담한도액: 7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소득자) 150,000엔+(의료비-500,000엔)×1% (일반) 80,100엔+(의료비-267,000엔)×1% 저소득자: 35,400엔 70세 이상~7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소득자) 80,100엔+(의료비-267,000엔)×1%, 외래(개인별) 44,400엔 (저소득자) 24,600엔, 외래(개인)마다 18,000엔 (최저소득자) 15,000엔, 외래(개인)마다 18,000엔 세대합산기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세 미만에 대해서는 21,000엔 이상 부양이 중복될 경우 합산 다수해당의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중 3회 이상 해당하는 경우 4회째로부터 다음의 자기부담한도액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세 미만) 상위, 일반, 저소득자별로 83,400엔, 44,400엔, 24,600엔 (70세 이상) 일반소득자는 44,400엔 장기 고액질병 환자의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우병, 만성신부전 환자 등의 자기부담한도액 10,000엔 (단, 상위소득자(인공투석) 70세 미만 환자의 자기부담한도액 20,0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사요양 표준부담(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260엔 저소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일까지: 210엔 91일부터: 160엔 최저소득자: 100엔 생활요양 표준부담(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420~460엔 저소득자: 210엔 최저소득자: 13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병수당 출산육아 일시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9.34% (전국평균, 노사별단위 부담) 7.45% (전국평균) 1급: 360엔(1일) 11급: 3,020엔(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의 13% (후기고령자교부금 16.4%) 장액보조
	국민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일반소득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액외로 및 고액간호합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간(매년 8월~다음년 7월) 의료보험과 간호보험의 자기부담 합산액이 현저하게 고액이되는 경우 부담을 경감 자기부담한도는 소득과 연령으로 정해 적게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동 (단, 노령연금수급자는 1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부담 제외, 총의료비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약 10% ·지원금: 약 40% ·공비: 약 50% (공비의내역) 국가:도도부현:시정촌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분 일반 저소득자 최저소득자

〈부표-2〉 2008년도 일본 건강보험 제도별 결산내역

(단위: 억엔)

구분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후기고령자	합계	(비중)
	협회	건보조합	산원보험	공제조합	시장촌	국보조합			
보험료	62,013	61,937	366	19,631	28,011	4,400	8,213	184,570	48.6
국고부담	9,093	49	30	-	28,278	3,041	30,711	71,201	18.8
도도부현부담	-	-	-	-	7,408	73	8,959	16,439	4.3
시장촌부담	-	-	-	-	7,590	-	8,130	15,720	4.1
후기고령자교부금	-	-	-	-	-	-	40,860	40,860	10.8
전기고령자교부금	-	-	-	-	24,365	55	-	24,421	6.4
퇴직교부금	-	-	-	-	8,935	-	-	8,935	2.4
기타	251	1,672	-	932	14,198	178	46	17,277	4.6
합계	71,357	63,658	396	20,562	118,785	7,747	96,918	379,425	100.0
보함급여비	43,375	33,838	254	10,914	83,382	4,971	95,008	271,741	70.9
후기고령자지원금	13,139	11,209	58	3,470	14,256	1,394	-	43,527	11.4
전기고령자납부금	9,449	9,893	38	3,738	19	274	-	23,410	6.1
지출 퇴직부담금	4,467	4,825	18	1,677	-	78	-	11,066	2.9
기타	3,217	7,082	8	1,404	20,685	825	502	33,723	8.8
합계	73,647	66,847	376	21,203	118,342	7,542	95,510	383,467	100.0
경상수지차	-2,290	-3,188	21	-640	443	204	1,408	-4,042	-
경상외수입	139	2,431	-	-	-	-	-	2,570	-
경상외지출	-	1,266	-	-	-	-	-	1,266	-
경상외수지차	139	1,165	-	-	-	-	-	1,304	-
총수지차	-2,151	-2,023	21	-640	443	204	1,408	-2,738	-
기타	-	112	-	-	-	-	-	112	-

IV

영국 (FY2011-12: 2011.4~2012.3)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FY2011-12 예산안 : 2011. 3. 23
 - 『재정동향』 제6호 참고
- 연간 예산 관련 법 승인 : 2011. 7. 19
 - 연간세입법(Finance Act) 2011
 - 연간세출법(Supply and Appropriation (Main Estimates) Act) 2011

나. 추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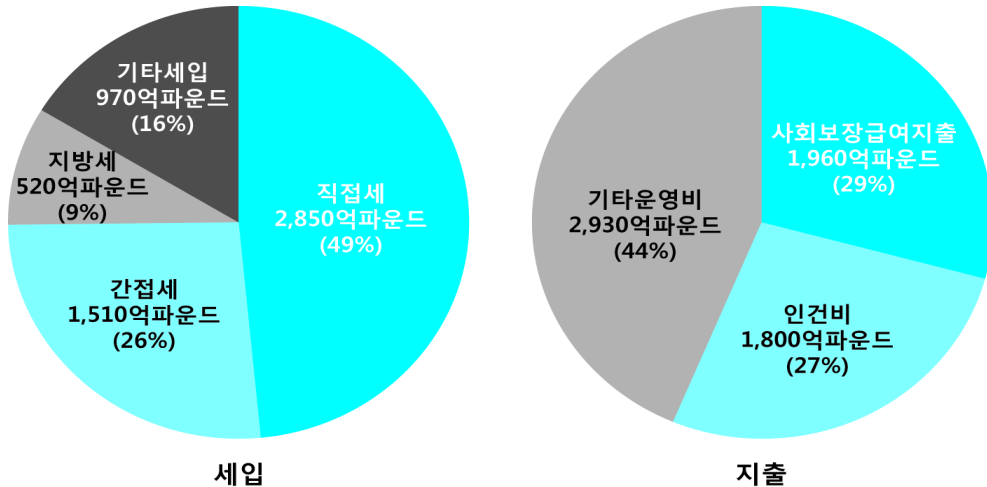
- 변동사항 없음

다. 결산

〈 FY2009-10 결산요약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_unaudited summary report)
발표 (2011. 7. 13) 〉

- FY2009-10의 공공부문 총세입은 5,855억파운드, 총지출은 6,887억파운드로 집계
 -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총 1,641억파운드, GDP 대비 11.7%의 순적자(net deficit)를 기록

[그림 2-Ⅳ-1] FY2009-10 공공부문 세입, 지출 구성



자료: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_unaudited summary report for year ended 31 march 2010, Chart 1.1

□ IFRS기준, 공공부문 순부채(net liabilities)는 총 1조 2,160억파운드, GDP의 84.5%에 달함

- (부채) 공공서비스연금 1조 1,330억파운드, 정부 채권 8,038억파운드 등 총 2조 4,215억파운드 규모
- (자산) 건물, 인프라 등 7,080억파운드를 비롯하여 총 1조 2,053억파운드 규모

□ 정부통합결산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WGA)

- WGA는 정부의 통합결산보고서로, 2000년 정부자원 및 회계법(Government Resources & Accounts Act)에서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당초 FY2005-06의 중앙정부 전체의 결산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정부와 NHS, 공기업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FY2007-08로 연기됨
 - 의회에서 결산보고 및 감사는 부처별로 진행됨
- 하지만 중앙정부 회계에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통합결산보고 시기를 FY2009-10으로 재차 연기
- FY2009-10 WGA 요약보고서는 약 1,500개의 중앙정부기관과 권한이양행정부, 의료

서비스(NHS), 지방정부, 공기업을 포괄한 최초의 통합결산보고서임

- 동 보고서는 정부의 요약보고서로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최종 보고서의 법정시한은 2011.12.31로 설정되어 있으며 2011년 가을에 발간 예정
- 같은 날(7.13) 발표된 OBR의 장기 재정전망보고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사전에 WGA 요약보고서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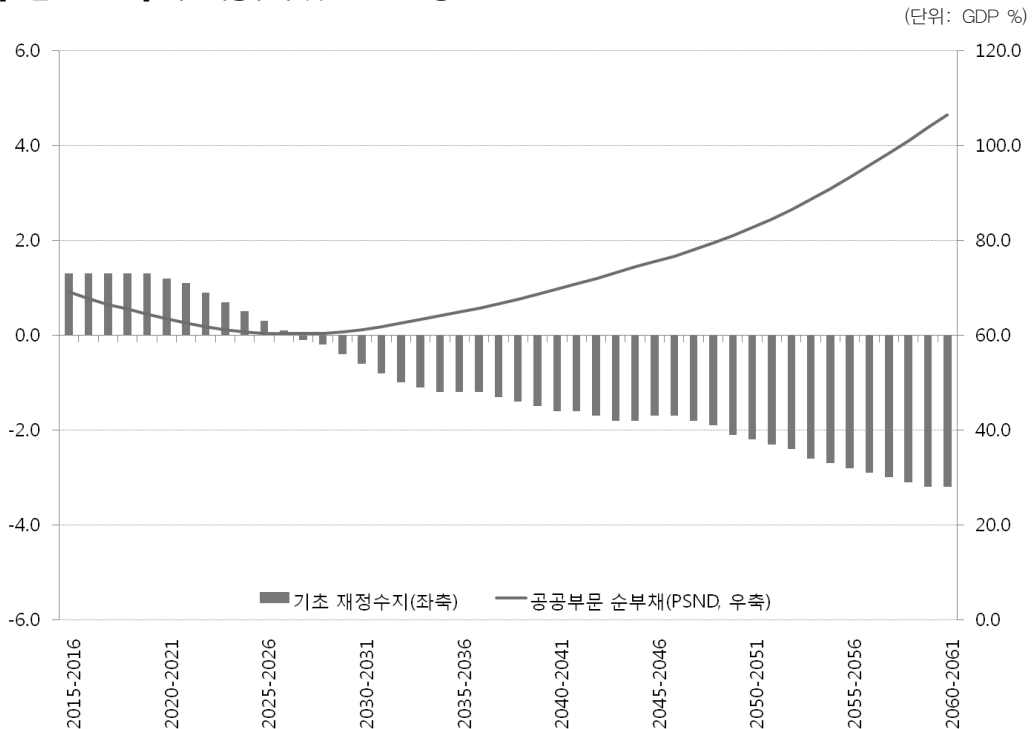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1) 장기재정전망

- 공공부문의 순부채(Public Sector Net Debt: PSND)는 FY2060-61에 GDP의 107% 규모로 확대될 전망
 - FY2015-16에 GDP의 69%에서 2020년대 중반 GDP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 예상
 - ‘동적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FY2016-17부터 영구적으로 GDP 대비 3%, 현재가치 약 450억파운드의 재정긴축이 필요

[그림 2-IV-2] 기초재정수지 및 PSND 전망



자료: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2011.7), Chart 1, p.11

- PSND의 목표와 달성시점을 기준으로 재정긴축 정도(fiscal gap)를 조정 가능
 - 현재 정부가 장기 재정목표를 수립하지 않아 FY2060-61을 목표시점으로 경제위기 이전의 순부채 수준(GDP의 40%)과 2011.3월 전망 최고치(GDP의 70%)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정긴축 수준을 측정
 - GDP 대비 40%: FY2016-17부터 GDP의 1.5%, 현재가치 약 220억파운드 긴축
 - GDP 대비 70%: FY2016-17부터 GDP의 0.8%, 현재가치 약 120억파운드 긴축
 - 1인당 의료지출이 연간 3% 실질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 GDP 대비 40% 목표의 경우 GDP의 3.9%, GDP 대비 70% 목표는 GDP의 3.2% 재정긴축이 필요

- (재정지출전망) FY2060-61에 총재정지출은 GDP의 41.7%, 노령관련 지출은 GDP의 27.3% 수준으로 전망
 - (의료) FY2015-16, GDP의 7.4%에서 FY2060-61, GDP의 9.8%로 증가
 - 1인당 의료지출의 실질 증가율을 3%로 가정하면, FY2060-61에 GDP의 5.3%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국가연금) FY2015-16, GDP의 5.5%에서 FY2060-61, GDP의 7.9%로 증가
 - 국가연금 인상기준은 매년 소득상승률에 0.2%p를 합하여 산출
 - 국가연금 물가연동 인상기준은 2011.4월부터 소득(earning), 물가(CPI), 2.5% 중 최고치에 연동
 - (교육) 교육지출의 경우 FY2015-16에서 FY2060-61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교육지출이 소폭으로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것은 출생률 등 인구 전망에 따른 학교(school) 지출 변동에 기인함
 - (공공서비스연금) FY2015-16, GDP의 2.0%에서 FY2060-61, GDP의 1.4%로 감소
 - 최근의 공공부문 임금동결, 물가연동기준 변화, 인력감축 계획이 반영된 결과
 - 공공서비스연금의 물가연동 기준은 RPI에서 CPI로 변경됨

〈표 2-Ⅳ-1〉 장기재정지출 전망 (2010~2060)

	GDP %						
	Estimate ¹⁾		FSR(장기재정보고서) Projection				
	2010-11	2015-16	2020-21	2030-31	2040-41	2050-51	2060-61
의료	8.2	7.4	7.7	8.5	9.1	9.5	9.8
장기 사회보험	1.3	1.2	1.3	1.5	1.8	1.9	2.0
교육	6.3	5.0	5.1	5.2	5.0	5.0	5.0
국가연금	5.7	5.5	5.2	6.1	6.8	6.9	7.9
연금수급자 급여	1.2	1.0	1.0	1.2	1.2	1.2	1.2
공공서비스연금	2.0	2.0	1.9	1.8	1.6	1.5	1.4
총 고령화 관련 지출	24.6	22.0	22.1	24.3	25.6	26.0	27.3
기타 사회보장급여	6.2	4.9	5.1	5.1	5.0	5.0	5.0
기타 지출	13.3	9.4	9.4	9.4	9.4	9.4	9.4
지출²⁾	44.2	36.3	36.6	38.8	40.0	40.4	41.7

주: 1) 총지출은 2011.3월 전망치과 일치

2) 이자 및 배당 제외

자료: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1.7

□ (세입전망) FY2060-61 총세입은 GDP의 39.3%로 FY2015-16보다 약 0.9%p, 현재가치로 130억파운드 증가될 전망

○ 세입 중 자본세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FY2015-16에 GDP 대비 1.2%에서 FY2060-61 GDP의 1.7%로 증가

– 대부분은 노령인구의 비중 증가로 인한 상속세 증가 효과임

○ FY2015-16 ~ FY2060-61까지 소득세는 GDP의 0.2%p 증가하는 반면, 사회보장보험료(NICs)의 경우 0.2%p 감소

○ 기타 세입전망에서 고려한 비인구학적 요소

– (교통세) 연비 개선으로 2030년까지 연료세, 자동차세가 GDP의 1% 정도 감소

– (북해세입) 생산량 감소에 따라 FY2011-12부터 GDP의 0.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기타 환경세) 기후부담금 등 환경세가 GDP의 0.3%가량 증가하고, 담배소비 감소로 담배세가 GDP 대비 약 0.3% 감소할 것으로 예측

〈표 2-Ⅳ-2〉 장기 세입 전망 (2010~2060)

	GDP %						
	Estimate ¹⁾		FSR(장기재정보고서) Projection				
	2010-11	2015-16	2020-21	2030-31	2040-41	2050-51	2060-61
소득세	10.3	10.7	10.8	10.8	10.9	10.8	10.9
사회보장보험료(NICs)	6.5	6.6	6.6	6.5	6.5	6.4	6.4
법인세	2.9	2.9	2.9	2.8	2.8	2.8	2.8
부가가치세	5.8	6.1	6.2	6.3	6.4	6.3	6.4
자본세(capital taxes)	1.0	1.2	1.3	1.4	1.5	1.6	1.7
기타	10.4	10.1	10.2	10.3	10.4	10.4	10.4
세입²⁾	37.0	37.6	37.9	38.2	38.4	38.2	38.5

주: 1) 총세입은 2011.3월 전망치과 일치

2) 이자 및 배당 제외

자료: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1.7

2) 국가채무한도 설정을 위한 법안 상정

□ 국가채무상한에 대한 법안(National Debt Cap Bill)이 의원입법으로 의회에 제출

- 주요 순정부채무(net Government Debt)의 GDP 대비 비중에 대해 법적 상한을 설정함
- 의원입법안(Private Member's Bill)은 하원 2독회 이후 구체적 법안내용 공개
 - 하원의 1독회는 2011. 7. 12에 이루어졌으며, 2독회는 2012. 1. 20일로 예정
 - 발의자: Sajid Javid (보수당)

3) 공공서비스연금(Public Service Pension) 기여율 인상 추진

- FY2012-13 ~ FY2014-15까지 연금기여금(contributions)을 평균 3.2%p 인상할 방침 (2011. 7. 19)
- FY2012-13의 인상 비율은 평균의 40% 수준으로 예상
 - 2010.10월 중기재정계획에서 FY2012-13에 12억파운드의 지출절감 목표 설정
 - 중기재정계획에서는 FY2013-14에 23억파운드, FY2014-15에 28억파운드의 지출절

감 목표도 설정한 바 있음

- 정부는 연소득 15,000파운드 이하 소득자의 기여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FY2014-15까지 총 1.5%p를 넘지 않도록 설정
 - 고소득자의 기여율 인상도 FY2014-15까지 총 6%p 한도로 제한
- 교사, 공무원, NHS 직원 연금제도의 FY2012-13 기여율 인상안에 대한 자문(consultation) 진행 (2011. 7. 28)
 - 3개 연금제도의 기여율 인상안은 12억파운드의 FY2012-13 지출절감 목표 중 약 10억 파운드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
 - NHS 연금 5,300만파운드, 교사연금 3,000만파운드, 공무원연금 1,800만파운드

나. 경제성장 및 경기부양

- 신규 사업체에 대한 사회보장보험료(NICs) 감면제도를 북아일랜드 지역에도 적용
 - 창업 고용주의 사회보장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10년 6월 예산안 정책에 포함되어 있음
 - 창업 후 1년 동안 최대 10명의 근로자에게 NICs 고용주 부담 중 1인당 5,000파운드 면제
 - 창업기준일 : 2010. 6. 22 이후 3년간 (일몰기간 : 2013. 9. 5)
 - 당초 해당 지역은 outside London, South East of England, East England에 한정되었으나 북아일랜드로 확대하여 소급적용함
- 2011년 예산안에서 발표한 소규모기업 지원정책 입법절차 추진
 - 2011.4월부터 기업투자제도 세금감면비율을 30%로 인상, 2012.4월부터 기업투자제도의 연간 투자한도를 100만파운드로 인상
 - 2012.4월부터 기업투자제도와 벤처자본신탁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한 연간투자한도를 1,000만파운드로 확대 등

- 북해유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세금지원 수준 확대
 - Ring Fence Expenditure Supplements(RFES)를 연간 6%에서 10%로 인상
 - RFES는 투자,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충분한 과세소득이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
 - 최장 6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손실비용을 6%에서 10%로 인상

- 해안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백만파운드 규모의 자금 지원
 - 신규로 조성된 해안지역기금(Coastal Communities Fund)을 통해 각 해안지역에 경기 부양 자금을 매년 지원한다고 발표
 - 왕실자산 관리기업(Crown Estate)의 연간 해상활동 수입에서 50%를 해안지역기금으로 조성
 - FY2010-11에 조성된 자금은 2,370만파운드임

- 기업촉진지구에 Birmingham, Bristol, Leeds, Sheffield 4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 2011.3월 예산안에서 21개의 신규 기업촉진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예산안에서는 11개 지구를 우선 선정함
 - 기업촉진지구(Enterprise Zones) 주요 지원내용
 - 향후 5년간 275,000파운드 한도 내에서 비주거재산세(business rates) 할인
 - 재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25년 동안 비거주재산세 인상을 제한
 - 건축허가권 등 지역이 보유한 권한을 활용하여 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 내 초고속 인터넷 제공 등을 정부에서 지원

3.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제도

가. NHS 현황

- 1911년 국가보험법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1948년 일원화하면서 NHS 제도 도입⁵⁾
 - NHS 제도는 ‘누구나 무료로 의료 필요(needs)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핵심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진료내용에 따라 초과, 안과 등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함
 - 1990년 NHS 및 지역사회보호법(NHS & Community Care Act)을 제정하여, 보건당국(health authorities)이 배정된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됨
 - 보건당국이 병원이나 기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보호서비스(healthcare)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
 - 의료서비스 공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각 의료공급기관은 독립적 성격의 법인체인 NHS 트러스트를 구성
 - 2002년에는 지역 차원에서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및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잉글랜드 지역에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 PCT)를 도입,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는 1, 2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해당 지역 의료서비스와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29,000명의 일반의(GPs)와 21,000명의 NHS 치과의를 포괄하고 있음
 -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는 NHS 전체 예산의 80% 정도를 담당함

5) NHS 관련 주요 법률(EU MISSOC, 2011.1월)

-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
- National Health Service (Primary Care Act) 1997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01
- National Health Service Reform and Health Care Professions Act 2002
- NHS (Charges to Overseas Visitors) Regulations 1989
- NHS (General Medical Services Contracts) Regulations 2004
- NHS (Primary Medical Services Agreements) Regulations 2004
- National Health Service Act 2006

- NHS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각기 독자적인 입법과 서비스 전달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잉글랜드 지역의 NHS제도는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전반적인 관리와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담당
 - 기초보호 트러스트와 보건부를 연계하는 중간 관리기구로 10개의 전략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이 존재
 - 전략의료기관은 해당 지역의 기초보호 트러스트를 모니터하고 의료인력 등 서비스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그러나 기초보호 트러스트와 전략의료기관은 NHS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임
 - 나머지 지역은 각 권한이양 행정부(devolved administrations)의 보건부처에서 NHS 제도를 담당
 - 각 지역 관리부처
 - 스코틀랜드 보건 및 지역사회보호부(Health and Community Care for Scotland)
 - 웨일즈 보건 및 사회서비스부(Health and Social Services for Wales)
 - 북아일랜드 사회서비스 및 공공안전부(Social Services and Public Safety for Northern Ireland)
 - 스코틀랜드의 경우 NHS에 대한 입법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나, 웨일즈의 경우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권한만 보유
 - 각 지역의 NHS제도 차이는 내부시장(internal market)의 역할이 핵심적임
 -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지역은 의료서비스의 구매자와 제공자의 구분이 명확하여, 의료서비스 구매자는 NHS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권한이양 이후 서비스 공급자와 구매자의 구분을 폐기하고 지역 의료기관이 자원조달과 서비스공급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전환

나. NHS 재정

□ NHS는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 조세⁶⁾로 조달

○ 권한이양 지역의 NHS 재원은 바넷(Barnett) 공식⁷⁾에 따라 포괄교부금(block grants)으로 배분되어, 각 지역 정부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NHS 지출규모를 결정함

○ 일반 조세 외의 재원은 본인부담(patient charge), 투자수입 등의 기타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NICs)에서 조달하고 있음

- 권한이양 행정부는 해당 지역의 본인부담 수준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처방전(prescription)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011년 현재 잉글랜드에서 7.2파운드, 스코틀랜드는 3파운드임

: FY2009-10 처방전 본인부담금 수입은 잉글랜드에서 4억 7,000만파운드(NHS 경상예산의 0.5%), 스코틀랜드에서 2,650만파운드 수준임

- 웨일즈는 2007년, 북아일랜드는 2010년 본인부담금을 폐지

- 치과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경우,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치료수준에 따라 12 ~ 198파운드를 부담해야 하고 북아일랜드는 치료비용의 80%(최대 384파운드)를 본인이 부담함

: 스코틀랜드는 북아일랜드와 유사

: FY2009-10 치과 본인부담금 수입은 잉글랜드에서 5억 9,760만파운드, 웨일즈에서 2,690만파운드임

- 수입에서 비중이 매우 적지만 의료공급자의 수익사업(주차요금, 전화이용료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조달함

- 주요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잉글랜드에서 0.8%, 웨일즈 0.2%, 스코틀랜드

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재원을 부담함

- 근로소득자 납부세금의 2.05%와 주당 소득이 £844 이상인 자의 초과세금

- 자영업자 납부세금의 15.5%

- 고용주 납부세금의 1.9%, 법정병가수당 전액, 법정 출산 수당의 8%

- 법정병가수당 전액, 법정 출산수당의 92%(경우에 따라 100% 지원),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복지 수당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

<http://www.nhic.or.kr/portal/site/main/menuitem.30cef0238fdfe4b8a8d30b24a210101c>

7) 바넷 공식은 (인구비율) × (중앙부처 계획지출 변화량) × (권한이양 행정부가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기능 비율)임. 인구비율의 반영 기준은 중앙정부 부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지역범위에 따라 잉글랜드 인구 대비 비율, 잉글랜드와 웨일즈 인구 대비 비율, 영국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을 적용함.

와 북아일랜드 0.1% 수준임

- 보건부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FY2008-09와 FY2009-10의 NHS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NHS 지출의 약 20% 내외임

<표 2-IV-3>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NHS 지출 및 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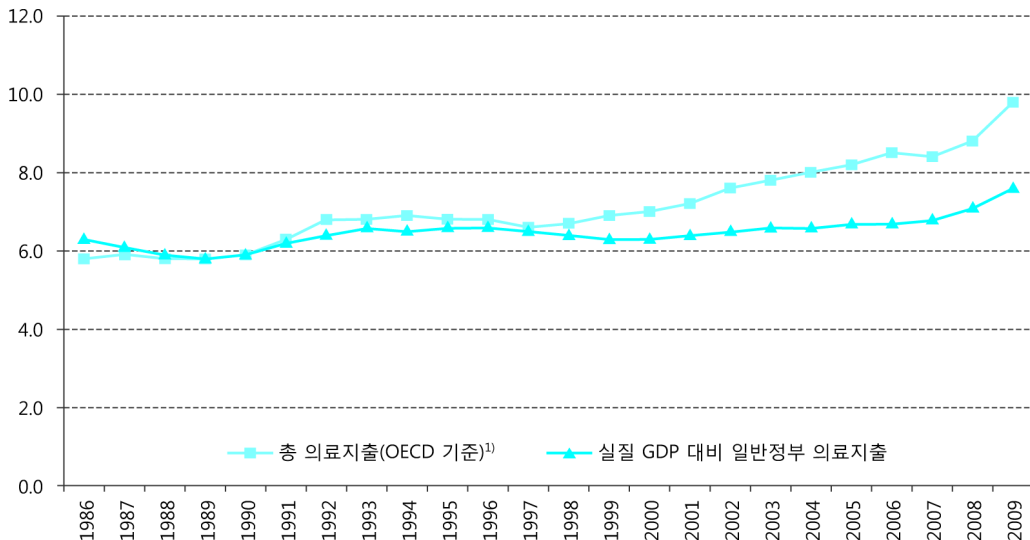
	FY2009-10	FY2008-09
지출	95.96	87.00
기타수입	2.32	2.30
사회보장기여금(NICs) 수입	18.03	18.94
순지출	75.61	65.76

자료: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resource accounts 2009-10, 2010.8

- 영국 전체의 의료지출은 국민소득 증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왔음
 - OECD 기준의 총의료지출의 경우, 2009년에 GDP의 약 10%로 나타남
 - 1990년대에 GDP의 약 7%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

[그림 2-IV-3] 의료지출 추이

(단위: GDP %)



주: 1) OECD기준은 의료행정, 군대, 교도소, 자선단체, 가정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총지출을 의미

자료: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Annexes(2011.7), Chart D.1 & D.3

○ 일반정부의 의료지출은 1990년대에 GDP의 6.5% 수준에서 2009년 GDP의 약 8%로 총의료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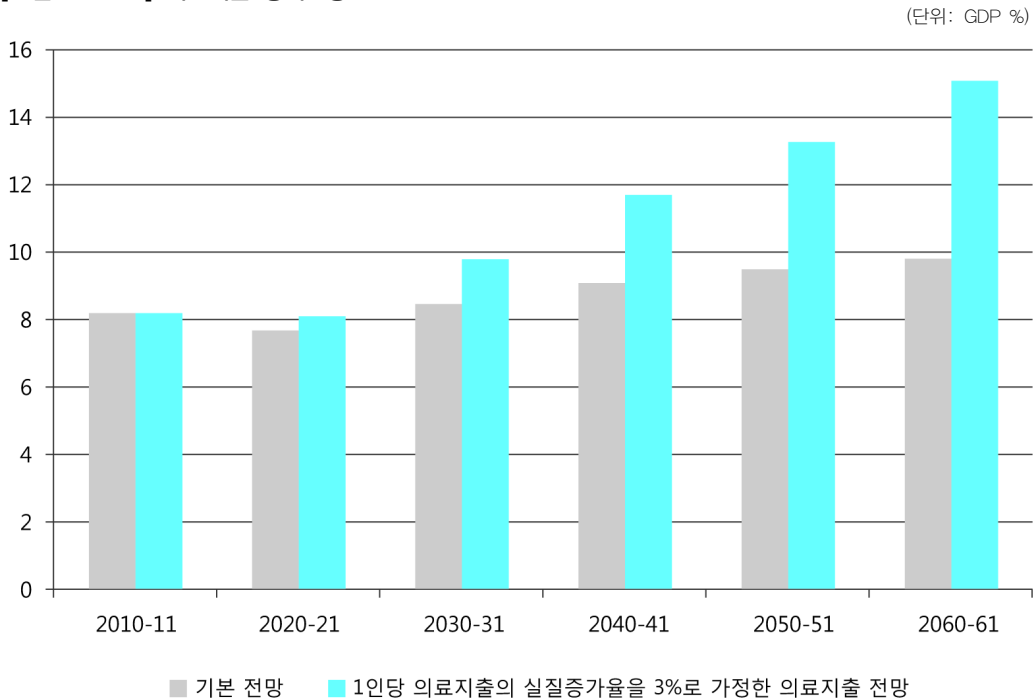
- (참고) OBR이 연도별(calendar year)로 측정한 명목 GDP 대비 명목 일반정부 의료 지출 비중과 영국 의회에서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한 GDP 대비 NHS 순지출 비중은 큰 차이가 없음

□ OBR이 2011.7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의료관련 지출은 FY2015-16에 GDP의 7.4%에서 FY2060-61에 GDP의 9.8%까지 증가할 전망

○ FY2010-11 현재, 공공부문의 의료지출은 GDP 대비 8% 수준이며, NHS 효율화 등으로 FY2015-16까지 의료지출을 절감할 계획

○ 1인당 의료지출의 실질증가율을 3%로 가정하면, 2060년에는 의료지출이 GDP의 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IV-4] 의료지출 장기전망



자료: OB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_Annexes(2011.7), Chart D.2

다. 최근 개혁 동향

- 영국의 의료개혁은 1차 의료 강화를 통한 질병예방과 이를 통한 의료지출 억제, 내부시장(internal market)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성 강화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
 -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 역시 의료제도의 시장화(marketisation) 개혁을 추진하여 민자유치(PFI) 도입 등 의료부문에서 민간병원의 역할을 확대함
 - 그러나 민간병원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관리 비용이 발생했고, NHS 트러스트 운영이 재정목표 달성에 치우치면서 서비스가 저하되기도 한다는 비판적 평가도 존재함

- 2010.5월 집권한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성과 개선, 의료서비스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증진을 목표로 NHS 개혁을 추진중
 - 2000년대 후반부터 의료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의료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과거 노동당 정부의 개혁으로 대기시간 감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부 암 사망률이나 호흡기 질환 사망률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당뇨, 천식 등에서 급성 합병증 비율과 MRSA 감염 발병률도 유럽국가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현재 추진되는 NHS 개혁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됨

- 영국 정부의 의료지출 절감의 기본적 방향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행정관리시스템 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주로 함
 - 연립정부는 대규모 지출삭감을 단행하면서도, 의료지출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기간(FY2011-12 ~ FY2014-15) 동안 실질증가율을 0.4%까지 보장할 방침
 - FY2011-12 현재 NHS의 부처별 지출한도 예산은 1,059억파운드(약 180조원) 규모로 전체 부처별 지출한도의 약 30%를 차지함

- 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보건부 지출의 97%는 NHS 지출에 해당됨

〈표 2-Ⅳ-4〉 중앙정부 NHS 예산 계획 (FY2011-12 ~ FY2014-15)

(단위: 십억파운드)

		FY2010-11 ¹⁾	FY2011-12	FY2012-13	FY2013-14	FY2014-15
NHS (보건부)	경상지출	98.4	101.5	104.0	106.9	109.8
	자본지출	4.5	4.4	4.4	4.4	4.5
부처별지출한도	경상지출	326.1	326.3	327.1	333.1	329.0
	자본지출	50.0	44.5	42.6	39.2	40.3

주: 1) 추정치

자료: HM Treasury, Budget 2011, 2011.3

- 동시에 NHS의 자본(투자)지출은 44억~46억파운드 수준으로 유지하고, FY2014-15까지 NHS의 운영비용을 45% 감축할 계획
 - 또한 중앙정부의 전 부처에 대해 행정예산(adminstration budget)을 33% 삭감할 방침
- 2011.1월 보건부는 NHS 개혁비용에 14억파운드가 소요되고 FY2014-15까지 행정비용 감축만으로 약 52억파운드의 지출절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FY2019-20까지의 감축규모는 총 137억파운드, 연간 17억파운드 규모임
 - 위 감축비용은 주로 2013년까지 폐지되는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와 전략의료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지출임

□ NHS 개혁 쟁점 1 : 예산 관리 체계의 변화

- 개혁 원안은 NHS 예산의 약 80%를 운영하던 기초건강보호 트러스트(PCT)를 폐지하고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 컨소시엄을 구성해 PCT의 모든 기능을 이관
 - 잉글랜드 지역에 존재하는 10개의 전략의료기관도 폐지
- 이러한 예산 관리 체계의 변화는 NHS 관리비용을 삭감하고 민간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PCT 등 의료행정 종사자들과 의료기관 민영화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영국 정부는 원안에서 일부 후퇴하여 개혁방안을 수정함

- 수정된 개혁방안은 GPs 컨소시엄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연계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예산권한을 이관할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
 - GPs 컨소시엄의 명칭은 Clinical Commissioning Groups로 변경되었으며, 최소한 전문의 1인, 간호사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
 - 그룹의 이사회에 간호사, 전문의가 참여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전문가들이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NHS 체계 내에서의 연계와 의료 및 사회보호와 기타 지역의료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부여
 - 예산권한을 이관하지 않을 경우 PCT의 예산 운영권한은 2012년 10월까지 설립될 NHS Commissioning Board에서 담당

- NHS 개혁 쟁점 2 : 민간 의료시장 확대
 - GPs 컨소시엄에 의료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여, 민간 의료서비스 제 공자 선택 가능
 - 의료서비스 수급자의 선택 범위도 확대하여, 지역별로 정해졌던 GPs를 직접 선택 할 수 있도록 변경
 - 이러한 선택 확대는 NHS의 민영화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으며, 보수당의 연정파트너 인 자민당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를 표명
 - 2011.4월부터 2달여 동안 NHS 개혁에 대한 국민공청회(NHS Future Forum)를 거쳐 여론 수렴
 - 캐머런 총리는 국민들의 우려처럼 미국식 의료체제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힘
 - 영국 정부는 NHS Future Forum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개혁방안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
 - 의료보호 규제 모니터를 통해 의료수급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규제 및 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함
 - 가격이 아닌 의료서비스의 질을 통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영화 우려에 대한 추가 안전장치 마련 등

- 인증된 의료공급자에 대한 선택은 2012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허용
-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혁을 추진할 방침

V

프랑스 (FY2011: 2011.1~2011.12)

1. 예산 및 결산

가. 수정예산(2011년 5월 발표, 7월 의회 통과)

- 2011년 5월 11일 예산수정안이 발표되고 7월 8일 의회를 통과함
 - 부유세 개혁, 조세부담 최고한도 폐지, 미실현 자본이득세 신설,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상, 자산보유세 감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부유세 개편
 - 부유세의 세율이 두 개의 구간으로 단순화 되며, 순자산이 300만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
 -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6호 참고
- 조세부담 최고한도(Tax Shield) 폐지
 - 최고한도란 직접세 총부담액이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폐지됨
- 미실현 자본이득세(New Exit Tax) 신설
 - 프랑스 거주자가 자본이득 회피를 위해 해외 이전 후 자본 처분 시 세금이 소급 적용되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해서 적용됨
- 미션/프로그램별 지출
 - 미션별 총지출규모는 본예산보다 10억유로 증가한 3,696억유로를 기록

- 정부재정관리가 4억유로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방과 언론이 각각 5,600만 유로와 4,600만유로로 가장 크게 삭감됨

<표 2-V-1> FY2011 1차 수정예산(LFR) 미션별 지출규모

(단위: 백만유로)

미션	본예산 (A)	수정예산 조정분 (B)	최종 (A+B)
외교	2,965	-6	2,959
일반공공행정	2,450	-7	2,443
농림수산업	3,670	-20	3,650
공공보조(저소득층 및 이민자 지원)	3,334	-16	3,318
퇴역 군인 지원	3,319	-14	3,305
위원회 및 감독기관	590	0	660
문화	2,682	38	2,720
국방	37,409	-56	37,353
국가정책방향 (정책통합 · 자유 및 권리보호 · EU 내 프랑스 지위 확보 등)	1,109	-3	1,109
환경친화 · 지속가능개발	9,512	-47	9,465
산업 및 기업 지원	2,063	-15	2,048
정부재정관리 - 부채 관리, 국제 발행 등	46,925	399	47,324
교육	61,794	-16	61,778
재정 및 인적자원 관리(예산 및 공공개혁 관련 정책)	11,747	-26	11,721
이민자 및 난민 통합	561	49	710
법무부	7,138	0	7,138
언론	1,454	-46	1,408
프랑스령 국가들에 대한 지원	1,977	17	1,960
균형발전정책	322	-3	319
R&D 및 고등교육	25,184	-34	25,150
은퇴자지원	6,027	-19	6,008
지방재정지원	2,639	-11	2,628
건강복지	1,222	-5	1,217
치안	16,805	15	16,820
시민안정(자연재해 등)	435	-3	432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	12,366	-9	12,357
체육 및 건강 · 청소년 지원	430	-3	427
노동 및 고용	11,575	-2	11,573
건설 및 주택	7,632	-2	7,630
예비비	34	-	34
의회 · 헌법위원회 등	1,018	-	1,018
합계	368,540	1,035	369,575

주: 1. - 는 데이터 없음
 2.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합계는 위 표의 합계가 아닌 전체 미션/프로그램의 합계임.

자료: FY2011 본예산(LFI) 및 1차 수정예산(LFR)

□ 수정예산법에서 재정수지는 본예산보다 7억 100만유로 악화된 923억유로 기록

〈표 2-V-2〉 FY2011 예산과정에서의 재정지표 변화

(단위: 백만유로)

	본예산	수정예산
수입	198,176	197,433
지출	289,616	290,163
일반회계 재정수지(a)	-88,214	-89,414
추가예산(b)	11	8
특별회계 재정수지(c)	-3425	-2,937
총 재정수지 [(a)+(b)+(c)]	-91,628	-92,343

자료: 본예산 및 1차 수정예산법

□ (2011.8.8) 제2차 수정예산안이 발표됨

- 7월 21일 유로존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그리스를 지원하고 유럽금융안정화기금 (EFSF)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
- 9월 6일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

□ (2011.5.25) 2011년 사회보장 수정예산법을 발표함

- 2011년 일반 제도의 수지전망은 본예산 -209억유로에서 -193억 유로로, 16억유로가 개선됨
 - 프랑스 2011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이 수입증가 기대로 이어진 것

〈표 2-V-3〉 2011년 사회보장부문 수지전망

(단위: 십억유로)

	본예산 (A)	수정예산 조정규모(B)	최종 (A+B)
의료보험 (CNAM)	-11.3	1.0	-10.3
법정연금기금 (CNAV)	-6.8	0.3	-6.5
가족지원금(CNAF)	-2.7	0.1	-2.6
산재보험 (CNAM AT/MP)	0.1	-0.1	0.0
일반 제도 수지(Regime General)	-20.9	1.6	-19.3
노후연대기금(FSV)	-3.9	0.0	-3.9
총액	-24.8	1.6	-23.2

자료: http://www.securite-sociale.fr/chiffres/lfss/lfss2011/PLFRSS_2011.pdf

나. 추경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해당사항 없음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2011.6.22) 온라인 광고회사에 대한 과세방안인 ‘구글세’ 철폐
 -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 구글세는 프랑스에 근거를 둔 회사가 온라인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비용금액의 1%를 과세하는 것임
 - 대기업 광고회사는 외국자회사를 통해 조세회피가 가능함에 따라 중소형 광고회사에 조세가 집중될 우려가 있어 철폐됨

- (2011.7.13) 균형재정에 관한 헌법초안이 양원에서 통과됨
 - (목적)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프랑스의 재정 구조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헌법초안은 재정 관리를 위한 규칙 및 기준 설립, EC 제출 전에 정부가 안정성 프로그램 초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재정동향』 제6호 참고

- (2011.7.27) 원자력 에너지 발전을 위한 10억유로 예산 집행 계획
 - 일본 지진 이후 원자력을 폐쇄하려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과 반대의 움직임
 - 사르코지 대통령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만한 다른 에너지가 현 시점에 없기 때문에 4세대 원자력 프로그램과 원자력 안정성을 위해 10억유로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3. 건강보험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1) 연혁

〈표 2-V-4〉 프랑스 건강보험제도 연혁

연도	내용
1945년	현재 공적건강보험제도는 1945년에 설립 - 1945년 10월 4일 명령에 근거하고 있음 - 수혜대상은 전국민 대상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적용은 추후 실행됨
1947년	공무원에게 확장 적용
1948	일반 국민과 학생들을 포함하기 위해 확장됨
1949	직업군인으로 확장 적용
1961	농업인구에게 확장 적용
1966-1970	고소득층 자영업자에 확장 적용
1978	자발적 건강 보험 도입
1990	'Finance Act'에 의해 건강보험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회각출금 도입
2000.1.1	'CMU(Universal Health Coverage Act ⁸⁾)'이 도입되어 프랑스의 모든 합법적 거주민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함

자료: Health Care Systems in Transition, 2004

□ 프랑스 건강보험은 조합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체제는 2층(기초제도와 보충제도)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의 주요 기능 하나로, 프랑스 국민은 나이·성·소득과 관계없이 보험기조 “통합 원칙”에 따라 적용을 받음

□ 기초제도는 가입자의 직업 범주에 따라서 복수의 하위 제도로 운영하며, 총대상인구의 적용인구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약 89%인 일반제도⁹⁾(Régime Général) 중심으로 운영

○ 기타제도 (인구의 약 11%¹⁰⁾)

8) 보편적 질병급여법

9) 산업, 상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종사자로 구성됨

- 자영업자제도
 - 농업자 제도 MSA
 - 전문직종사자와 법률가(CANAM)
 - 기타 직업범주별로 다양한 특별제도 (성직자, 광산근로자, 철도자, 공기업 근로자, 선원제도)
- 이 외 보험적용에서 제외되는 일부 직군 혹은 저소득층은 보편적 의료보험(CMU)에 가입 (2.3%¹¹⁾)
- (기본 CMU)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개인의 신청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진료비의 약 70%가 보험에 의해 커버됨
 - (보완 CMU) 연소득이 6,600유로¹²⁾ 이하인 저소득층¹³⁾에 적용되는데, 적용 여부는 매년 갱신되며 진료비는 전부가 커버됨

〈표 2-V-5〉 프랑스 사회보험체계와 적용 대상

제도종류	사회적위험	적용대상자	적용인구/총인구 비율
일반제도 (Régime général)	건강/산재	민간부문 피용자	86.2%
	노령	민간부문 피용자	66.1%
	가족수당	전국민	100%
특별제도 (Régime particuliers)	건강/산재(일반제도)	중앙/지방공무원, 군인, 공공병원종사자	20.1%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특수제도 (Régimes spéciaux)	건강/산재	광부, 국철/파리지하철	1.7%
	노령	종사자, 전기가스공사 직원,	
	가족수당(일반제도)	중앙은행 직원	
자율제도 (Régimes autonomes)	건강/산재	비농업, 자영업자, 전문직 등 자유업 종사자, 수공업자	6.5%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농업제도 (Régime agricole)	건강/산재	농업부문 종사자	5.6%
	노령		
	가족수당(일반제도)		

자료: 최기춘 외, 2007

10) 2008년 기준

11) 2004년 기준

12) 2004년 기준

13) 본인,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부양 자녀들에게 적용됨

□ 보충제도는 비영리 혹은 민간보험자에 의해 제공되는 선택보험이며, 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국민의 약 94%가 보충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2) 가입률

□ 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인 사회보장제도로 인구의 100%가 가입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가입률도 2010년 93.7%로 매우 높음

〈표 2-V-6〉 프랑스의 공적 및 사적 보험 가입률

(단위: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

연도		1995	1999	2000	2002	2006	2008	2010
건강 보험	공적 및 사적 보험 가입률	99.4	99.9	99.9	99.9	99.9	99.9	99.9
	공적건강보험가입률	99.4	99.9	99.9	99.9	99.9	99.9	99.9
커버 리지	사적건강보험가입률	83.4	83.4	85.8	87.4	91.6	93.7	93.7

자료: OECD 홈페이지(<http://stats.oecd.org/index.aspx>)에서 재구성 (2011년 6월 업데이트)

3) 부과체계

□ 프랑스 공공 건강보험 재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여금, 조세(CSG, CRDS, 목적세) 및 국고지원으로 구성됨

○ 사회보장보험료(건강보험 포함)은 고용인에게 0.75%, 고용주에게 12.8% 부과하되,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요율을 적용함

□ 일반사회각출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과대상을 총소득으로 확대하여 CSG 부과 - 1991 Finance Act에 의해 설립됨

– 세율은 1991년 도입 당시 1.1%로 시작하여 1998년 7.5%로 증가함

• 2010년 기준으로 노동수입은 7.5%¹⁴⁾, 불로소득은 8.2%, 사회보장 수입¹⁵⁾과 연

14) 이 중 5.1%가 (불로소득의 경우 5.95%) 건강보험수입으로 귀속됨

금수입은 각각 6.2%, 6.6% (단, 저소득층 3.8%), 도박 매출 수입은 9.5%

- 일반 근로소득·사회보장 수입 등 근로자의 전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기존의 고용주 부담이었던 가족 및 노령부문의 급여제공을 대체함

□ 사회보장적자해소분담금¹⁶⁾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 근로자 소득의 0.5%를 공제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구조 개선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분담금

4) 요율 변동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며, 1998년부터 CSG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을 0.75%로 대폭 축소되었음

〈표 2-V-7〉 연도별 보험료율

(단위: %)

구분	근로자	사용자	합계
1992.7.1	6.8	12.8	19.60
1997.1.1.	5.5	12.8	18.30
1998.1.1~2011.8	0.75	12.8	13.55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dices.insee.fr>

□ CSG는 1998년 이후 요율의 변동 없이 7.5%를 유지함

〈표 2-V-8〉 연도별 CSG 요율

(단위: %)

구분	1991	1993	1994	1998
요율	1.1	2.4	3.4	7.5

자료: 프랑스 통계청 <http://www.indices.insee.fr>

15) 병가 혹은 출산휴가 수당 등

16) 사회부채배상금로도 번역됨

□ CRDS는 도입된 이후 변동 없이 0.5% 요율을 유지함

5) 재원 구성

□ 보험료와 일반사회각출금(CSG) 수입의 합은 일반제도 건강보험 재원의 84% 이상을 차지함

〈표 2-V-9〉 일반 제도 건강보험의 재원 구성

Revenue	Percentage (billion euros)		
	1990	2000	2007
Employees contributions	32.2 (20.1)	3.4 (3.4)	2.9 (3.8)
Employers contributions ^a	63.1 (39.3)	51.1 (49.8)	46.6 (61.8)
Total contributions	95.2 (59.4)	54.5 (53.2)	49.5 (65.6)
General social contribution (CSG)	0.0	34.6 (33.8)	37.6 (49.8)
Specific taxes (for example, cars, tobacco)	1.6 (1.0)	3.3 (3.3)	3.4 (4.5)
Taxes on pharmaceutical companies	0.0	0.8 (0.7)	1.2 (1.6)
Total taxes	1.6 (1.0)	38.7 (37.8)	40.9 (54.2)
State compensation for the loss of contributions ^b	0.5 (0.3)	4.9 (4.8)	7.8 (10.3)
Adjustment between health insurance schemes	1.1 (0.7)	0.3 (0.3)	0.7 (0.9)
Other	1.5 (1.0)	1.6 (1.5)	1.1 (1.5)
Total revenue	100.0 (62.3)	100.0 (97.6)	100.0 (132.5)

Source: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2001, 2009.

Notes: ^aThis includes contributions paid by SHI on behalf of doctors; ^bthe state compensates SHI for the loss of contributions directly related to economic policy decisions; a recent example is the reduction of employers' contributions for employees working in support services at home.

자료: France Health Systems Review, 2010년

○ 2009년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 48%, 일반사회각출금 36% 사회보장목적세 11%와 기타수입 5%로 구성됨

6) 관련 부처

- 프랑스 복지부 (www.sante.gouv.fr)
- 국립건강보험기금 혹은 전국건강보험공단 (CNAMTS) (www.ameli.fr)
- 예방·건강·교육 위한 국가기관 (INPES) (www.inpes.sante.fr)
- 보건당국 (www.has-sante.fr)

- 건강보험제도 개혁 최고위원회(HCAAM)
- 사회보장조직 중앙기구(ACOSS)¹⁷⁾

나. 건강보험 재정

1) 재정추이 및 현황

- 1990년대 이래 일반사회보장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벗어나지 못함
 - 1980년대 중반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악화되며, 특히 2000년 이후 건강보험 적자가 크게 증가함

〈표 2-V-10〉 일반제도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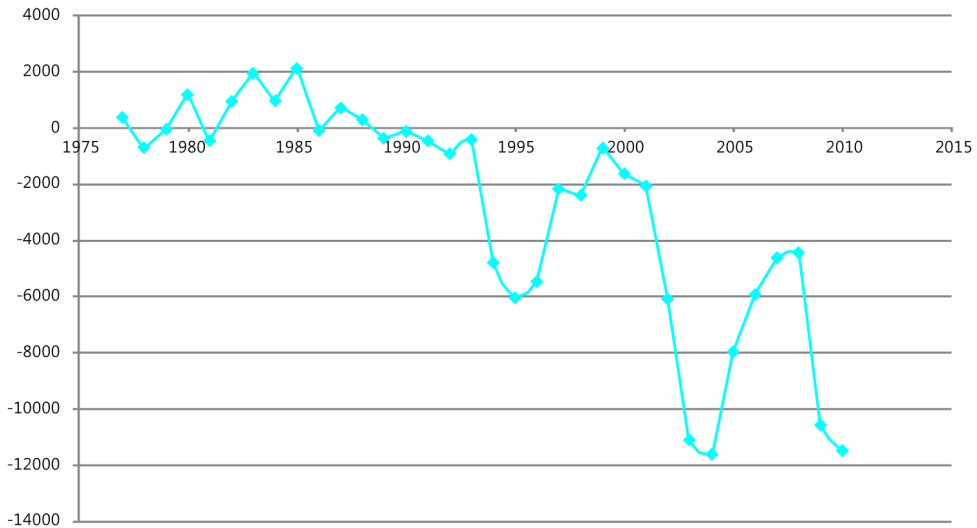
(단위: 백만유로)

연도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재정수지	377	-709	-77	1181,8	-492,4	917	1921,3	942,7	2110,5
연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재정수지	-1151	703	280	-386	-1418	-465	-957	-4169	-4803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재정수지	-6053	-5472	-2198	-2428	-731	-1634	-2068	-6098	-11105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정수지	-11642	-8008	-5936	-4629	-4448	-10571	-11480		

자료: www.ecosante.fr

17) 보험료 징수 및 재정을 관리하는 전국 단위 기관이며 건강보험료와 일반사회각출금을 총괄 징수

[그림 2-V-1] 일반 제도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



□ 공적 건강보험 지출 추이

○ GDP 대비 공적 보건지출은 2000년 8%에서 2008년 8.7%로 소폭 증가하였음

<표 2-V-11> GDP 대비 총 공적 보건지출

(단위: GDP 대비 %)

연도	'60	'70	'80	'90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적지출	2.4	4.1	5.6	6.4	8.0	8.1	8.4	8.6	8.7	8.8	8.7	8.6	8.7

자료: OECD 및 IMF 예측치(2010)

2) 미래 재정 추계 결과

□ 현재 프랑스에서 건강관련 지출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더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공적 보건지출은 2010년에서 2050년 사이 GDP의 2.6%p 증가할 전망

〈표 2-V-12〉 공적 보건지출 전망 (2010-50년)

(단위: GDP 대비 %)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지출전망	9.0	9.4	9.7	10.1	10.5	10.8	11.1	11.4	11.6

자료: OECD Health Data, WHO 및 IMF 예측치

- 프랑스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2011년 사회보장예산법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4년까지 다소 개선될 전망

〈표 2-V-13〉 건강보험의 재정 추이

(단위: 십억유로)

항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p	2012p	2013p	2014p	
일반 제도	수입	121	137.5	144.4	140.7	139.7	142.5	147.8	154.1	160.2	167
	지출	129	143.4	149	145.2	150.3	154.6	159.3	164	169.2	174.6
	수지	-8.0	-5.9	-4.6	-4.4	-10.6	-12.1	-11.5	-9.8	-8.9	-7.5
기초 제도	수입	141.8	160.1	167.6	164	163.2	166.5	172.2	179.5	186.6	194.5
	지출	149.9	166	172.7	168.1	173.6	178.4	183.5	189.3	195.4	201.8
	수지	-8.1	-5.9	-5.0	-4.1	-10.4	-11.9	-11.3	-9.8	-8.8	-7.2

자료: <http://www.legifrance.gouv.fr>

다. 건강보험제도 개혁

1) 제도상 문제점

- (수입구조 개선 필요) 1980년대 후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함
- 200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 수입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됨
 - (원인) 재정적자는 1970년 중반 이후 지속되었던 경제적 불황기에 국민소득과 조세 수입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지출구조의 쇄신) 매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정체

상태를 계속해 옴

2) 주요 개혁

- 1976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 악화되었고 이후 20여 개의 개혁이 진행되었지만 목표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함
- 1990-1993년
 - 1991년 사회보장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일반사회각출금(CSG)을 도입함
 - 1992년 의료관련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 민간의료 부문과 요양 분야에서 지출상한제를 도입하여, 초과 시 패널티 부과
 - 1993년
 - Loi Teulade (Act 93-8) 의료진들이 진료수준을 감시하여 공공 건강 수준 개선에 참여하도록 하며 의료비지출 증가의 상한을 설정함
 - 1993년 1월 4일 Act 93-5은 환자의 본인부담액을 인상
- 1995년 주삔 개혁 (Jupe Plan)
 - (목표) 구조적인 조치를 도입하여 건강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개선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내용) 건강비용지출목표(ONDAM)와 사회보장재정법을 도입함으로써 의회에 의료비용 통제 권한 부여
 - (결과) 3~4년 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2001년 이후 적자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2005년 건강보험개혁
 - (동기)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출구조를 효율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 추진
 - (목표) 보다 지속가능한 공적 건강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
 - 의료접근의 형평성 강화,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 사회연대성 강화

- (내용) 재정구조개편, 지출구조개편, 주치의 제도 도입, 개인의료기록부(DMP), 보건 의료 관련 기관·기구 신설·개편 등이 있음
 - (재정구조개편) 일반사회각출금(CSG), 사회보장적자해소분담금(CRDS)의 부과체 계와 부과율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목적세 실시
 - (지출구조 개선) 전국건강보험공단(CNAMTS)의 역할 강화, 약가결정제도 재정비, 진료비 지불제도 및 급여제도의 관리체계 개선
 -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소비촉진 위한 정책 도입, 최소 기본 본인 부담금제 도입 (진료/치료 1회당 최소금액 지불)
 - (기관 신설) 최고보건청(HAS), 건강보험공단 (CNAMTS), 건강보험 기구연합 (UNCAM), 의약품 경제성평가위원회 (CEPS) 등 다양한 보건의료조직들의 협력 기 제 강화

VI

독일 (FY2011: 2011.1~2011.12)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독일 재무부 장관,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정부 예산지침을 재차 확인(2011.7.6)
 - 독일 재무부 장관은 7월 6일 열린 각료회의에서 지난 3월 16일 발표한 정부 예산지침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독일 정부의 정치목표는 재정건전화임을 거듭 강조
 -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2012년 예산계획 및 2011-2015년 증기재정전망은 2012년 순차입을 272억유로로 당초 예산지침보다 43억유로 낮게 예상했으며, 2015년 순차입 규모는 147억유로로 당초 예산보다 14억유로 높게 전망함

〈표 2-VI-1〉 2011-2015년 예산전망

(단위: 십억유로, %)

	2011	2012	2013	2014	2015
재정지출	305.8	306.0	311.5	309.9	315.0
전년 대비 증가율		0.1	1.8	-0.5	16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	0.7				
재정수입					
조세수입	229.2	247.4	256.4	265.8	275.7
세외수입	28.2	31.5	30.2	25.4	24.6
순차입	48.4	27.2	24.9	18.7	14.7

자료: 독일재무부, Kurzfassung der Kabinettvorlage zum Regierungsentwurf des Bundeshaushalts 2012 und des Finanzplans 2011 bis 2015, 2011년 7월

- FY2012 예산안은 통상 8월 발표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독일 연방정부 FY2010 결산보고서(Haushaltsrechnung des Bundes) 발표 (2011.5.30)

○ 2010년도 재정지출은 3,037억유로, 재정수입은 2,593억유로이며 신규차입은 440억 유로

- 총재정지출은 기존 예상치인 3,195억유로보다 158억유로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전년 대비 114억유로 증가(증가율3.9%)
- 총재정수입은 2,593억유로로 전년 대비 16억유로 증가(증가율 0.6%)하였으며, 조세수입은 2,262억유로이며 세외수입은 331억유로에 해당
- 적자규모는 443억유로 규모로 이는 전년 대비 28.6% 악화됨

〈표 2-Ⅶ-2〉 2010년도 결산 내용

(단위: 십억유로, %)

	2010년 예산	2010년 결산	2009년 결산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재정지출	319.5	303.7	292.3	+11.4	+3.9
재정수입	238.9	259.3	257.7	+1.6	+0.6
조세수입	211.9	226.2	227.8	-1.6	-0.7
세외수입	27.0	33.1	29.9	+3.2	+10.7
적자규모	-80.6	-44.3	-34.5	-9.9	-28.6
신규차입	80.2	44.0	34.1	+9.9	+28.9
Münzeinnahmen	0.4	0.3	0.3	-0.002	-21.7
투자지출	28.3	26.1	27.1	-0.1	-3.8

자료: 독일 재무부, 「2010년도 결산 보고서」, 2011년 4월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독일내각, 은행세(거시건전성 부담금) 법령 승인 (2011/7/21)
 - 동 법령은 지난해 말 발효된 구조조정기금법(Restructuring Fund Act)에 기초하였으며, 지난 3월 추가개정안에서 언급된 은행세율, 연간은행세 규모 및 은행세 부과과정 부분이 일부 수정됨
 - (은행세율) 은행의 연간부담금은 은행의 부채규모별로 차등하여 부과하는 데에는 변함이 없으나 세율이 수정되었음
 - 은행세율은 3억유로 미만의 부채 보유시 적용되지 않고, 3억유로 이상 3천억유로 미만일 경우 단계별로 0.02% 이상 0.06% 미만의 세율을 부과하며, 3천억유로 이상일 경우 0.06%의 최대세율을 부과
 - 파생상품은 기존 0.00015%에서 0.0003%로 변경되었음
 - (연간은행세 규모) 금융기관의 연간 부담금 규모는 은행의 전년도 총수익의 최대 20%(15%에서 변경)로 제한하여 은행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연간분담금의 최소 5%는 부과되어야 하며 연간 분담금 상한선으로 인해 충분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 그 차액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간 분배되어 부담
 - (은행세 부과과정) 각 금융기관별 연간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자료는 회계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며 매년 7월 15일 이전에는 FMSA(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tabilisation)에 보고되어야 함
 - 각 금융기관별 연간분담금 규모는 매년 9월 30일 공고
 - 다만, 2011년은 최초 도입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될 것임
 - 이날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은 은행세 도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2011년 9월 은행세 부과에 기반이 될 것임
-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추가 구제금융은 공적인 대출 외에 민간금융이 포함될 것이라

밝힘 (2011.6.30)

- 독일 재무부장관 Wolfgang Schäuble와 독일은행 대표이사 Ackerman은 6월 30일 베를린 재무부에서 열린 독일 주요은행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그리스 의회가 긴축정책을 승인한 것과 관련, 독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에 추가적 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 당초 1차 그리스 구제금융의 마지막 지급분량인 120억유로 지급 전제조건으로 그리스 긴축정책과 국유 자산 매각 법안의 그리스 의회 통과를 요구했었음
- 독일 재무부장관은 또한 앞으로 추가적인 지원에서 민간금융의 자발적인 참여는 긍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 IMF, 독일의 최근 경제 및 재정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2011.5.17)

- IMF는 5월 17일까지 2주간 계속된 연례협회의 최종성명에서 독일의 최근 경제 및 재정정책은 긍정적이라 평가하였으며, 독일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의 경제회복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
- 또한, IMF는 현재 독일의 재정건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함

□ 독일의 원전 폐쇄 및 에너지전환 관련

- 독일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추진중인 원전 폐쇄 및 에너지전환 관련 개정 법안 및 정책에 대해 6월 6일 내각 결의하고, 6월30일과 7월 8일 각각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에서 의결됨에 따라, 독일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원전을 폐쇄해야 하며,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시장에 통합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또한, 에너지·기후펀드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기업의 지불의무가 삭제되고, 전액 탄소배출권매매 수익금으로 펀드기금을 조성할 예정
 - 에너지·기후펀드법은 2010년 11월 원전가동시한 연장에 대한 보상으로 원전기업의 펀드구성 참여를 의무화하였으나, 원전가동기한 연장 취소로 인해 동 의무 역시 삭제될 예정
 - 독일정부는 2013년부터 탄소배출권매매를 통한 수익을 연간 약 33억유로로 예상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해당사항 없음

3. 독일의 건강보험¹⁸⁾

가. 건강보험 현황

1) 제도의 연혁

□ 독일의 건강보험제도는 1883년 도입 이래,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표 2-Ⅶ-3〉 독일 건강보험제도 연혁

연도	내용
1883년	독일 건강보험제도의 최초법인 질병보험법 입법
1911년	질병, 산재, 근로자연금보험을 제국보험법으로 통합
1939년	수공업자를 위한 법정사회보험제도 도입
1957년	농업종사자를 위한 고령자부조제 도입
1989년	'1차 제호퍼 개혁'으로 공적 건강보험 규정을 '공적 건강보험 구조개혁법'으로 정리, 제국보험법을 사회법전(SGB) 5편에 수록
1993년	보건의료구조법(GSG) 도입으로 보험제도 선택 가능해짐
1994년	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997년	1, 2차 공적 건강보험 개혁법 및 보험료 경감법 시행
1998년	'공적 건강보험 연대강화법' 처음 실시
1999년	보건의료개혁법으로 1,2차 공적 건강보험 개혁법 일부 폐지
2000년	'공적 건강보험 개혁 2000' 단행, 보건의료개혁법 시행으로 질병치료 협력증진과 광범위한 질 관리 제도 및 병원진료를 위한 신보수지불제도 도입
2002년	'보험료를 법정화법' 제정
2004년	'보건의료 현대화법(GMG)' 실시
2007년	'공적 건강보험 경쟁력 강화법'로 명명된 보건의료개혁 2007 단행

자료: <http://www.g-k-v.de/gkv/index.php?id=633>

신영석 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2008.12

2) 부과체계

□ 독일은 공적건강보험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계층만을 강제가입 대상으로 법제화

18)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2009.11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계층의 경우 민간 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방

- 연방노동사회부는 매년 소득을 기준으로 강제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보험료부과 소득상한을 발표
 - 2009년 기준 보험료부과 소득상한은 세전 연간소득 48,600유로, 월소득은 4,050유로임¹⁹⁾
-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산정에는 보험료산정 한도액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 2009년 기준 보험료산정 한도액은 연간소득 43,200유로, 월소득은 3,600유로

〈표 2-Ⅶ-4〉 독일의 의료보장체계

구분	가입자
공적 건강보험체계	사회보험 강제가입대상
공적 건강보험 이외의 공적 의료보장 프로그램	공공부조 · 특수직역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민간 의료보험	일반공무원 및 강제가입 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회보험 강제가입 적용제외자

□ 독일은 ‘보건의료개혁 2007’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1일 건강보험기금²⁰⁾이 도입되어 현재 피보험자(혹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재원이 건강보험기금에 의해 관리되며, 이러한 재원은 공적 건강보험조합에 분배되어 사용됨²¹⁾

· 자세한 사항은 〈다. 건강보험 개혁〉 부분 참조

□ 독일은 조합방식의 공적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건강보험 조합이 자율적

19) BMA(2009)

20) 건강보험기금은 2009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을 가입자의 건강위험을 기준으로 모든 공적 건강보험조합에 분배

21) 2009년의 경우 재원의 100%가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되나, 2010년부터는 재원의 95%만 건강보험기금에서 분배되고, 나머지 5%는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충당함

이고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유지하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조합 간 재정공동사업과 국고지원 등 추진

○ 공적 건강보험조합은 크게 일반지역가입자(AOK), 직장가입자(BKK), 수공업자(IKK), 농민(LKK), 광산·철도근로자·선원(Bknsch-Bahn-SeeKK), 근로자들 중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직 근로자 2차(Arb.EK) 및 사무직 근로자 2차(Ang.EK)로 구성

- 일반지역가입자(AOK):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지역주민, 농업노동자 및 강제가 입 대상자 중 다른 건강보험조합의 미가입자를 보호
- 직장가입자(BKK):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사업자의 근로자
- 수공업자(IKK): 상시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수공업 사업장의 근로자
- 농민(LKK): 자영농민 및 그 가족종업원
- 광산·철도근로자선원(Bknsch-Bahn-SeeKK): 광산업 종사자, 해상선박 승무원 및 철도종사자

○ 2010년 기준 공적건강보험조합은 169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AOK가 14개, BKK가 130개, 기타조합이 32개임

- 2002년 공적건강보험조합이 485개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감안할 때, 지난 8년간 조합수가 크게 감소
- 이 중 AOK는 전체의 1/3 비중을 차지

3) 요율 변동

〈표 2-Ⅶ-5〉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평균 보험료율

(단위: %)

연도 ¹⁾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보험요율	8.20	10.50	11.40	11.80	12.50	13.15	13.48	13.58	13.62	13.60	
연도 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²⁾	2006	2007	2008	2009~ 2009.7	09.8.1 ~ 2010
보험요율	13.54	13.58	13.98	14.31	14.22	14.63	14.21	14.80	14.9	15.5	14.9

주: 1) 1995년 이전 자료는 통일전의 서독 자료에 기초

2) 2005년부터는 추가보험료 0.9%가 반영된 수치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2011년 15.5%이며, 이중 7.3%는 고용주가 부담하고 8.2%는 피보험자가 부담
 - 2005년부터 추가보험료 0.9%를 피보험자만 부담

4) 가입자 변동

-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010년 기준 6,947만 4천명에 달하며,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009년 기준 881만 1천명을 기록
 -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991년부터 큰 변동이 없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7천만명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Ⅶ-6〉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

(단위: 천명)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가입자수	71,283	71,976	72,165	71,714	71,886	72,132	71,596	71,659	71,782	71,815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수	71,258	70,961	70,124	70,280	70,188	70,013	70,022	69,952	69,719	69,474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표 2-Ⅶ-7〉 독일 민간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

(단위: 천명)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가입자수	6,977	7,065	7,206	7,356	7,494	7,710	7,924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입자수	8,110	8,259	8,373	8,489	8,549	8,639	8,811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5) 관련부처

- 독일 연방보건부(Federal Ministry of Health)가 건강보험의 전반적 감독을 맡고 있으며, 연방보험원(Federal Insurance Institute)이 연방건강보험을 감독

나. 건강보험 재정

1) 재정추이 · 현황

- 지난 18년 동안 독일의 총보건지출 및 공적 건강보험지출은 2004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2009년 독일의 총보건지출은 2,783억 4,500만유로로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11.6%에 달함
 - 이 중 공적 건강보험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94억유로(6.2%) 증가한 1,608억 5,400만유로(총보건지출의 57.8%)를 차지하였고, 민간 건강보험지출은 260억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
 - 1992년 총보건지출은 1,586억 2,800만유로이며, 이 중 공적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총보건지출의 62.2%인 987억 1,800만유로로 총보건지출 대비 공적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최근 감소한 편
 - 2004년 총보건지출 및 공적 건강보험지출이 감소했던 것은 2004년 단행된 개혁의 결과로 여겨짐

〈표 2-Ⅶ-8〉 독일의 총보건지출, 공적 건강보험지출 및 민간 건강보험지출

(단위: 백만유로, %)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보건지출	158,628	163,139	175,059	187,069	195,478	196,414	201,805	207,355	212,951
GDP 대비	9.6	9.6	9.8	10.1	10.4	10.2	10.2	10.3	10.3
공적건강보험지출	98,718	98,929	107,327	112,474	116,143	115,178	117,734	121,166	123,914
민간건강보험지출	11,679	12,607	13,402	14,275	14,618	15,650	16,148	16,969	17,604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보건지출	220,887	228,774	234,626	234,411	240,475	246,077	254,291	264,506	278,345
GDP 대비	10.4	10.6	10.8	10.6	10.7	10.6	10.5	10.7	11.6
공적건강보험지출	128,399	132,935	135,583	131,570	135,877	139,755	145,361	151,465	160,854
민간건강보험지출	18,440	19,453	20,438	21,138	22,023	22,476	23,452	24,896	25,957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 ECD Health data 2011

- 독일은 2009년부터 공적 건강보험조합과 건강보험기금이 공존하였는데, 2009년 공적 건강보험조합은 재정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흑자를 기록한 반면 건강보험기금은 지출이 수입비중보다 커 적자를 기록
 - 2009년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재정수입은 1,722억유로이며, 재정지출은 1,708억유로로 14억 1,800만유로의 흑자를 기록
 -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조합이 2008년 말을 기점으로 유동성 준비금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
 - 반면, 건강보험기금은 수입부분에서의 주기적인 부족분으로 인해 24억 8천만유로 적자를 기록
 - 2009년 건강보험기금의 재정수입은 1,645억 1천만유로, 재정지출은 1,669억 9천만유로를 기록
 - 그 결과 2009년 공적건강보험은 10억 6,400만유로의 적자를 기록

〈표 2-Ⅶ-9〉 독일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유로, %)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수입	92.15	102.84	113.61	118.79	120.35	124.37	126.15	127.75	131.20	
연평균 증가율		11.61	10.47	4.57	1.31	3.34	1.44	1.26	2.70	
지출	93.59	107.63	108.28	117.39	124.00	127.92	125.29	127.47	130.92	
연평균 증가율		15.00	0.61	8.41	5.63	3.16	-2.05	1.74	2.70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	133.81	135.79	139.71	141.65	144.27	145.74	147.62	153.57	159.96	172.20
연평균 증가율	1.99	1.48	2.88	1.39	1.85	1.02	1.29	4.03	4.17	7.65
지출	133.70	138.81	143.03	145.09	140.18	143.81	148.00	153.88	160.94	170.78
연평균 증가율	2.13	3.82	3.04	1.45	-3.39	2.59	2.92	3.97	4.59	6.12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 독일 공적 건강보험의 2010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
 - 2010년 1~3분기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재정수입은 1,312억유로이며, 재정지출은 1,309억유로로 재정수지는 2억 7,700만유로의 흑자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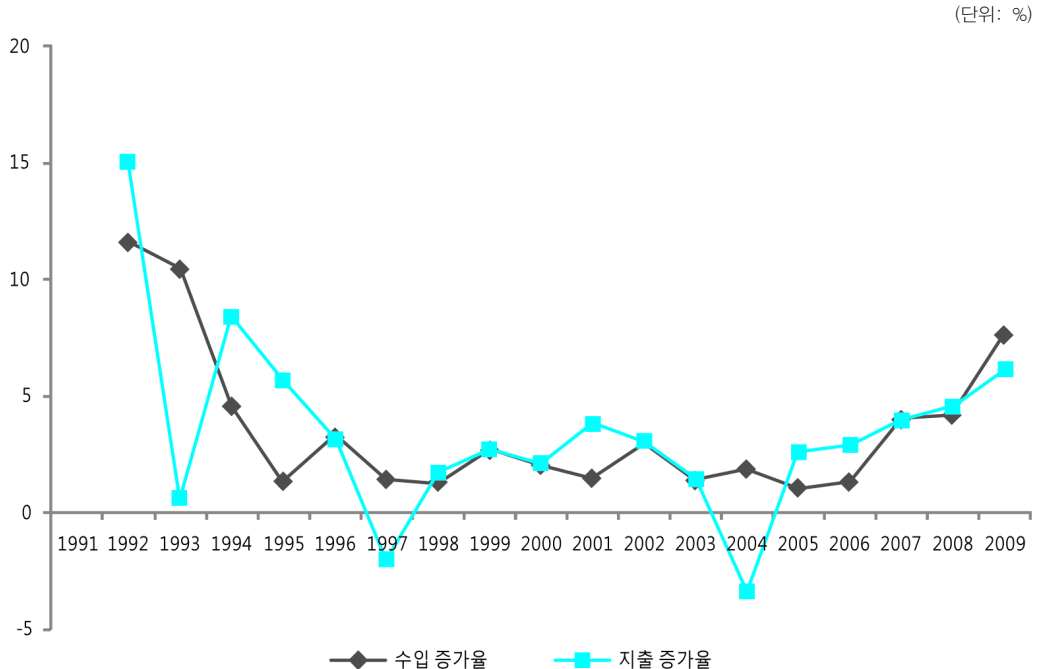
- 또한, 2010년 1~3분기 건강보험기금의 재정수입은 1,285억유로이며, 재정지출은 1,277억유로로 공적 건강보험조합과 마찬가지로 7억 7,700만유로 흑자를 기록
- 이로 인해, 2010년 1~3분기 공적 건강보험은 10억 5,400만유로 흑자를 기록
 - 그러나, 과거 실적에서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4분기 지출이 전체 지출의 26%를 차지하고 4분기 월별 평균 재정지출이 다른 분기의 평균보다 7~8억유로 높은 것을 감안하며, 건강보험기금의 4분기 재정수입이 다른 분기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공적건강보험의 재정적자 여부는 예측하기 어려움

다. 건강보험 개혁

1) 독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점

- 독일은 건강보험 수입증가율이 지출증가율보다 작아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림 2-Ⅶ-1] 독일 공적 건강보험 조합의 수입·지출 증가율



자료: <http://www.sachverstaendigenrat-wirtschaft.de/>

- 독일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수입증가율은 2008년까지 지출증가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2009년에 들어서면 수입증가율이 지출증가율보다 높아짐
 - 이는 건강보험기금 도입으로 인해 각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급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되나 좀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독일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총액예산제, 지역단위로 의사에 대한 약제비 지출한도 설정 등 지출 측면을 강조

2) 개혁목표 및 결과

- 독일의 공적 건강보험 개혁은 추구목표와 주 정치세력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음
 - 1989년~1997년: 보수정당 기민당(CSU)과 시장자유주의정당인 자민당(FDP) 연방정부의 가입자 부담증가를 통한 재정지출 억제 및 보험자간 경쟁체제 도입
 - 예산제 도입에 의한 재정지출 억제
 - 조합별 건강보험 가입강제를 해제한 가입자의 건강보험조합 선택의 자유보장
 - 1998년~2006년: 사회민주주의정당인 사민당(SPD)과 시민환경주의정당 동맹 90·녹색당(Bündnis 90 · Drünie Gre) 연방정부의 공급자개혁을 통한 재정안정화
 - ‘공적 건강보험 개혁 2000’
 - (목표) 병원 입원진료 진료비 지불체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고, 외래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한 처방 허용 의약품목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지역별로 구분된 보험계약의사에 의한 외래진료·병원 입원진료·외래진료에서 처방의약품으로 구분된 예산을 하나의 포괄적인 총액예산제로 묶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안정시키며, 병원진료와 외래진료를 연계하고자 함
 - (내용)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주 단위와 개별 건강보험조합 단위에서 예산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과잉공급을 강제조정하였으며, 주치의의 역할 강화, 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하는 등 공급자 개혁을 통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함

- (결과) 그러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의 반발과 정치적 갈등으로 주치의의 역할 강화 및 포괄수가제 도입만 실시됨
- 2004년 ‘보건의료현대화법’
 - (목표) 공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피보험자외에 보건의료체계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부과(Nagel,2007)
 - (내용) 외래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인 외래진료방문료²²⁾가 도입됨에 따라 외래진료의 양이 3~5% 정도 감소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을 이유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인하하고자 법정 급여의 하나인 상병수당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²³⁾을 폐지
 - (결과)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에 일시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본인부담금 증가에 따라 저소득층의 강력한 반발 초래 및 고용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동일 부담원칙 약화
- 2007년 이후: 보수정당과 사회민주주의정당 연립정부 국가의 역할과 책임 강화
 - ‘보건의료개혁 2007’
 - (목표)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공적 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의료보험과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 유도
 - (내용) 독일의 모든 거주민에게 공적 혹은 민간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연방보조금 지급을 확대, 민간의료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강화, 지역과 직종으로 구분된 6개의 연방 공적 건강보험 조합 최고협회들을 1개로 통합, 건강보험기금을 도입(2009년부터)
 - (결과) 국가는 공적 건강보험 재원의 중앙집중화와 전국 단위에서의 자원 분배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국가 보조금의 지속적 투입 및 보험료를 결정까지 담당하게 됨
 - 공적 건강보험조합의 경우, 연방정부가 2009년부터 보험료를 전국 단위의 단일 보험료율로 결정함에 따라 보험료 결정의 자율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기금 도입과 함께 자원조달 방법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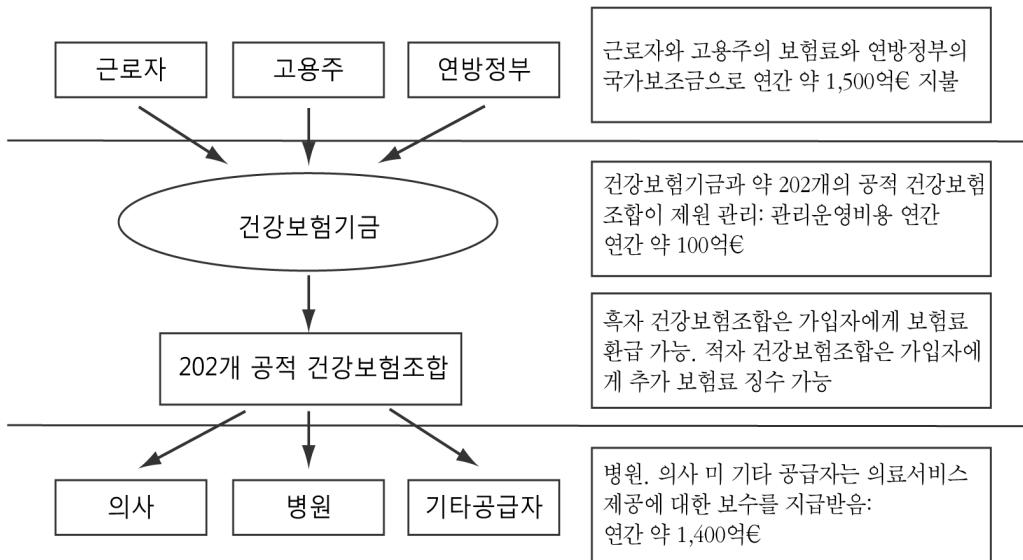
22)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보험계약의사에게 매 분기마다 10유로씩 지불하는 정액본인부담금

23) 독일의 사회보험은 전통적으로 가입자와 그의 고용주가 비용을 반분하는 자원조달원칙이 적용

거듭나기 위해 급여관리를 위해 노력(공적 건강보험의 역할이 보험료 부과·징수와 재정관리에서 급여관리로 전환)

-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조합 변경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는 추가보험료²⁴⁾ 납부라는 상황과 동시에 직면

〈그림 2-Ⅵ-2〉 독일 건강보험기금과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재원흐름 (2009년 기준)



자료: 이용갑, 「지난 20년간 독일 공적 건강보험 개혁과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2009.11

– 2011년 ‘공적건강보험기금법(GKV-Fing)’

- (목표) 공적건강보험의 재원조달 기반 강화, 보험조합 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현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지출안정화를 목표로 함
- (내용) 보험료율을 기존 14.9%에서 15.5%로 변경하였으며, 각 조합별 추가보험료 징수제한을 폐지하고, 재정지출 안정화를 위해 2011~2012년 모든 건강보험조합의 관리비용을 2010년도 수준으로 동결

24) 추가보험료에 대한 제한은 피보험자 소득의 1%이었으나 2011년 ‘공적건강보험기금 법(GKV-Fing)’으로 인해 동 항목 폐지

VII

캐나다 (FY2011~12: 2011.4~2012.3)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2011년 6월 발표)

□ 2011년 3월 예산안의 수치 중 2010-11년 지출항목 및 정부부채 등이 소폭 조정됨

- 2010-11년 정부부채는 5,531억캐나다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GDP 대비 34.0%에서 2015-16년에 29.7%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보임

〈표 2-Ⅶ-1〉 캐나다 재정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총세입	2,186	2,356	2,491	2,644	2,812	2,968	3,092
프로그램 지출	2,448	2,408	2,484	2,473	2,520	2,577	2,656
이자지출	294	309	330	365	386	394	394
총지출	2,742	2,717	2,814	2,838	2,907	2,971	3,050
재정수지	-556	-362	-323	-194	-94	-3	42
부채	5,191	5,531	5,854	6,048	6,142	6,145	6,103
총세입	14.3	14.5	14.6	14.7	14.9	15.1	15.0
프로그램 지출	16.0	14.8	14.5	13.8	13.4	13.1	12.9
이자지출	1.9	1.9	1.9	2.0	2.1	2.0	1.9
재정수지	-3.6	-2.2	-1.9	-1.1	-0.5	0.0	0.2
부채	34.0	34.0	34.3	33.7	32.6	31.2	29.7

자료: "Budget 2011," 캐나다재무부, 2011.6

□ 2011년 3월 예산안 대비 일부 수치가 소폭 조정되었으나 크게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없음

〈표 2-VII-2〉 세입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조세수입(Tax Revenues)							
개인소득세	1,039	1,133	1,199	1,281	1,365	1,449	1,515
법인세	304	290	325	331	355	374	393
기타소득세	53	50	54	59	64	68	73
총소득세(A)	1,396	1,473	1,578	1,671	1,784	1,891	1,981
소비세(Excise taxes/duties)							
재화 및 용역세	269	290	301	317	334	351	368
관세	35	36	38	41	42	45	48
기타소비세	101	109	110	109	109	108	108
총소비세(B)	406	434	448	467	485	504	525
총조세수입(C=A+B)	1,802	1,907	2,027	2,138	2,268	2,395	2,505
실업보험(D)	168	175	189	208	228	245	248
기타세입(E)	217	273	276	298	316	328	338
총세입(F=C+D+E)	2,186	2,356	2,491	2,644	2,812	2,968	3,092
개인소득세	6.8	7.0	7.0	7.1	7.2	7.4	7.4
법인세	2.0	1.8	1.9	1.8	1.9	1.9	1.9
재화 및 용역세	1.8	1.8	1.8	1.8	1.8	1.8	1.8
총조세수입	11.8	11.7	11.9	11.9	12.0	12.2	12.2
실업보험	1.1	1.1	1.1	1.2	1.2	1.2	1.2
기타세입	1.4	1.7	1.6	1.7	1.7	1.7	1.6
총세입	14.3	14.5	14.6	14.7	14.9	15.1	15.0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6

□ 2011-12년 주요 정부부문 이전 중 '기타' 항목의 변동은 캐나다-퀘벡주 통합판매세 (harmonized sales tax) 협정 타결을 반영한 수치임

〈표 2-Ⅶ-3〉 프로그램지출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GDP 대비 %)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persons)							
노후혜택(Elderly benefits)	347	359	380	401	423	445	467
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216	201	195	189	187	188	190
아동보조금(Children's benefits)	123	127	131	135	137	138	139
소계(A)	686	686	706	725	747	771	795
주요 정부부문 이전지출(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보건 및 사회보장프로그램 (Federal transfers in support of health and social programs)	357	372	387	407	427	447	470
재정협정(Fiscal Arrangements)	162	164	169	178	187	195	204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대체지출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27	-31	-31	-33	-35	-37	-39
캐나다 도시 및 커뮤니티 (Canada's cities and communities)	19	20	20	20	20	20	20
기타	59	5	38	3	2	2	2
소계(B)	570	530	582	575	601	627	656
직접프로그램비용(Direct program expenses)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	399	388	373	340	318	306	306
Capital amortization	43	45	47	50	52	54	56
기타발생비용 (Other operating expenses)	217	221	235	244	253	258	267
Operating expenses subject to freeze	534	547	541	539	549	562	576
소계(C)	1,192	1,191	1,196	1,173	1,172	1,180	1,205
총프로그램지출(A+B+C)	2,448	2,408	2,484	2,473	2,520	2,577	2,656
개인에 대한 주요 지출 (Major transfers to persons)	4.5	4.2	4.1	4.0	4.0	3.9	3.9
정부부문 간 주요지출 (Major transfers to other levels of government)	3.7	3.3	3.4	3.2	3.2	3.2	3.2
직접프로그램비용 (Direct program expenses)	7.8	7.3	7.0	6.5	6.2	6.0	5.9
총프로그램지출	16.0	14.8	14.5	13.8	13.4	13.1	12.9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6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캐나다정부 결산은 매년 가을(10월경)에 발표됨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경기부양책 중 인프라투자 종료 시점이 2011-12년으로 1년 연장되면서 올 6월에 발표한 예산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정수지를 소폭 조정함
 - 또한 캐나다-퀘벡주 통합판매세 적용에 따른 22억달러 지출 발생 및 공식 등록을 마친 정당들에게 분기별로 제공되는 당 활동 지급액을 2011-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5-16년까지 총 3천만캐나다달러를 절감할 계획

〈표 2-Ⅷ-4〉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캐나다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1.3 예산안 재정수지	-40.5	-29.6	-19.4	-9.5	-0.3	4.2
2011.3 예산안 이후 경제·재정 변화						
수입	0.0	0.0	0.0	0.0	0.0	0.0
지출	4.3	-0.5	0.0	0.0	0.0	0.0
소계	4.3	-0.5	0.0	0.0	0.0	0.0
2011.3 예산안 이후 발표된 신규 정책						
캐나다-퀘벡주 통합판매세		-2.2				
정당 지급액 축소 효과			0.01	0.01	0.02	0.03
소계	0.0	-2.2	0.0	0.0	0.0	0.0
2011.6 예산 재정수지	-36.2	-32.3	-19.4	-9.4	-0.3	4.2
전략 및 운용검토 예상 절약효과			1.0	2.0	4.0	4.0
총재정수지	-36.2	-32.3	-18.4	-7.4	3.7	8.2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6

- 지속가능한 개발법(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Act)에 따라 2010년 10월에 지속가능한 개발전략(Feder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SDS)이 수립됨
 - 캐나다 재무부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처, 수질관리, 자연보호 등의 의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캐나다 경제 및 사회 프로그램에 대하여 조망하고

정책을 수립,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목표는 다음 표에 정리

목표1 :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미래세대 삶의 질 개선

Objective	Target	Planned Activities/ Implementation Plan
재정의 지속가능성 장려	재정수지 개선, GDP 대비 정부 부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예산서에서 발표한 중기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경제성장을 모니터링하여 향후 경제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정책의 타당성 검토
장기간의 경제 및 재정 이슈와 전망을 모니터링	국내외적인 변화에 따른 장기적 경제 및 재정의 영향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재무부에서 실시
캐나다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조세시스템을 개편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분석 및 자문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 법인세 우위 유지, 국제조세 시스템 개선 등 개인소득세, 퇴직 후 저축, 가계지원, 자산활동, 교육, 기업 활동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타당성 자문

자료: "Supplementary document to the department's 2011-12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캐나다 재정위원회, 2011.6

목표2 : 사회기반 강화

Objective	Target	Planned Activities/ Implementation Plan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보건 및 사회 프로그램 지출 시스템 관리	보건이전지출(CHT)과 사회이전지출(CST) 재원을 적시에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12년에 CHT와 CST를 주정부에 적시에 이전하고 연방-주 정부 협정법(Federal-Provincial Arrangements Act)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함
지역 평 등 화 교 부 금 (Equalization)과 준주결손보전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 격차를 해소	지역평등화교부금과 준주결손보전금을 적시에 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12년에 지역평등화교부금과 준주결손보전금을 적시에 배분하고 연방-주 정부 협정법(Federal-Provincial Arrangements Act)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안함
퇴직 후 소득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2007~2009년에 검토된 캐나다연금계획에 대한 법 및 규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부는 인적자원 및 기술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kills Development), 캐나다세입실(Canada Revenue Agency)과 협의하여 연금계획 개정
	캐나다인들이 퇴직 후 효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방안을 주·준주 정부와 협의하여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출자공인연금제도(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s) 도입 등
	2010-12년 캐나다연금 계획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주·준주정부 재무부 장관들은 3년마다 연금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개정이 필요하지 결정해야 함

자료: "Supplementary document to the department's 2011-12 Report on Plans and Priorities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캐나다 재정위원회, 2011.6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2011.3 예산안 이후 업데이트)

- 2011년 4월 집계된 고용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점보다 11만명을 상회, 투자 및 수출호황으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은 3.9%, 명목 GDP는 8.7%로 증가
 - 하지만 일본 대지진으로 자동차산업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2분기 성장률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
- 경기부양책의 일부 종료시점이 늦어지면서 인프라 투자의 소요재원 중 약 13억캐나다 달러가 2011-12년으로 연장됨
 - 또한 2010-11년 종료로 예정되었던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인 1억 6천만캐나다달러는 향후 점진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보임

〈표 2-Ⅶ-5〉 경기부양책 집행실적 및 계획

(단위: 1억 캐나다달러)

	2009-10년 소요 비용	2010-11 경기부양책 총 가치	2011-12 인프라투자 기간연장	합계
캐나다 국민을 위한 세부담 경감	30.2	31.8	0	62.0
실업자 혜택	33.5	48.9	0	82.3
일자리창출 위한 기반시설구축	60.3	77.5	10.4	148.2
미래경제 구축	15.5	19.6	2.5	37.6
산업·커뮤니티 지원	109.8	22.1	0.	131.9
총연방정부 경기부양지출	249.3	199.8	12.9	462.0
주·준주정부 경기부양	70.6	55.1	14.5	140.3
총경기부양지출	319.9	254.9	27.5	602.3

자료: "Budget 2011", 캐나다재무부, 2011.6

〈표 2-Ⅶ-6〉 인프라투자 자원 소요기간 연장

(단위: 억캐나다달러)

	기존 2개년 경기부양책	경기부양책 수정	2011-12년 추정비용
인프라건설부양펀드 (Infrastructure Stimulus Fund)	40.0	32.0	7.96
지식 인프라 프로그램 (Knowledge Infrastructure Program)	20.0	17.4	2.51
캐나다 지역단위 건설펀드(Building Canada Fund Communities Component Top-up)	5.0	3.37	1.63
후생인프라캐나다 (Recreational Infrastructure Canada)	5.0	4.17	0.8
합계	70.0	56.98	12.91

자료: "Budget 2011," 캐나다 재무부, 2011.6

3. 캐나다의 건강보험

가. 건강보험제도 현황

1) 연혁

□ 캐나다 헌법(1867)에 의료시설 규제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을 법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별로 오늘날까지 보건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 제도 및 법을 신설 또는 폐지하여 왔으며 그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연도	활동	목적
1966	캐나다원조계획(Canada Assistance Plan: CAP) 신설	보건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
1977	연방-주정부 재정협정(Federal - Provincial Fiscal Arrangements) 및 신설사업 지원법(Established Programs Financing Act: EPF) 신설	재원을 블록 단위로 이전함으로써 각 주정부가 이전 받은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연방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함
1984	캐나다보건법(Canada Health Act) 제정	연방정부 건강보험서비스 및 각 주정부 법에서 규정하는 건강보험서비스 항목에 대한 기준 및 요건 설치
1995	보건사회이전지출(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이 신설되면서 EPF와 CAP이 통합됨	예산이 부족해지자, 두 제도를 통합하여 재원을 블록 형태로 이전함
1996	CHST 첫 시행	보건, 중고등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 효율화
2003	보건 분야 개선을 위한 합의(Accord on Health Care Renewal)가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1차 진료 개혁, 정보통신 개선, 의료장비 보급, 정부간 투명성 등이 주요 개선 사항이었음 ■ 2004년 보건사회이전지출(CHST)이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과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로 분리
2004	10년 계획(A 10-Year Plan to Strengthen Health Care)을 마련	각 정부는 진료 대기시간 효율화, 보건 분야 인적 관리, 원주민 보건시스템, 재가보호서비스, 의료장비 등에 대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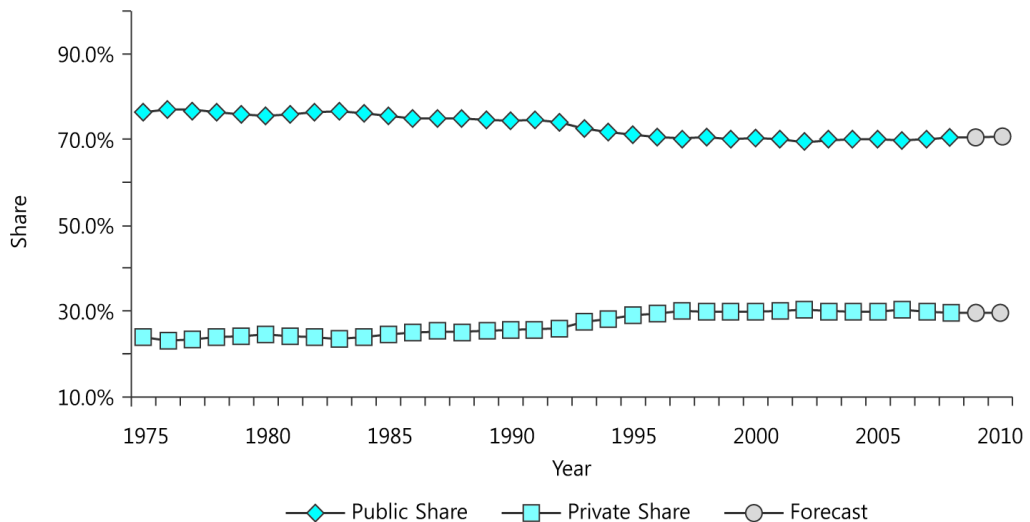
2) 캐나다 보건시스템의 특징

- 캐나다 헌법은 보건 분야에 대한 연방·주·준주정부의 역할을 분류하고 있으며 주·준주정부에게 대부분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상당부분의 공공부문 보건 분야 재원은 개인·법인세, 판매세, 지불 급여세 등의 조세수입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부 주정부에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

-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관할 내에서 주·준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재원을 이전받고 있으며, 각 정부는 캐나다보건법에 의거하여 캐나다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 캐나다보건법 체계 아래 각 주정부는 독립적인 건강보험시스템(Medicare)을 도입하여 시행, 각 주별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항목은 상이함

- 보건 분야 재원은 공공 및 민간부문을 통하여 충당함

[그림 2-Ⅶ-1] 1975-2008년 공공 및 민간부문 보건 분야 총지출 비중 추이



자료: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0.10

3) 수입·지출 체계

□ (공공부문) 재원 조달은 주·준주정부의 이전 및 자체 수입, 연방정부 직접지출,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이루어짐

- 연방정부에서 이전(federal transfer)되는 재원은 크게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 보건개혁이전지출(Health Reform Transfer),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 준주결손보전금(Territorial Formula Financing)로 구성됨

〈표 2-Ⅶ-7〉 2008년 재원별 캐나다 공공부문 보건 분야 총지출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

	금액	비중
주·준주정부	111,758.0	92.3
연방정부 직접비용	6,050.2	5.0
사회보장기금	2,349.8	2.0
지방정부	894.1	0.7
합계	121,052.1	100.0

자료: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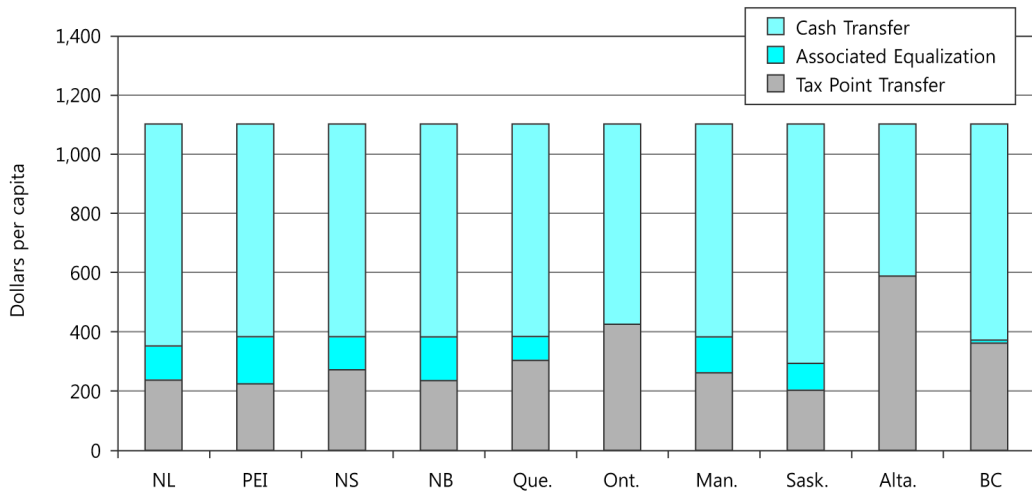
-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배분하는 보건이전지출(CHT)²⁵⁾ 재원은 현금이전(cash transfer)과 조세수입이전(tax point transfer)으로 나뉘며 이 외에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까지 합한 금액이 총CHT임

- 모든 주의 인당 CHT 지원금은 동일함
- 2008-09년 CHT 지원금은 1인당 1,100캐나다달러로 모든 주에서 동일하며, 주별로 거둬들이는 조세수입 규모가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금이전 규모 및 지역평등화교부금 규모를 책정

25) CHT는 현금이전(cash transfer)과 조세수입이전(tax point transfer)으로 구성되는데 조세수입이전이란 상호합의하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율을 인하할 경우 주정부가 동일한 요율만큼 세율을 인상하는 것임. 또한 총CHT에는 지역평등화교부금(equalization)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지역평등화교부금이란 주정부 간의 재정 격차를 없애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주정부에 나누어주는 지원금을 뜻함. 주정부는(FY2011-12 총 6개 주에서 지역평등화교부금을 수령함) 각각 필요한 용도에 맞게 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주에 따라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도 함
 - 온타리오주는 연소득 2만캐나다달러 이상인 개인에게 연간 300~900달러 범위의 건강보험료 부과, 고용인에게 징수하는 고용자보건세(Employer Health Tax)는 고용자 급여의 0.98~1.95%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와 퀘벡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건강보험료 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알베르타주는 기존의 건강보험료 징수 시스템을 2009년에 폐지

[그림 2-Ⅶ-2] 각 주별 인당 CHT 자원 내역 비중



자료 : "The Canada Health Transfer," Library of Parliament, 2009.1

□ (민간부문) 민간 보건지출은 가계지출, 영리 또는 비영리보험지출, 비소비(non-consumption) 지출²⁶⁾로 구성됨

- 세 항목에 대한 2008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 가계(49.1%), 민간보험(41.2%), 비소비 지출(9.7%)

26) 비소비 지출은 병원의 환자 이외 수입, 개인 소유 의원 자본지출, 보건 분야 연구 등을 포함

나. 건강보험제도 재정

1) 재정추이 · 현황

- 지난 10년간 보건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캐나다 전체 정부 지출 대비 보건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기준 30.6%에 이르렀음
- 2008년 캐나다 보건부문 총지출은 1,718억캐나다달러(GDP 대비 10.7%),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821억달러(GDP 대비 11.9%)와 1,916억달러(GDP 대비 11.7%)로 연간 6.0%와 5.2% 증가할 것으로 보임
 - 90년대 중반 정부의 지출제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증가폭은 둔화되었으나 97년부터 연방 및 주·준주정부의 적극적인 보건 투자로 다시 상승세가 두드러짐

〈표 2-Ⅶ-8〉 캐나다 전체 정부 지출 대비 보건지출 비중 추이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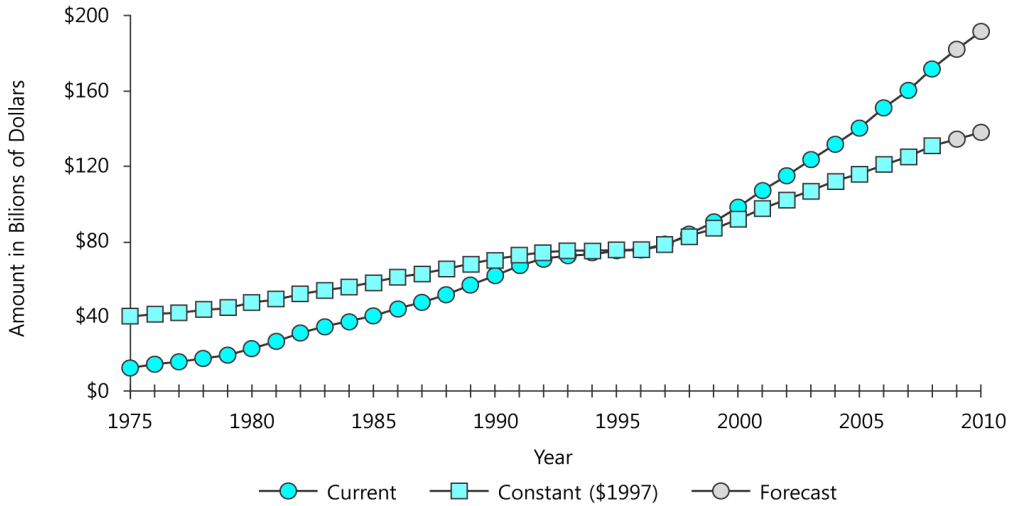
	2005	2006	2007	2008	2009
보건지출 (현재 달러)	140,542.0	150,801.6	160,322.8	171,776.8	182,100.1
GDP 대비 %	10.2	10.4	10.5	10.7	11.9
전체 정부지출	487,365	516,669	545,533	580,922	594,594
전체 정부지출 대비 보건지출(%)	28.8	29.2	29.4	29.6	30.6

자료: 1)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0.10,

2) 캐나다통계청 통합정부 수입·지출 통계 수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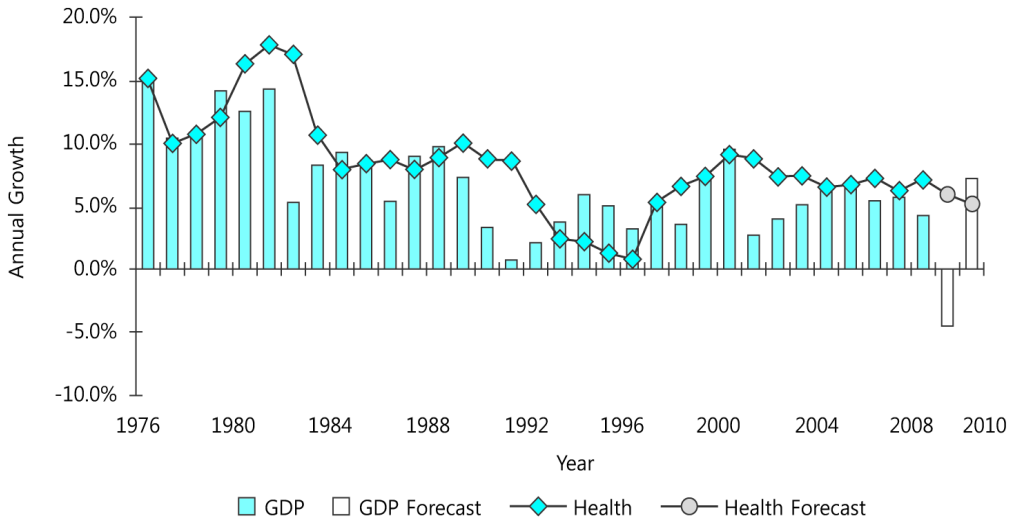
- 98년부터 10년간 보건 분야 지출은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8년 GDP 대비 보건지출은 10.7%이며 2009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보건지출은 GDP 대비 11.9%까지 상승할 전망
- 지난 10년간 보건부문 총지출은 연평균 90억캐나다달러씩 상승한 것으로 추산됨

[그림 2-Ⅶ-3] 1975~2010년 캐나다 보건부문 총지출 추이



자료: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0.10

[그림 2-Ⅶ-4] 1976~2010년 캐나다 보건부문 총지출 및 명목GDP성장률 추이



자료: National Health Expenditure Database,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2010.10

□ 2010년 주·준주정부 보건지출은 1,250억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캐나다 전체 보건지출의 약 65%에 해당

- 2009년 주·준주정부 총지출 중 보건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5.9%, 프로그램지출의 약 39.2%
- 2008년 공공부문의 보건 분야 총지출은 1,211억캐나다달러,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1,286억달러와 1,351억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부문 총지출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535억달러, 566억달러로 예상
 - 2010년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지출은 보건부문 총지출의 약 70.5%가 될 것으로 보임

2) 재정의 지속가능성

- 캐나다 보건 분야 총지출은 1960년 GDP 대비 5.5%에서 2009년 12%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 10년 간 주정부 공공부문 인당 보건지출 비율은 연평균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⁷⁾
 - (수요측면 결정요인) 최근 몇 년간 개인소득의 증가, 캐나다인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질병 유형의 변화 등이 보건지출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작용
 - 캐나다의 고령화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2050년 27%로 두 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공급측면 결정요인) 현재 캐나다인 천명당 의사 수는 2.3명으로 OECD국가 중 여섯 번째로 낮는데다가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전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 또한 제약관련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OECD 연구에 따르면 전체 보건지출 중 공공부문(public health) 및 장기치료(long-term care) 지출은 2005년 GDP 대비 7.3%에서 2050년 13.5%로 두 배가량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
- OECD는 캐나다 보건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함
 - (지출억제) 필요한 경우 캐나다 보건법(Canada Health Act)을 개정하여 주요 의료서

27) 동 기간 주정부 자체수입은 연평균 6%씩 증가

- 비스에 대하여 무상지원 대신 환자가 공동부담을 하거나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
 - 아울러, 주정부는 예산을 각 지역보건당국(Regional Health Authorities)에 이양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
 - 각 주에 이전되는 연방 이전지출 중 현금이전을 줄이고 세금이전(tax points)을 늘리는 방안
-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개인의료보험 시스템 개선, 고용주 개인의료보험 세금공제 혜택 폐지, 개인의료보험 누진세 적용 등을 고려할 것

다. 건강보험제도 주요 개혁

1) 보건 개혁 합의(2003 First Ministers Health Accord)

- 보건분야 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간 총 348억캐나다달러 투입
 - CHST를 CHT와 CST로 분리하고 연방정부의 보건부문 지원 규모를 늘림
 - 보건개혁기금(Health Reform Fund)을 조성하여 1차진료, 재가보호서비스, 과도한 약물 비용 부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며 2004-05년부터 5년간 총 160억캐나다달러 투입
 - 각 주정부에 1인당 동일한 지원금이 제공되도록 함
 - 2005-06년부터 HRF는 CHT와 통합되었음

〈표 2-Ⅶ-9〉 5년간의 HRF 재원의 배분

(단위: 억캐나다달러)

연도	이전된 자원(1억 캐나다달러)
2004-05	10
2005-06	15
2006-07	35
2007-08	45
2008-09	55

- 보건이전지출(Canada Health Transfer)은 보건부문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시키

고 지출 증가가 예측 가능하도록 도입

- CHST가 분리되면서 이 제도가 기존에 필요로 하는 25억달러를 즉각 투입

- 15억달러 규모의 진단/의료장비 기금 조성
- 환자 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기 위해 6억달러 투입
- 연구 중심 의료기관에 5억달러 지원 등

2) 보건 분야 강화 10년 계획(A 10-Year Plan to Strengthen Health Care, 2004)

□ 2006-07년부터 2013-14년까지 총 10년 간 보건의전지출을 매년 일정 규모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

- 각 정부는 진료 대기시간 효율화, 보건 분야 인적 관리, 원주민 보건시스템, 재가보호 서비스, 의료장비 등에 대한 개혁을 담은 10년 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
- 2006-07년부터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3-14년까지 CHT 이전을 매년 6%씩 증가시킬 것을 명시

VIII

호주 (FY2011-12: 2011.7~2012.6)

1. 예산 및 결산

가. 예산

- 연방의회, 2011-12 예산안 승인 (2011.6.24)
 - 호주 연방의회는 지난 5월 발표된 2011-12 예산안을 승인
 - 금년도 예산안은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FY2012-13에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함
 - 호주 정부는 지출을 제한하여 220억호주달러의 예산 절감을 수행
 - 지난 5년간 연간 평균 3.7%를 기록하던 예산지출 증가율을 1%로 제한
 - 또한 동 예산안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30억호주달러 투자, 국가적인 정신보건개혁 (national mental health reform) 수행을 위해 22억호주달러 지출, 십대를 부양하는 가구지원을 위한 가족세제혜택(Family Tax Benefit) 폭 확대, 노동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함

- FY 2011-12 예산안은 2011년 5월 10일에 발표
 - 동 예산안 내용은 『재정동향』 제2권 제2호 참조

나. 추경

- 해당사항 없음

다. 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정책적 이슈

가. 재정건전화

- 탄소세 도입을 위한 최종 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 동 보고서는 호주의 2020년 탄소배출을 2000년 대비 5%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현재 10~16% 수준인 선진국들과 대등하도록 단계적인 증가를 권고
 - 또한 탄소가격 시초가를 정액제로 톤당 20~30호주달러로 설정한 후 매년 4%씩 증가시킬 것과 국내 탄소배출 감축수준을 결정할 독립위원회 설립을 제안
 - 동 보고서는 톤당 탄소세를 26호주달러로 책정할 경우 총수입은 115억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탄소세 수입 중 55% 수준인 63억호주달러를 가계에 보상금으로, 35%인 39억호주달러는 기업지원 보상금으로 지출되며, 나머지 10% 정도는 기술혁신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

[그림 2-VIII-1] 탄소세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

	Fixed	Floating	2021-22	Total
Total Permit Revenue^b	100%	100%	100%	100%
Household assistance	55%	60%	60-65%	60%
<i>Tax reform</i>	40%	45%	50%	45%
<i>Benefits payments^c</i>	15%	15%	10-15%	15%
<i>Energy efficiency</i>	1%	0%	0%	<1%
Business assistance	35%	25%	20%	25-30%
<i>Industry assistance^d</i>	30%	25%	20%	26%
<i>Electricity transition</i>	3%	0%	0%	<1%
<i>Structural adjustment</i>	2%	0%	0%	<1%
Innovation^e	10%	15-20%	20%	15%
Carbon Farming^f	5-10%	10-15%	15%	10%
Gross Expenditure	105%	110-15%	115%	110%
<i>Less market offsets and Existing innovation expenditure</i>	5 -10%	10-15%	15%	10%
Net Budget Impact	0%	0%	0%	0%

Note: This is Table 6.1 in *The Garnaut Review 2011: Australia in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p.87.

^a Fuel reform and aid monies are not drawn from permit revenue and are therefore not shown.

^b Includes the increase in revenues for the first three years from auctioning of permits for use at later dates. The sum of percentages may not add to 100% due to rounding.

^c Half the welfare payments under the CPRS package.

^d Proportion of assistance paid to EITEs assumed to fall by 1.5 percentage points each year after year 3.

^e This percentage includes existing innovation funding as outlined in section 3.2.

^f This percentage includes Kyoto Protocol offsets sold to liable entities (which do not represent a cost to the Government) as outlined in section 3.3.

자료: *Garnaut Climate Change Review Update 2011*.

나.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

□ 호주정부의 “전 호주 국민을 위한 건실한 경제”의 금년도 예산안 기조 아래 호주 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정책을 7월 1일부터 시행 시작 (2011.7.1)

○ 동 정책은 강건한 호주 경제의 혜택 사각지대 해소와 호주 가계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연금수령자의 근로보너스(Pensioners Work Bonus²⁸⁾)

28)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로 하여금 노동 인구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14일치 근로 소득 중 최대 250호주달러가 소득 심사에
서 제외되며 이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외 소득분에 추가되는 것임
- 시즌업무(seasonal work)에 종사하는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미사용한
250호주달러 소득심사 면제분을 6,500호주달러까지 누적 가능
- 교육세 환급(Education Tax Refund) 확대
 - 교육세의 50%를 환급해주는 교육세 환급제도가 2011년 7월 1일부터 교복지출
비용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²⁹⁾됨에 따라 70만 호주 가정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 저소득층 세액공제(Low Income Tax Offset) 확대
 - FY 2011-12 예산안에 수록된 내용으로 『재정동향』 제2권 2호 <1. 세계개편>
참조
- 보육비 환급(Child Care Rebate) 변화
 - 보육원에 다니거나 학교시간 외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가
정 대상 공인된 보육원에 지불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환급해주며, 이 환급금
은 격주 또는 매주마다 자녀의 보육원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해당 가정 은행계
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음³⁰⁾
- 미래를 위한 보건서비스
 - 호주정부는 MBS³¹⁾ 리베이트(Medicare Benefits Schedule rebate)에 앞으로 4년
간 3억 5,220만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인데 리베이트 대상자는 전자자문
(e-consult)을 제공하거나 이와 같은 서비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이 정책으로
인해 2014-15년까지 약 70만건에 달하는 전자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모기지해지관리비(Mortgage Exit Fees) 금지
 - 모기지해지관리비 시행으로 호주 가계는 좀 더 향상된 질의 금융거래가 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

29) 기존에는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용, 컴퓨터 관련용품, 컴퓨터 수리비용, 인터넷비, 교육용 소프트
트웨어 구입비, 교과서, 문구용품 등 학습에 필요한 구입비만을 포함

30) 기존에는 분기별 또는 1년에 한번만 지급되었음

31) Medicare Benefits Schedule은 호주정부가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 응급실의 근무시간외 케어(after-hours care) 개선을 위한 지원
 - 호주정부는 4,990만달러를 2010-11 2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였고, 계획상으로는 2011년 7월 1일 종료되는 동 정책을 2013년 7월 1일까지 연장하여 응급실의 일반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
- 가족세제혜택 A (Family Tax Benefit Part A)³²⁾ 선지급
 - 2011년 7월 1일부터 동 세제혜택을 받는 가정은 예기치 못한 지출(예)가족소유 차량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좀 더 융통성 있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데, 동 세제혜택을 선지급 받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 선지급금은 최대 FTB A 혜택의 7.5%로 제한(최대 1,000호주달러)
- 수해복구 지역 재건
 - <『재정동향』 제2권 1호 1. 세제개편 및 3. 정책적 이슈>를 참조
-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지원 체계
 - 호주정부는 앞으로 5년간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1억 4,650만호주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나이가 7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될 예정
 - 장애아동 부양 가정당 12,000호주달러를 지원하며, 특수지원서비스 체계와 인접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는 단 한번의 2,000호주달러 세제혜택이 주어짐
 - 또한, 자폐증 아동을 위한 조기 특수교육에 2,870만호주달러가 2년 동안 Helping Children with Autism을 통해 지원됨
 - 13세 이상 15세 이하 장애아동의 진단 및 치료서비스는 호주 메디케어(Medicare Australia)를 통해 지원

32) 가족세제혜택 A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족의 연소득 및 나이, 가족 내 부양 자녀수에 따라 결정됨

3. 호주의 건강보험

가. 건강보험 현황

1) 제도의 연혁

□ 호주의 건강보험제도는 1888년 도입되었지만, 현재 공공 건강보험인 Medicare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4년임

〈표 2-Ⅷ-1〉 호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연도	제도내용
1888년	'산업재해 및 건강 보험 제도' 도입
1926년	'화이트칼라 근로자 보험법' 제정
1927년	'블루칼라 근로자 보험법' 제정
1928년	'농업 노동자 보험법' 제정
1953년	'국가보건법(National Health Act)' 통과
1967년	'농민 건강보험' 및 '공무원 건강보험' 도입
1973년	'건강보험법(Health Insurance Act)' 및 '건강보험위원회법(Health Insurance Commission Act)' 제정
1975년	호주 최초의 공공 건강보험인 'Medibank' ³³⁾ 도입
197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디뱅크 민간법(Medibank Private Bill)'이 10월 1일 통과함에 따라 호주 정부가 소유한 민간 건강보험기금 조성 • 1976년 10월 메디뱅크세(2.5%) 도입
1981년	Fraser 정부에 의해 'Medibank' 폐지
1984년	호주의 공공 건강보험인 'Medicare' 도입
1999년	민간 건강보험 환급제도(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 도입
1999-2000년	향상된 1차의료(The Enhanced Primary Care: EPC) MBS 도입
200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치료에 해당하는 MBS 도입
2005년	만성질환관리(Chronic Disease Management)도입
2006년	MBS가 정신과치료까지 확대
2008년	예방보건을 위해 NPAPH 발표

자료: Primary Health Care Reform in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2009
<http://www.medicareaustralia.gov.au/>

33) 19975년 7월 1일 시작된 공공 건강보험으로 Gough Whitlam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Fraser 정부가 들어서면서 1981년 폐지

2) 부과체계

- 호주는 1974년까지 민간기금에 의한 임의 건강보험에 의존하다가, 1984년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가 도입되면서, 공공 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이 공존
 -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는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공공병원(public hospital) 무상치료를 근간으로 하며, 메디케어세(Medicare Levy)라는 세금으로 운영됨
 - 메디케어세(Medicare Levy)는 과세대상 소득의 1.5%를 부과하는데,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공제되며, 고소득층 중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한해서는 소득의 1.0%를 추가적으로 부과
 - FY2010-11, 과세소득이 22,163호주달러 이하일 경우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과세소득이 18,839호주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메디케어세가 면제됨
 - FY2010-11 고소득층 메디케어세 추가부과대상자: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소득이 77,000호주달러를 초과하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 혹은 한명의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의 소득이 154,000호주달러를 초과할 경우
 - 메디케어(Medicare)와 더불어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민간건강보험이 존재
 - 민간건강보험 가입혜택은 환자에게 병원치료에 있어 의사나 전문의 선택권이 주어지며, 진료대기시간이 공공 건강보험에 비해 짧음
 - 2010년 3월 기준 약 44.5%에 해당하는 호주인이 민간보험에 가입
- 호주 공공 건강보험 메디케어(Medicare) 수혜자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로 호주 또는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한함
 - 또한 호주와 '상호보건의료협약(Reciprocal Health Care Agreements)'을 체결한 국가의 방문자는 제한적인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호주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로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를 채택하고 있으며, 메디케어는 별도의 수가제인 메디케어 수익명세서(Medicare Benefits Schedule)

에 기초하여 지불

- (입원치료) 메디케어(Medicare)는 입원치료에 대해 메디케어 권장진료비(MBS fee³⁴)의 75%를 지불하며, 환자가 민간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나머지 25%는 민간보험에 의해 지불됨
 - 의사는 MBS 권장진찰료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MBS 권장진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자는 차액을 지불해야 함
- (외래진료) 일반의에 의한 진료는 메디케어가 MBS 권장진료비의 100%를 지불하나, 전문의에 의한 진료일 경우에는 85%만 지불
 - 전문의는 bulk-bill³⁵)을 선택할 수 있음
- 공공병원(public hospital) 혹은 민간병원(private hospital)에서 진료를 받는 민간환자³⁶(private patients)의 경우, 메디케어가 MBS 권장진료비의 75%를 지원

□ 진료비 청구방법은 Bulk-Billing과 Patient Claim 두 가지가 있음

- (Bulk-Billing) 의료서비스 공급자입장의 청구방법으로 전문의는 메디케어(Medicare)로부터 환급금(Benefits)만 받고 환자에게는 무상인 제도
- (Patient Claim) 의료서비스 수요자입장의 청구방법으로 환자는 세 가지 경우로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음
 - 진료 당일, 환자는 모든 진료비와 치료비를 의사에게 내고 후에 메디케어에 환급금(Benefits)를 청구
 - 진료 당일, 환자는 모든 진료비와 치료비를 의사에게 내고, 의사는 메디케어에 환급금(Benefits)를 청구
 - 진료 당일, 환자는 진료비에서 환급금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불하고 환자가 메디케어 환급금(Medicare Benefits)을 청구하면 메디케어에서 수표를 발급하여 이 수표를 의사에게 전달

34) 일종의 진료비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반의와 전문의, 담당과, 진료시간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35) 전문의는 메디케어(Medicare)로부터 환급금(Benefits)만 받고 환자에게는 무상인 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의는 예약비용 및 행정비용을 추가적으로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36)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선택에 의해 민간환자로서 진료를 받거나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3) 관련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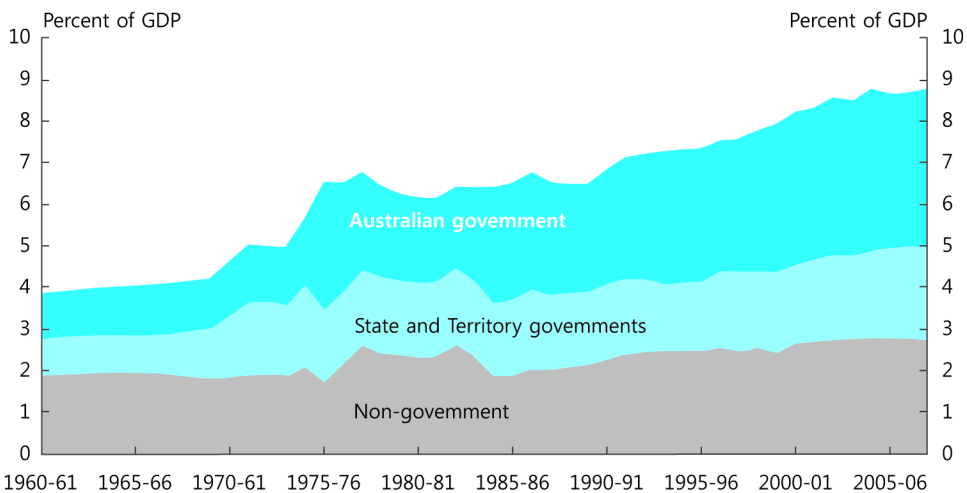
- 메디케어 호주(Medicare Australia)에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건강보험 위원회(Health Insurance Commission)이 사업을 운영함

나. 건강보험 재정

1) 재정추이 및 현황

- 지난 몇 십년간 호주의 총보건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중 호주 중앙정부가 재원조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FY2008-09의 총보건지출은 1,127억 9,900만호주달러이며 GDP 대비 9.0%에 해당
 - 이는 FY2007-08과 비교하였을 때 0.2%p 증가한 수치이며, FY1998-99에 비해 1.2%p 증가
 - FY2007-08의 총 보건지출 중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재원은 GDP 대비 3.8%에 해당
 - 이는 FY1960-61에 GDP 대비 1%에 해당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

[그림 2-Ⅷ-2] 호주의 총보건지출 추이



자료: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spending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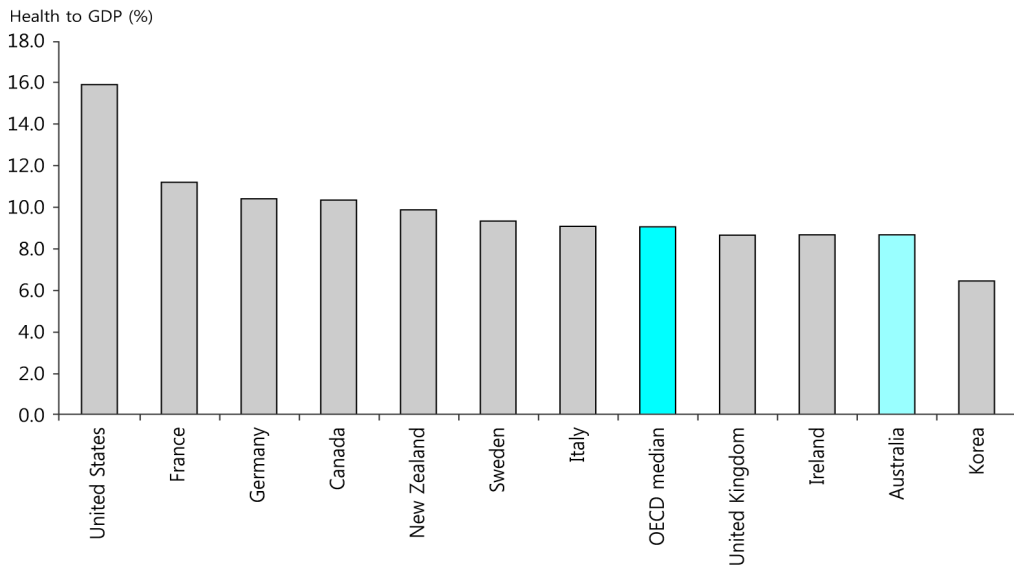
〈표 2-Ⅷ-2〉 호주의 총 보건지출 추이

(단위: 백만호주달러, %)

Year	Total health expenditure	GDP	Ratio of health expenditure to GDP
	(\$ million)		(%)
1998-99	48,428	622,695	7.8
1999-00	52,570	663,867	7.9
2000-01	58,269	708,889	8.2
2001-02	63,099	759,204	8.3
2002-03	68,798	804,361	8.6
2003-04	73,509	864,955	8.5
2004-05	81,061	925,864	8.8
2005-06	86,685	1,000,787	8.7
2006-07	94,938	1,091,327	8.7
2007-08	103,563	1,181,750	8.8
2008-09	112,799	1,256,118	9.0

자료: Health Expenditure Australia 2008-09, 2010.12

[그림 2-Ⅷ-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보건지출(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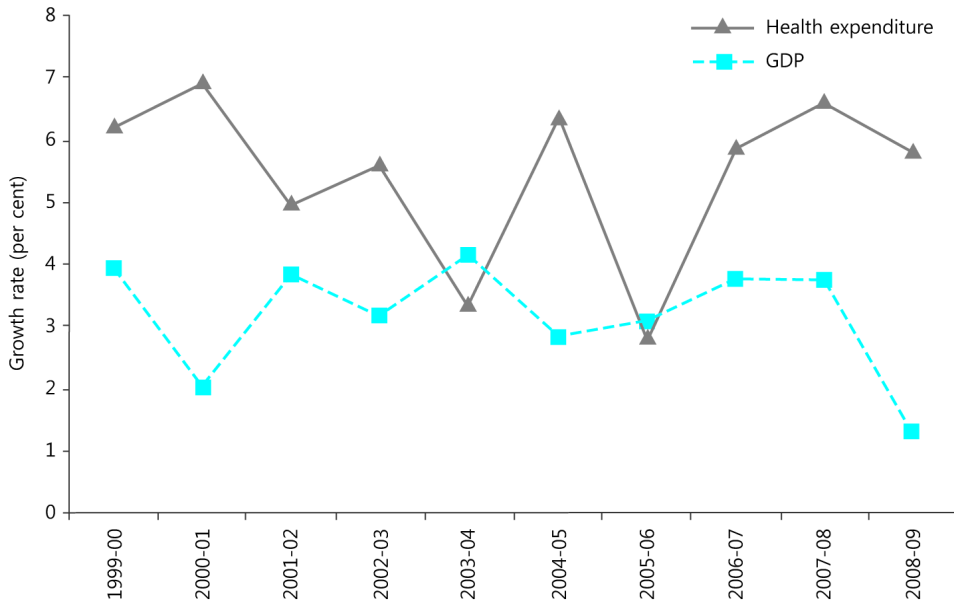


자료: Health Expenditure Australia 2008-09, 2010.12

□ 호주의 2008년 기준, 보건지출은 OECD 평균인 9.1%보다 낮은 GDP 대비 8.7%로 나타남

○ 호주의 보건지출이 1998년 GDP 대비 7.8%(OECD 평균과 동일), 2003년 GDP 대비 8.5%(OECD 평균은 8.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건지출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의미

[그림 2-VIII-4] 호주의 GDP 성장률과 보건지출증가율



자료: Health Expenditure Australia 2008-09, 2010.12

□ 호주는 FY2007-08과 FY2008-09 사이에 GDP 성장률이 약 3% 감소하였고, 보건지출은 1% 감소

□ 호주정부는 메디케어세 및 기타수입을 통해 공공건강보험을 운영

○ 지난 십년 동안 호주의 메디케어세 수입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총수입 대비 메디케어세 비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FY2007-08 호주의 메디케어세는 80억 4,900만호주달러이며 이는 총세수의 2.9%에 해당

〈표 2-Ⅷ-3〉 호주정부의 메디케어 및 총 세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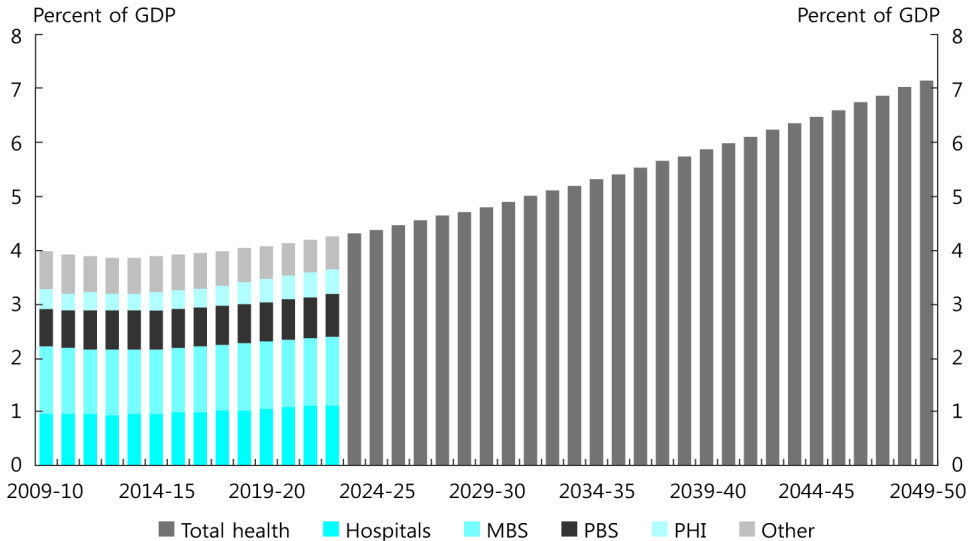
구분	1984-85	1992-93	1997-98	2002-03	2006-07	2007-08
메디케어세	1,223	2,415	3,760	5,000	7,235	8,049
총세수입	52,970	88,760	130,984	192,131	257,392	278,376
총수입 대비 메디케어세	2.3	2.7	2.9	2.6	2.8	2.9

자료: Commonwealth of Australia (various years), Budget Paper No.1, Canberra:AG, AIHW Health Expenditure Database

2) 호주의 보건지출 전망

- 2010.1월 발표한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에 따르면, 호주 중앙정부의 보건관련 지출은 FY2009-10 4.0%에서 FY2049-50에는 7.1%까지 증가할 전망
 - 이 중 민간건강보험 리베이트(Private health insurance rebate)가 차지하는 비율은 FY2012-13에 1인당 192호주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FY2022-23에는 1인당 319호주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병원지출(Hospital expenditure)은 FY2012-13에 1인당 594호주달러에서 FY2022-23에는 1인당 803호주달러가 될 전망

[그림 2-Ⅷ-5] 호주 중앙정부의 보건지출 전망



자료: 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다. 건강보험 개혁

1) 호주 건강보험제도상의 문제점

- 호주의 공공건강보험제도는 예방 차원의 보건의 아니라 치료 차원의 보건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복잡한 제도형식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짐
 - 호주는 예방 차원의 보건시스템 확립을 위해 2008년 11월 29일 예방건강을 위한 국가 파트너십협정(The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Preventive Health: NPAPH)을 발표
 - 자세한 내용은 <다. 건강보험 개혁, (2) 개혁목표 및 결과> 부분 참조
 - 또한, 자국민들이 건강보험 제도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보건(e-health) 구축
 - 호주정부는 FY2010-11에 4억 6,670만달러를 투자하여 전자의료기록 시스템 (personally controlled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을 설립함에 따라 국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보건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 개혁목표 및 결과

- 1984년 호주의 공공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도입
 - 메디케어(Medicare)는 Medibank 폐지 이후 최초로 도입된 공공 건강보험
 - (목표) 메디케어 도입목표는 모든 호주인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고 높은 질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결과) 메디케어 재원의 대부분은 조세로 조달되며,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병원서비스를 환자들이 무료로 제공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메디케어(Medicare)에 의한 치과치료 도입(2004)
 - 2004년 3월 24억호주달러 규모의 'Medicare Plus Package' 예산에 4억호주달러를 추가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치과치료까지 메디케어가 확대
 - (목표) 경제적인 이유로 심각한 치아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도입
 - (결과) 저소득층에 제한적이지만 치과치료를 비롯하여 물리치료까지 그 범위가 확대

- 메디케어 적용이 정신과치료까지 확대(2006)
 - 메디케어 환급시스템이 총 5억 3,800만호주달러를 들여 확장되면서 정신과 환자들에게까지 환급이 확대됨

- 예방보건(Preventive Health)을 위한 국가파트너십협정(The National Partnership Agreement on Preventive Health: NPAPH) 발표 (2008)
 - 호주정부협의회(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 COAG)는 2008년 11월 29일 동 협정 발표를 통해 FY2009-10을 시작으로 6년에 걸쳐 8억 7,210만호주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목표) 호주인들의 일상에 있어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공공 건강보험을 통한 혜택이 치료 중심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중앙,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임

- (내용) 동 협정에서 11가지 구체화된 계획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 지역중심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 지원 (FY2009-10~2012-13에 걸쳐 7천 180만호주달러 지원)
 -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룹을 위한 신체활동 및 건강한 식생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
 - 16세 이하 어린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조성(FY2011-12~2014-15 4년에 걸쳐 3억 2,550만호주달러 지원)
 - 16세 이하 어린이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음식 섭취를 고르게 하도록 권장하는 프로그램 마련
 - 직장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FY2009-10~2014-15에 걸쳐 2억 9,460만호주달러 지원)
 - 직장인의 비만 방지, 신체활동 증진, 흡연 및 알코올 섭취 수준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 조성에 2억 8,940만호주달러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개발에 지원
 - 이밖에도 산업파트너십(Industry Partnership)을 위해 1천만호주달러가 FY 2009-10~2012-13에 걸쳐 지원되며, 사회지향적 마케팅(Social Marketing)을 위해 FY 2009-10~2012-13에 걸쳐 1억 2천만호주달러, 합법적인 인프라 확립을 위해 FY2009-10~2012-13에 걸쳐 5,920만호주달러를 지원

제 3 부 주요국의 재정통계

I. 미 국 (2011년 5월 기준)

II. 일 본 (2011년 5월 기준)

III. 영 국 (2011년 6월 기준)

IV. 프랑스 (2011년 5월 기준)

V. 독 일 (2011년 6월 기준)

VI. 캐나다 (2011년 5월 기준)

VII. 호 주 (2011년 5월 기준)

I

미국 (2011년 5월 기준, FY2011: 2010.10~2011.9)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의 재정적자는 약 9,27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억 달러(0.9%) 감소

○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재정수입은 약 1,384억달러(10.3%), 총재정지출은 약 1,302억달러(5.7%) 증가하였는데 재정수입 증가액이 재정지출 증가액을 초과하여 2011년도 재정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

〈표 3-I-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2 (추정) ²⁾
	5월	누계 ('08.10~ '09.5)	5월	누계 ('09.10~ '10.5)	5월	누계 ('10.10~ '11.5)	변동분	%	
총 재정수입	117,241	1,373,307	146,795	1,345,950	174,911	1,484,350	138,400	10.3	2,627,449
예산(on-Budget)	64,098	930,463	94,338	919,525	130,529	1,101,363	181,838	19.8	1,968,719
예산 외 (off-Budget) ³⁾	53,143	442,843	52,457	426,424	44,382	382,987	-43,437	-10.2	658,730
총 재정지출	306,892	2,365,252	282,722	2,281,556	232,551	2,411,794	130,238	5.7	3,728,686
예산	250,801	2,011,918	225,281	1,903,179	181,416	2,057,063	153,884	8.1	3,145,904
예산 외	56,090	353,334	57,441	378,376	51,136	354,731	-23,645	-6.2	582,782
재정수지	-189,651	-991,945	-135,927	-935,606	-57,641	-927,444	8,162	-0.9	-1,101,237
예산	-186,703	-1,081,455	-130,943	-983,654	-50,887	-955,700	27,954	-2.8	-1,177,185
예산 외	-2,947	89,510	-4,984	48,048	-6,754	28,256	-19,792	-41.2	75,948
총 자원 조달 규모	189,651	991,945	135,927	935,606	57,641	927,444	-8,162	-0.9	1,101,237
채무	87,049	1,210,649	60,088	943,027	68,143	700,849	-242,178	-25.7	1,024,686
재무부 operating cash	120,986	154,466	78,369	53,403	-13,159	190,215	136,812	256.2	235,000
감소, 증가(-)									
기타	-18,385	-373,170	-2,530	-60,824	2,657	36,381	97,205	-159.8	-158,449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10.7월 OMB에서 발표한 FY2011 Mid-Session Review에 근거한 수치

3) 사회보장기금과 우편서비스기금은 법에 의해 연방예산에서 '예산 외(off-budget)'로 구분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5월, 2010.5월, 2011.5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5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약 1조 4,844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384억달러 (10.3%) 증가

○ 이는 주로 개인소득세 및 실업보험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

– 개인소득세는 약 1,555억달러(28.5%), 실업보험은 약 102억(30.2%)가량 증가

○ 이외에도 법인세가 전년동기 대비 약 40억달러(5.0%), 기타 재정수입이 약 96억달러 (15.9%), 소비세와 관세 수입이 각각 약 38억달러(9.4%), 약 32억달러(20.3%) 증가

○ 반면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실업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세입 역시 감소

– 유산세 및 증여세는 지난해에 비해 약 71억달러(51.7%) 줄었고,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은 약 305억달러(5.2%) 감소한 5,573억달러 규모

〈표 3-I-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08.10~ '09.5)	5월	누계 ('09.10~ '10.5)	5월	누계 ('10.10~ '11.5)	변동분	%
개인소득세	26,218	592,588	45,554	546,369	70,665	701,825	155,456	28.5
법인세	-1,404	69,377	4,405	81,492	5,406	85,533	4,041	5.0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수입: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ff-budget)	53,143	442,843	52,457	426,424	44,382	382,987	-43,437	-10.2
고용 및 일반퇴직연금 (On-budget)	14,636	133,769	14,267	124,942	14,734	127,596	2,654	2.1
실업보험	12,685	29,802	14,591	33,806	22,323	44,031	10,225	30.2
기타퇴직연금	390	2,791	314	2,743	325	2,712	-31	-1.1
소비세	5,427	39,770	4,692	40,601	5,089	44,424	3,823	9.4
유산세 및 증여세	1,457	17,539	1,133	13,728	262	6,628	-7,100	-51.7
관세	1,383	15,445	1,785	15,534	2,110	18,691	3,157	20.3
기타 재정수입	3,305	29,382	7,598	60,310	9,613	69,922	9,612	15.9
총 재정수입	117,241	1,373,307	146,795	1,345,950	174,911	1,484,350	138,400	10.3
예산	64,098	930,463	94,338	919,525	130,529	1,101,363	181,838	19.8
예산 외	53,143	442,843	52,457	426,424	44,382	382,987	-43,437	-10.2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5월, 2010.5월, 2011.5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FY2011 5월(누계) 재정지출은 약 2조 4,118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약 1,302억달러 (5.7%) 증가

- 상업 및 주택금융 부문의 지출에서 약 681억달러(66.7%)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
 - 이외에도 순이자지급 관련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198억달러(13.6%), 사회보장 부문 지출이 약 163억달러(3.5%) 증가
- 나머지 분야도 대체로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농업(8.5%), 상계계정수입(7.7%), 지역개발(6.0%), 교육·훈련·고용 및 사회서비스(1.5%) 지출이 감소
- 특히, 소득보장부문의 경우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141억달러(3.2%) 큰 폭으로 감소

〈표 3-I-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FY2009 ¹⁾		FY2010 ¹⁾		FY2011 ¹⁾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08.10~ '09.5)	5월	누계 ('09.10~ '10.5)	5월	누계 ('10.10~ '11.5)	변동분	%
국방	52,869	438,794	48,908	462,368	51,627	469,121	6,753	1.5
외교	2,388	24,087	3,922	29,173	5,097	28,843	-330	-1.1
과학, 우주, 기술 일반	2,008	15,919	2,235	19,628	2,421	19,571	-57	-0.3
에너지	525	718	1,355	6,445	1,384	8,468	2,023	31.4
천연자원 및 환경	2,702	21,666	3,307	25,602	3,740	29,231	3,629	14.2
농업	289	22,359	255	20,292	1,087	18,565	-1,727	-8.5
상업 및 주택금융	24,159	226,518	17,771	-102,120	-40,561	-34,021	68,099	-66.7
교통	6,455	50,422	6,971	55,925	7,366	57,914	1,989	3.6
지역개발	1,452	18,683	1,930	16,056	1,809	15,097	-959	-6.0
교육, 훈련, 고용 및 사회서비스	10,886	64,423	10,738	91,896	11,382	90,509	-1,387	-1.5
보건	28,955	218,690	30,127	243,131	29,475	254,638	11,507	4.7
메디케어	35,627	278,805	23,065	292,958	24,063	304,385	11,427	3.9
소득보장	41,508	362,703	45,054	447,194	41,897	433,092	-14,102	-3.2
사회보장	69,543	450,368	58,948	465,426	60,920	481,729	16,303	3.5
보훈	8,859	63,073	4,830	72,529	5,476	81,434	8,905	12.3
법무행정	3,770	31,444	4,204	36,139	5,191	38,045	1,906	5.3
일반행정	2,915	14,905	1,991	11,824	859	12,710	886	7.5
순이자지급	18,517	132,564	22,288	145,415	25,951	165,258	19,843	13.6
상계계정수입	-6,537	-70,889	-5,179	-58,327	-6,634	-62,795	-4,468	7.7
합계	306,892	2,365,252	282,722	2,281,556	232,551	2,411,794	130,238	5.7

주: 1) 확정치가 아니므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자료: Monthly Treasury Statement(Dept. of Treasury), 2009.5월, 2010.5월, 2011.5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6월 30일 기준 공공채무³⁷⁾는 전년동기 대비 1조 1,413억달러(8.6%)가 증가한 14조 3,431억달러 기록
 - 이는 시장성 채권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이 중 중기채가 큰 폭으로 증가
 - 시장성 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총 1조 2,322억달러(15.2%)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중기채가 1조 2,129억달러(24.6%)가량 증가
 - 비시장성 채권은 '10년 6월에 비해 약 909억달러(1.8%) 감소한 5조 84억달러 규모
 - 정부부문 소유 채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28억달러(0.7%) 증가한 4조 6,009억달러 규모를 보였고,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의 경우, 약 1조 1,085억달러(8.4%) 증가한 9조 7,422억달러를 기록

37) 공공채무는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으로 비정부부문 소유 채무와 정부부문 소유 채무로 구성

〈표 3-1-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09.6.30			'10.6.30			전년대비 증감								
	비장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장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비장부문 소유 채무		정부부문 소유 채무		합계				
							변동분	%	변동분	%	변동분	%			
시장성:	6,591,740	20,370	6,612,110	8,079,066	23,343	8,102,408	9,314,861	19,787	9,334,648	1,235,795	15.3	-3,555	-15.2	1,232,240	15.2
단기채(T-Bills)	2,000,458	6,005	2,006,463	1,777,032	5,494	1,782,526	1,529,417	2,078	1,531,495	-247,615	-13.9	-3,416	-62.2	-251,031	-14.1
중기채(T-Notes)	3,417,319	422	3,417,740	4,935,131	3,245	4,938,376	6,145,991	5,274	6,151,264	1,210,860	24.5	2,028	62.5	1,212,888	24.6
장기채(T-Bonds)	642,050	1,610	643,660	802,589	4,217	806,806	974,150	3,774	977,924	171,561	21.3	-443	-10.5	171,119	21.2
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531,913	413	532,326	564,314	148	564,462	665,303	220	665,523	100,989	17.9	72	48.9	101,062	17.9
Federal Financing Bank	0	11,921	11,921	0	10,239	10,239	0	8,441	8,441	0	0.0	-1,798	-17.6	-1,798	-17.6
비시장성:	583,173	4,349,993	4,933,165	554,615	4,544,769	5,099,383	427,363	4,581,077	5,008,439	-127,252	-2.5	36,309	0.8	-90,945	-1.8
Domestic Series	29,995	0	29,995	29,995	0	29,995	29,995	0	29,995	0	0.0	0	0	0	0.0
Foreign Series	5,986	0	5,986	4,036	0	4,036	3,686	0	3,686	-350	-8.7	0	-	-350	-8.7
R.E.A. Series ¹⁾	1	0	1	1	0	1	-	-	-	-	-	-	-	-	-
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232,965	0	232,965	204,002	0	204,002	166,423	0	166,423	-37,579	-18.4	0	-	-37,579	-18.4
United States Savings Securities	193,592	0	193,592	189,665	0	189,665	186,085	0	186,085	-3,579	-1.9	0	-	-3,579	-1.9
Government Account Series	119,112	4,349,501	4,468,613	125,612	4,544,276	4,669,888	39,793	4,580,584	4,620,377	-85,819	-1.8	36,308	0.8	-49,511	-1.1
Hope Bonds	0	492	492	0	492	492	0	493	493	0	0.0	1	0.2	1	0.2
Other	1,522	0	1,522	1,304	0	1,304	1,380	0	1,380	76	5.9	0	-	76	5.9
합계	7,174,912	4,370,363	11,545,275	8,633,680	4,568,111	13,201,792	9,742,223	4,600,864	14,343,088	1,108,543	8.4	32,753	0.7	1,141,297	8.6

주: 1) 2011년부터 R.E.A. Series는 비시장성 채권 목록에서 제외됨
 자료: Monthly Statement of the Public Debt of the U.S.(Dept. of Treasury), 2009.6월, 2010.6월, 2011.6월

II

일본 (2011년 5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일반회계) 2011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본의 일반회계 재정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5,610억엔(34.1%)가량 악화

○ 재정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약 5조 30억엔(80.9%) 감소하였고 재정지출도 약 2조 4,420억엔(17.8%) 감소하였지만 재정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반적인 재정적자 수준이 악화

□ (특별회계) 특별회계 부문의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규모는 약 13조 6,520억엔 수준

○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재정수입은 약 13조 3,420억엔(16.1%)가량이 증가하였고 재정지출은 3,100억엔(0.4%)이 감소하면서 흑자를 기록

〈표 3-Ⅱ-1〉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FY2011 예산액
	5월	누계 ('09.4~ '09.5)	5월	누계 ('10.4~ '10.5)	5월	누계 ('11.4~ '11.5)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입	1,130	4,685	2,493	6,186	628	1,184	-5,003	-80.9	92,717
재정지출	4,301	13,758	3,964	13,706	3,557	11,264	-2,442	-17.8	95,930
수지	-3,170	-9,073	-1,471	-7,520	-2,929	-10,081	-2,561	34.1	-3,213
〈특별회계〉									
재정수입	16,858	73,830	18,808	82,847	23,415	96,189	13,342	16.1	403,225
재정지출	15,935	73,711	15,169	73,048	17,666	72,738	-310	-0.4	404,230
수지	923	119	3,639	9,798	5,749	23,451	13,652	139.3	-1,004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5월 말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5월(누계) 총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0.9% 감소한 1조 1,840억엔 수준
 - 조세 및 인지수입의 항목별 세입현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채권발행 부문의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임
 - 정부채권 발행은 전년 대비 4조 8,920억엔(83.0%) 감소한 1조엔 수준
 - 기타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0억엔(40.1%)가량 큰 폭으로 감소

〈표 3-Ⅱ-2〉 과목별 세입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FY2011 예산액
	5월	누계 ('09.4~ '09.5)	5월	누계 ('10.4~ '10.5)	5월	누계 ('11.4~ '11.5)	누계 기준	%	
조세 및 인지수입	-	-	-	-	-	-	-	-	40,927
조세	-	-	-	-	-	-	-	-	39,870
소득세	-	-	-	-	-	-	-	-	13,490
법인세	-	-	-	-	-	-	-	-	7,792
상속세	-	-	-	-	-	-	-	-	1,423
소비세	-	-	-	-	-	-	-	-	10,199
주세	-	-	-	-	-	-	-	-	1,348
담배세	-	-	-	-	-	-	-	-	816
휘발류세	-	-	-	-	-	-	-	-	2,634
석유가스세	-	-	-	-	-	-	-	-	12
항공기연료세	-	-	-	-	-	-	-	-	46
석유석탄세	-	-	-	-	-	-	-	-	512
전원개발촉진세	-	-	-	-	-	-	-	-	346
자동차중량세	-	-	-	-	-	-	-	-	428
관세	-	-	-	-	-	-	-	-	815
톤세	-	-	-	-	-	-	-	-	9
토지세	-	-	-	-	-	-	-	-	-
구세(旧税)	-	-	-	-	-	-	-	-	-
인지수입	-	-	-	-	-	-	-	-	1,057
국영기업수입	1	2	1	2	1	3	0	18.0	16
정부자산매각수입	14	18	10	14	12	14	0	3.0	297
국유재산매각	7	11	4	6	6	9	3	43.1	117
회수금 등 수입	7	7	6	8	6	6	-2	-27.6	180
기타수입	77	145	202	278	115	167	-111	-40.1	7,179
국유재산이용수입	4	16	4	15	5	15	0	1.0	75
납부금	39	59	29	49	26	37	-12	-24.8	2,044
기타	34	70	169	214	83	115	-99	-46.4	5,060
정부채권발행(公債金)	1,038	4,520	2,280	5,892	500	1,000	-4,892	-83.0	44,298
전년도 잉여금수입	-	-	-	-	-	-	-	-	-
총계	1,130	4,685	2,493	6,186	628	1,184	-5,003	-80.9	92,717

주: -는 데이터 없음,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5월 말

□ 2011년 5월(누계) 특별회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약 13조 3,420억엔(16.1%) 증가한 96조 1,890억엔을 기록

○ 이는 국채정리기금과 재정투융자부문에서의 수입 증가가 주요인

– 국채정리기금과 재정투융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11조 6,090억엔(18.7%), 1조 2,270억엔(68.7%)이 증가하였기 때문

○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지진재보험의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약 3,490억엔(7907.4%) 증가한 3,540억엔을 기록

〈표 3-Ⅱ-3〉 특별회계 수입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FY2011 예산액
	5월	누계 ('09.4~5월)	5월	누계 ('10.4~5월)	5월	누계 ('11.4~5월)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85	4,531	145	5,008	121	5,120	112	2.2	54,369
등기 ³⁾	2	23	3	24	-	-	-	-	-
지진재보험	4	4	4	4	232	354	349	7,907.4	78
국채정리기금	13,178	55,663	12,969	61,991	14,656	73,600	11,609	18.7	206,417
외국환자금	20	59	0	31	14	15	-16	-51.2	2,389
재정투융자 ¹⁾	2,268	3,333	1,585	1,786	2,493	3,013	1,227	68.7	41,923
에너지대책	45	117	202	311	41	98	-213	-68.5	2,440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10	30	-	-	-	-	-	-	-
노동보험	14	235	18	140	16	47	-94	-66.8	8,655
선원보험 ²⁾	2	6	-	-	-	-	-	-	-
연금	620	8,190	3,236	11,976	5,293	12,693	716	6.0	79,412
식량안정공급	143	271	78	159	75	147	-12	-7.4	2,787
농업공제재보험	2	5	3	6	0	14	8	126.5	104
삼림보험	0	1	0	1	0	1	0	-11.5	10
국유임야사업	69	88	67	84	64	73	-11	-13.0	451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1	4	1	4	31	35	31	768.6	121
무역재보험	6	108	6	56	6	6	-51	-89.8	171
특허	24	198	22	198	17	204	5	2.7	305
사회자본정비사업	361	887	465	990	354	699	-291	-29.4	3,475
자동차안전	3	76	3	74	3	71	-4	-5.0	117
계	16,858	73,830	18,808	82,847	23,415	96,189	13,342	16.1	403,225

주: 1) 산업투자자 및 재정투자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되었으며, 등기 항목은 2011년부터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5월말

3. 소관별 세출동향

□ 일반회계 2011년 5월(누계) 기준 재정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4,420억엔 (17.8%)가량 감소한 11조 2,640억엔 수준

○ 이는 총무성의 지출감소가 주요인이고, 재무성과 문부과학성 또한 지출이 감소한 데에 기인

– 전년동기 대비 총무성의 지출은 각각 1조 4,350억엔(29.0%) 감소하였고, 재무성과 문부과학성은 각각 2,870억엔(54.0%), 2,650억엔(36.1%)가량 감소

○ 반면, 방위성은 지난해에 비해 지출이 170억엔(2.5%) 증가한 7,120억엔을 기록

〈표 3-Ⅱ-4〉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FY2011 예산액
	5월	누계 ('09.4~ 5월)	5월	누계 ('10.4~ 5월)	5월	누계 ('11.4~ 5월)	누계 기준	%	
황실비	0	1	0	0	0	0	0	-6.9	7
국회	5	13	8	14	7	12	-2	-11.0	141
재판소	17	33	17	35	17	35	0	-0.6	328
회계검사원	1	2	1	2	1	2	0	1.1	17
내각	2	3	2	4	2	4	0	-1.6	114
내각부	15	40	23	42	19	38	-4	-10.2	707
총무성	603	6,356	575	4,950	163	3,515	-1,435	-29.0	18,259
법무성	28	78	28	83	37	71	-12	-13.9	809
외무성	47	148	31	132	50	93	-39	-29.6	635
재무성	144	431	149	532	122	245	-287	-54.0	23,451
문부과학성	157	698	180	734	215	469	-265	-36.1	6,094
후생노동성	2,409	4,122	2,174	5,391	2,171	5,300	-91	-1.7	27,536
농림수산성	86	232	66	216	63	194	-21	-9.9	3,093
경제산업성	5	58	30	148	19	50	-97	-65.9	1,205
국토교통성	363	885	242	719	216	515	-204	-28.4	7,867
환경성	20	25	5	11	4	9	-2	-19.6	593
방위성	399	634	433	694	453	712	17	2.5	5,073
재정지출(합계)	4,301	13,758	3,964	13,706	3,557	11,264	-2,442	-17.8	95,930

주: 0은 10억엔 미만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5월 말

- 특별회계 2011년 5월 기준 지출(누계)은 전년동기 대비 3,100억엔(0.4%) 감소하여 72조 7,380억엔을 기록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에서 지출이 '10년에 비해 약 2조 1,790억엔(8.8%)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이외에도 국채정리기금, 노동보험 부문에서의 지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0.3%(980억엔), 9.3%(560억엔)가량 감소
 -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지진재보험관련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4,270억엔(5,910,434.3%) 큰 폭으로 증가
 - 또한, 재정투융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조 2,330억엔(81.2%) 증가한 2조 7,500억엔을 기록

〈표 3-Ⅱ-5〉 특별회계 세출 현황 (2011년 5월 말, 실적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FY2011 예산액
	5월	누계 ('09.4~ 5월)	5월	누계 ('10.4~ 5월)	5월	누계 ('11.4~ 5월)	누계 기준	%	
교부세 및 양여세배부금	3,859	24,142	3,877	24,632	4,090	22,453	-2,179	-8.8	54,171
등기	7	12	6	11	-	-	-	-	-
지진재보험	0	0	0	0	227	427	427	5,910,434.3	427
국채정리기금	8,406	32,064	8,082	31,786	9,121	31,688	-98	-0.3	208,181
외국환자금	19	39	12	24	10	21	-3	-13.3	1,605
재정투융자 ¹⁾	2,189	3,014	1,506	1,518	2,422	2,750	1,233	81.2	41,128
에너지대책	40	681	18	792	20	750	-42	-5.3	2,496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²⁾	11	14	-	-	-	-	-	-	-
노동보험	277	614	246	600	241	544	-56	-9.3	8,637
선원보험 ²⁾	4	8	-	-	-	-	-	-	-
연금	797	12,469	1,149	13,023	1,293	13,502	479	3.7	79,412
식량안정공급	80	213	48	266	30	251	-15	-5.7	2,798
농업공제재보험	2	4	3	3	2	4	1	20.7	100
삼림보험	0	0	0	0	0	0	0	-42.9	5
국유임야사업	74	97	68	94	66	86	-8	-8.5	489
어선재보험과 어업공제보험	0	2	2	2	9	13	11	522.9	114
무역재보험	1	2	0	1	0	0	0	-58.5	171
특허	6	8	8	9	5	8	-1	-16.0	118
사회자본정비사업	162	320	145	281	128	235	-46	-16.4	4,318
자동차안전	2	8	2	6	2	6	0	-4.3	60
계	15,935	73,711	15,169	73,048	17,666	72,738	-310	-0.4	404,230

주: 1) 산업투자와 재정투융자금이 2008년 재정투융자로 통합

2) 국립고도전문의료센터 및 선원보험 항목은 2010년부터 특별회계에서 제외되었으며, 등기 항목은 2011년부터 제외

자료: 일본 재무성, 국고세출입상황 - 헤세이 23년, 22년, 21년 각 연도 5월말

4. 국가채무 동향 (『재정동향』 제6호 내용과 동일)

- 2011년 3월 31일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약 924조엔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준
 - 국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 38조엔(5.3%)이 증가한 758조 5,690억엔 규모
 - 정부채권이 42조 3,400억엔(7.1%)가량 증가하였고 이 중 장기채권 증가액이 약 31조 2,130억엔(8.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단기채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약 4조 3,120억엔(9.9%) 감소하였으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도 작년에 비해 약 4조 340억엔(3.3%) 감소
 - 차입금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약 1조 4,010억엔(2.5%) 감소한 약 55조엔 수준
 - 재정어음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4조 7,570억엔(4.5%) 증가한 110조 7,850억엔 규모

〈표 3-Ⅱ-6〉 중앙정부채무 (3월 31일 기준)

(단위: 십억엔)

구분	2009년 3월	2010년 3월	2011년 3월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
국채	680,448	720,489	758,569	38,080	5.3
정부채권	545,936	593,972	636,312	42,340	7.1
장기(10년 이상)	354,238	373,155	404,368	31,213	8.4
중기(2~5년)	161,018	177,193	192,632	15,438	8.7
단기(1년 미만)	30,680	43,624	39,312	-4,312	-9.9
재정투융자특별회계채권	131,050	122,225	118,192	-4,034	-3.3
장기(10년 이상)	94,737	100,274	100,789	515	0.5
중기(2~5년)	36,313	21,951	17,403	-4,548	-20.7
교부채권(Subsidy bond)	527	450	367	-82	-18.3
출자채권 등	2,211	1,767	1,623	-144	-8.2
기타 채권 ¹⁾	725	2,075	2,075	0	0.0
차입금	57,566	56,406	55,006	-1,401	-2.5
장기(1년 초과)	22,252	21,092	19,692	-1,401	-6.6
단기(1년 이하)	35,314	35,314	35,314	0	0.0
재정어음(Financing Bills)	108,483	106,028	110,785	4,757	4.5
총계	846,497	882,924	924,360	41,436	4.7
정보보증채무	45,429	46,596	44,745	-1,851	-4.0

주: 1) 기타 채권은 주식회사 일본정책투자은행 위기대응업무 채권과 일본고속도로 보유·채무상환계획 승계 채권의 합계수치임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상기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가 보유한 채권과 국내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 일본 재무성, 국채 및 차입금 및 정보보증채무 현황 - 헤세이 21, 22, 23 각 연도 3.31 기준

Ⅲ

영국 (2011년 6월 기준, FY2011-12: 2011.4~2012.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1.6월말 기준 공공부문의 순부채 규모는 GDP의 61.9%로 전년 대비 6.6%p 증가
 - 순부채는 2010.6월 말보다 약 1,406억파운드 증가한 9,443억파운드 기록
 - 금융시장에 대한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부채 규모는 2조 2,760억파운드로 GDP 대비 149.3%에 달함

- 2011.4~6월 공공부문의 순차입규모는 392억파운드로 전년 동기보다 약 4억파운드 감소
 - 2011.6월 순차입 규모는 전년 동월보다 약 4억파운드 증가한 140억파운드
 - 금융시장의 한시적 개입효과를 포함한 순차입은 전년 동월보다 약 3억파운드 증가한 120억파운드 규모

- 2011.4~6월 경상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339억파운드를 기록
 - 2011.6월 경상재정적자는 118억파운드로 전년 동월에 비해 4억파운드 증가

〈표 3-Ⅲ-1〉 공공부문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2.1	-35.2	-11.4	-33.7	-11.8	-33.9	-0.2	0.5
순차입	14.9	41.4	13.6	39.5	14.0	39.2	-0.4	-0.9
순부채	655.4		803.7		944.3		140.6	17.5
GDP 대비 순부채	47.0		55.3		61.9		6.6%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7.18)

- 중앙정부의 2011.4~6월 경상재정적자는 376억파운드로 전년에 비해 약 0.1% 증가
 - 전년동기 대비 2011.4~6월까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4.6%, 3.4% 증가
 - 순투자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13억파운드(17.6%) 감소한 60억파운드를 기록
 - 중앙정부 순차입 규모는 43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8% 감소

〈표 3-III-2〉 중앙정부 재정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재정수입¹⁾	35.5	106.2	37.5	115.8	39.6	121.1	5.3	4.6
생산물과세(VAT포함)	13.9	40.2	15.6	49.2	17.3	50.6	1.4	2.9
소득세 및 재산세	11.4	35.9	11.6	37.0	10.9	38.0	0.9	2.6
기타과세	31.5	95.0	31.5	98.0	33.2	99.6	1.6	1.6
사회보장기여금	7.9	23.0	8.0	23.1	8.2	24.2	1.1	4.7
이자 및 배당금	0.6	2.0	0.4	1.2	0.5	1.4	0.2	15.7
기타 재정수입	0.7	2.1	0.7	2.1	0.8	2.3	0.2	7.2
재정지출	46.9	143.1	49.5	151.6	52.0	156.8	5.2	3.4
이자	1.7	7.4	3.8	11.5	4.1	13.2	1.6	14.3
순 사회복지급여	13.6	40.7	14.2	42.1	14.7	44.1	1.9	4.6
기타 재정지출	31.5	95.0	31.5	98.0	33.2	99.6	1.6	1.6
감가상각	-0.6	-1.7	-0.6	-1.7	-0.6	-1.9	-0.2	8.8
경상재정수지	-11.9	-38.6	-12.6	-37.6	-13.0	-37.6	0.0	0.1
투자 ²⁾	7.6	13.8	3.1	9.0	3.0	7.9	-1.1	-12.5
less Depreciation	0.6	1.7	0.6	1.7	0.6	1.9	0.2	8.8
순투자	7.0	12.1	2.5	7.3	2.4	6.0	-1.3	-17.6
순차입	18.9	50.7	15.1	44.8	15.3	43.6	-1.3	-2.8

주: 1) 재정수입에 대한 정의는 영국 재무부에서 공표한 바를 따름(상속세 포함)

2) 투자=자본형성+토지순취득+순투자보조금-자본자산매각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7.18)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4~6월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1210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 대비 53억파운드(4.6%) 증가
- 부가가치세는 세율 인상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0억파운드(16.9%) 증가
 - 법정 사회보장기여금은 11억파운드(4.7%), 법인세는 4억파운드(5.4%) 증가

〈표 3-Ⅲ-3〉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생산물과세	13.9	40.2	15.6	49.2	17.3	50.6	1.4	2.9
부가가치세	6.8	19.1	8.1	23.4	9.5	27.4	4.0	16.9
소득세 및 재산세	11.4	35.9	11.6	37.0	10.9	38.0	0.9	2.6
소득세 ¹⁾	10.1	28.9	10.2	29.4	10.0	29.9	0.5	1.8
법인세 등 ²⁾	1.3	7.1	1.4	7.6	0.9	8.0	0.4	5.4
기타 과세(tax)	1.0	3.0	1.1	3.2	2.0	4.7	1.5	46.7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7.9	23.0	8.0	23.1	8.2	24.2	1.1	4.7
이자 및 배당금	0.6	2.0	0.4	1.2	0.5	1.4	0.2	15.7
기타 재정수입(receipts)	0.7	2.1	0.7	2.1	0.8	2.3	0.2	7.2
재정수입	35.5	106.2	37.5	115.8	39.6	121.1	5.3	4.6

주: 1) 가구기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법인의 소득세 및 자본이득세 포함

2) 주로 법인세와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임. 기타 소득세 포함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7.18)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4~6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1,568억파운드 규모
 - 사회복지급여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19억파운드) 증가
 - 이자지출 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14.3%(16억파운드) 증가

〈표 3-Ⅲ-4〉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이자	1.7	7.4	3.8	11.5	4.1	13.2	1.6	14.3
순사회복지급여	13.6	40.7	14.2	42.1	14.7	44.1	1.9	4.6
기타 재정지출	31.5	95.0	31.5	98.0	33.2	99.6	1.6	1.6
재정지출	46.9	143.1	49.5	151.6	52.0	156.8	5.2	3.4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7.18)

4. 국가채무 동향

-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2011.4~6월 공공부문 순차입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여 331억파운드를 기록
 - 중앙정부의 순차입규모는 13억파운드(2.8%) 감소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순융자 규모가 11억파운드(24.4%) 감소하여 일반정부 순차입은 1억파운드(0.3%) 감소에 그침
 - 공기업의 경우 금융공기업은 6억파운드의 순융자를 기록하였고, 비금융공기업도 9억파운드의 순융자를 나타냄

- 2011.6월 말, 공공부문 순부채규모는 전년 대비 17.5% 증가한 9,443억파운드 기록 (GDP 대비 62%)

〈표 3-Ⅲ-5〉 공공부문 채무 현황

(단위: 십억파운드)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6월	4~6월	6월	4~6월	6월	4~6월	4~6월 누계기준	%	
경상재정수지			-12.1	-35.2	-11.4	-33.7	-11.8	-33.9	-0.2	0.5	
순투자			2.8	6.2	2.2	5.8	2.2	5.3	-0.5	-9.4	
순차입	정부(A)	중앙정부	18.9	50.7	15.1	44.8	15.3	43.6	-1.3	-2.8	
		지방정부	0.0	-5.3	-1.3	-4.6	-0.7	-3.5	1.1	-24.4	
		일반정부	18.9	45.4	13.8	40.2	14.7	40.1	-0.1	-0.3	
	공기업(B)	비금융공기업	-4.0	-4.0	-0.2	-0.6	-0.7	-0.9	-0.2	38.5	
		중앙은행	0.0	0.0	0.0	0.0	0.0	0.0	0.0	0.0	
	한시적 금융개입효과 제외 공공부문순차입(A+B)			14.9	41.4	13.6	39.5	14.0	39.2	-0.4	-0.9
	금융공기업(C)			-2.0	-5.9	-1.9	-5.8	-2.0	-6.0	-0.2	3.4
	공공부문순차입(A+B+C)			12.9	35.5	11.7	33.7	12.0	33.1	-0.6	-1.7
순국가채무			655.4		803.7		944.3		140.6	17.5	
GDP 대비 국가채무			47.0		55.3		61.9		6.6%p		

자료: 영국 재무부(HM Treasury), 'Public Sector Finances(2011.6)'; 통계청(ONS), Public Sector Finances 시계열 데이터(Last update, 2011.7.18)

IV

프랑스 (2011년 5월 기준, FY2011: 2011.1~2011.12)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재정수지는 684억유로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 일반회계 재정지출(누적)은 전년 대비 47억유로(3.0%)가 감소하였고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64억유로(6.3%) 증가하여 재정수지 개선
 - 특별회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16억유로(90.1%) 증가한 244억유로 수준

<표 3-IV-1> 중앙정부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5월	누계 ('09.1-5월)	5월	누계 ('10.1-5월)	5월	누계 ('11.1-5월)	누계 기준	%
일반회계 재정수지	0.5	-56.8	-6.1	-55.1	-4.4	-44.0	11.1	-20.2
재정지출 (대금상환 및 감세 제외)	-24.3	127.0	26.9	157.4	24.5	152.7	-4.7	-3.0
재정수입 (대금상환 및 감세 별도)	-23.8	70.2	20.8	102.4	20.2	108.8	6.4	6.3
특별회계 재정수지	4.7	-14.8	-5.6	-12.8	-2.7	-24.4	-11.6	90.1
지방정부에 대한 선불	4.4	-16.1	-2.2	-9.3	-4.2	-23.9	-14.5	156.0
재정수지	5.2	-71.6	-11.7	-67.9	-7.0	-68.4	-0.5	0.7

주: 1) 5월 수치는 (5월 누계 - 4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11~2012 각 연도 4, 5월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1월~5월까지 세수는 전년 대비 72억유로(7.4%) 증가한 1,036억유로를 기록
 - 법인세는 2010년 5월(누적)에 비해 65.5% 증가한 80억유로 수준
 -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3.9%(21억유로) 증가한 548억유로 수준이고 기타 세수는 71억 유로로 전년 대비 21.2% 증가
 - 총재정수입은 6.3% 증가한 1,088억유로를 기록

〈표 3-Ⅳ-2〉 중앙정부 재정수입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2011 전망치
	5월	누계 ('09.1- 5월)	5월	누계 ('10.1- 5월)	5월	누계 ('11.1- 5월)	누계 기준	%	
세수	18.8	84.4	19.5	96.5	17.3	103.6	7.2	7.4	254.6
소득세	8.8	27.9	8.8	27.5	9.0	28.1	0.6	2.3	51.7
법인세	-3.2	-1.8	-2.3	4.8	-4.1	8.0	3.2	65.5	43.1
TIPP ¹⁾	1.7	5.7	1.2	5.5	1.2	5.5	0.1	1.3	14.1
부가가치세	9.7	46.5	10.4	52.8	9.9	54.8	2.1	3.9	132.3
기타	1.8	6.1	1.5	5.9	1.3	7.1	1.2	21.2	13.5
세외수입	1.2	5.4	1.1	4.9	2.7	4.3	-0.6	-12.3	16.6
소계	20.0	89.8	20.6	101.4	20.0	108	6.6	6.5	271.3
기타 수입	252.0	757	205	969	156	819	-150	-15.5	3.2
총재정수입	20.3	90.5	20.8	102.4	20.2	108.8	6.4	6.3	274.5

주: 1)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내국세(Taxe intérieure sur les produits pétroliers; TIPP)

2) 2월 수치는 (2월 누계 - 1월)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1, 2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1월~5월 세출은 전년 대비 76억유로(6.7%) 증가한 1,209억유로 수준

○ 이는 주로 운용비와 국채이자 증가에 기인

– 운용비와 국채이자는 각각 29억유로(17.7%), 24억유로(14.6%) 증가

□ 2011년 5월(누적) 보조금(Prélèvements Sur Recettes, PSR)은 318억유로로 전년 대비 27.9% 감소

○ 2011년 1월부터 사업소세 개편에 따른 보상이 현재까지는 아직 없음

〈표 3-Ⅳ-3〉 중앙정부 재정지출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9		2010		2011		전년 대비 증감	
	5월 ³⁾	누계 ('09.1-5월)	5월	누계 ('10.1-5월)	5월	누계 ('11.1-5월)	누계 기준	%
세출	19.7	121.7	18.5	113.3	18.8	120.9	7.6	6.7
예비비	0.0	1.0	0.0	1.0	0.0	1.0	0.0	0.7
인건비	9.7	50.0	9.8	49.5	9.9	49.9	0.4	0.8
운용비	2.5	16.5	2.4	16.2	2.9	19.1	2.9	17.7
국채이자	0.0	16.4	0.0	16.6	0.1	19.0	2.4	14.6
투자비	1.0	6.2	0.9	2.8	0.9	4.3	1.5	55.0
이전비 ¹⁾	6.3	31.4	5.4	27.1	5.1	27.5	0.3	1.2
재정운용비용	50.0	144.0	0.004	0.007	0.03	0.06	0.05	814.3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출	-	-	0	-	-	-	-	-
보조금(PSR)	5.3	30.3	8.4	44.1	5.7	31.8	-12.3	-27.9
지방정부보조금	4.4	21.8	4.4	22.1	4.6	23.1	0.9	4.2
사업소세 개편(폐지)에 따른 보상금			2.7	13.2				
EU보조금	1.0	8.6	1.3	8.8	1.1	8.7	0.0	-0.1
총재정지출	25.0	152.1	26.9	157.4	24.5	152.7	-4.7	-3.0

주: 1) 이전비(Dépenses d'intervention)에는 가계이전비, 기업이전비, 지방자치단체 이전비, 소송비용이 포함됨

2) -는 데이터 없음

3) 5월 수치는 (5월 누계 - 4월 누계)로 산출.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월간보고서 La situation du budget de l'Etat 2009~2011 각 연도 4,5월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채는 1조 3,190억유로로 전년 대비 7.4% 증가
 - 1년 미만 단기채권이 전년대비 180억유로 (8.7%) 감소한 반면, OAT/Bons 등 장기채권은 980억유로 (12.6%) 증가

〈표 3-Ⅳ-4〉 중앙정부 국채현황

(단위: 십억유로(Md€))

구분	2009~ 2009.06.30.	2010~ 2010.06.30.	2011~ 2011.06.30.	전년 대비 증감	
				증감액	%
중앙정부국채	1,092	1,228	1,319	91	7.4
OAT/Bons : 장기채권(10-50년)	697	780	878	98	12.6
BTAN/Treasury Notes : 중기채권(2-5년)	218	240	252	12	5.0
BTF/Treasury Bills : 단기채권(1년 미만)	177	207	189	-18	-8.7
평균만기기간	6년297일	6년335일	7년39일		

자료: Agence France Trésor(채무담당기관)의 월간보고서(Monthly Bulletin) 2009~2011 각 연도 7월호

V

독일 (2011년 6월 기준, FY2011: 2011.1~2011.12)³⁸⁾

1. 세입 및 세출 동향

- 연방예산의 2011.6월(누계) 재정적자는 223억유로로 전년 6월 대비 약 106억유로 (32.2%) 감소
 - 재정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하였고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
 - 재정수입 증가는 조세수입 상승(전년 대비 10.9%)으로 인한 효과임

<표 3-V-1> 연방정부 재정

(단위: 십억유로,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
	6월	누계 ¹⁾	6월	누계 ¹⁾	6월	누계 ¹⁾	변동분	%	
재정지출	21.0	141.5	26.1	155.3	20.9	150.3	-5.0	-3.2	305.8
재정수입	24.5	126.8	28.4	122.4	25.6	128.0	5.6	4.6	257.0
세수	23.3	109.3	22.0	104.9	24.4	116.3	11.4	10.9	229.2
재정수지	3.4	-14.7	2.3	-32.9	4.8	-22.3	10.6	-32.2	-48.8

주: 1) 잠정치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5~6월, 2010.5~6월, 2011.5~6월

38) 2008년 11월 기준 월간통계 누락으로 2008년의 경우 누계치만 제시

2. 세목별 세입동향

- FY2010 6월까지 연방정부 총 재정수입은 약 1,280억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약 56억유로(4.6%) 증가
 - 6월(누계) 연방정부 조세수입은 약 1,163억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113억유로(10.8%) 증가
 - 부가가치세가 약 40억유로(8.6%), 소득세 분리과세분이 약 22억유로(49.4%), 소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분이 약 22억유로(8.8%) 증가
 - 6월(누계) 기타수입은 약 117억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2.9%(57억유로) 감소

〈표 3-V-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예산)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변동분	%	
I. 조세수입	23,364	109,323	22,025	104,934	24,371	116,269	11,335	10.8	229,164
공동세:	17,906	88,405	18,461	87,673	20,641	96,591	8,918	10.2	184,183
소득세 및 법인세	10,026	41,498	10,834	40,953	12,241	45,746	4,793	11.7	84,791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분)	4,824	25,933	4,648	24,490	5,174	26,657	2,167	8.8	55,781
소득세(연말정산분)	3,384	5,147	3,641	6,730	3,657	6,852	122	1.8	11,921
소득세(분리과세분)	367	4,653	515	4,475	673	6,685	2,210	49.4	6,895
소득세(이자원천징수분)	253	3,394	136	2,367	156	2,203	-164	-6.9	3,569
법인세	1,197	2,370	1,894	2,890	2,582	3,350	460	15.9	6,625
부가가치세	7,878	46,588	7,626	46,385	8,400	50,387	4,002	8.6	97,985
수입부가가치세	2	319	1	335	1	458	123	36.7	1,407
에너지세	3,642	14,836	3,356	14,041	3,487	14,459	418	3.0	39,142
담배세	1,166	5,925	1,114	5,789	1,026	6,193	404	7.0	13,440
통일세(Solidarity surcharge)	1,334	6,248	1,393	5,955	1,592	6,522	567	9.5	11,850
보험세	594	6,501	606	6,556	542	6,886	330	5.0	10,620
전기세	610	3,129	587	3,068	744	3,744	676	22.0	7,030
자동차세	-	-	714	4,581	707	4,564	-17	-0.4	8,445
주세	163	1,073	117	965	170	1,057	92	9.5	1,963
커피세	78	488	78	500	89	521	21	4.2	1,030
항공세(aviation tax)	-	-	-	-	81	348	-	-	1,000
추가 주정부 교부금	-3,446	-6,891	-3,160	-6,348	-3,108	-6,104	244	-3.8	-12,159
GNP 연계 EU예산 출자금	837	-6,068	-640	-9,193	-969	-9,856	-663	7.2	-21,870
부가가치세 연계 EU예산 출자금	1,008	-1,182	-62	-947	-90	-916	31	-3.3	-2,300
단거리 대중교통을 위한 주정부 지원	-565	-3,388	-573	-3,438	-582	-3,490	-52	1.5	-6,980
자동차세 및 HGV 통행료에 대한 주정부 보조금	-	-	0	-4,496	0	-4,496	0	0.0	-8,992
II. 기타 수입	1,084	17,454	6,359	17,455	1,253	11,710	-5,745	-32.9	27,860
경제활동 수입	177	3,996	202	4,093	229	3,602	-491	-12.0	5,565
이자수입	12	310	23	154	30	125	-29	-18.8	512
차관수익 및 민영화 수입	88	2,309	399	2,218	-135	1,276	-942	-42.5	4,247
총재정수입	24,446	126,776	28,384	122,389	25,625	127,980	5,591	4.6	257,024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5~6월, 2010.5~6월, 2011.5~6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6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지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50억유로(3.2%) 감소한 약 1,503억유로를 기록
 -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약 33억유로) 감소하였으며, 이 중 실업보험 지출이 24.5%(약 17억유로) 감소
 - 이자지출 등 금융일반 지출은 14.2%(약 29억유로), 일반공공서비스 지출은 1.9%(5억유로) 감소
 -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분야 지출이 17.3%(10억유로),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지출이 6.8%(5억유로), 보건, 환경, 체육지출이 22.3%(1억유로) 증가

〈표 3-V-3〉 연방정부 기능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FY2011 (추정)
	6월	누계	6월	누계	6월	누계	변동분	%	
일반공공서비스	4,097	26,003	4,476	26,028	4,245	25,546	-482	-1.9	55,490
경제협력 및 개발	263	3,065	453	2,841	350	2,618	-223	-7.8	6,149
국방	2,520	15,195	2,489	15,451	2,527	15,133	-318	-2.1	32,147
연방행정	449	3,202	413	2,949	479	2,989	40	1.4	6,376
세무행정	280	1,643	309	1,794	267	1,759	-35	-2.0	4,166
교육, 과학, 연구 및 문화	1,188	6,132	1,007	5,894	1,222	6,915	1,021	17.3	16,933
연방 교육 및 훈련 보조	95	752	97	771	104	918	147	19.1	1,544
R&D	747	3,096	554	2,942	677	3,308	366	12.4	9,471
사회보장, 전쟁관련 배상금	11,213	74,905	13,029	87,419	12,304	84,116	-3,303	-3.8	160,005
사회보장	6,267	43,421	6,418	44,453	6,381	44,217	-236	-0.5	77,655
실업보험	-	0	695	6,830	481	5,160	-1,670	-24.5	13,446
기초실업급여	2,824	17,540	2,981	17,947	2,564	16,571	-1,376	-7.7	34,190
:실업급여 II	1,875	11,192	1,854	11,495	1,624	10,102	-1,393	-12.1	20,400
실업급여 II, 주택 및 난방보조	296	1,734	279	1,639	472	2,375	736	44.9	3,600
주거보조	79	357	80	455	64	417	-38	-8.4	679
육아양육비	378	2,297	395	2,338	396	2,432	94	4.0	4,389
전쟁연금 및 대상자 복지	190	1,160	171	1,072	116	944	-128	-11.9	1,748
보건, 환경, 체육	101	466	81	443	79	542	99	22.3	1,580
주택, 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82	602	108	713	116	757	44	6.2	2,098
주택	56	502	77	587	97	658	71	12.1	1,353
식품, 농업, 임업 및 에너지, 수자원 공급, 무역, 서비스	309	2,788	291	2,858	360	2,828	-30	-1.0	6,497
지역발전	45	284	37	221	60	279	58	26.2	740
석탄채굴	0	1,375	0	1,319	0	1,350	31	2.4	1,350
보증	124	261	98	382	92	321	-61	-16.0	1,770
교통, 통신	911	4,626	826	4,495	747	4,521	26	0.6	11,735
도로(지방운송재정법 제외)	571	2,117	534	2,005	462	1,938	-67	-3.3	5,926
영리기업, 부동산 일반 및 자본자산	1,412	6,977	1,445	7,251	1,381	7,747	496	6.8	15,999
연방 철도기금	463	2,434	467	2,399	454	2,337	-62	-2.6	5,283
구 독일연방철도/독일국영철도회사 (Deutsche Bahn AG)	346	1,645	350	1,551	340	1,579	28	1.8	3,877
금융 일반	1,683	18,967	4,786	20,192	410	17,332	-2,860	-14.2	35,462
이자지출	1,529	18,247	4,721	19,729	346	16,891	-2,838	-14.4	35,343
총재정지출	20,996	141,466	26,049	155,292	20,865	150,304	-4,988	-3.2	305,800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5~6월, 2010.5~6월, 2011.5~6월

4. 국가채무 동향(5월 말 기준)

- 2011.5.31 기준 연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약 1조 1,314억유로 기록
 - 연방채권 발행규모는 약 6,407억유로로 전년 대비 약 165억유로(2.6%) 증가
 - 전년에 비해 특별연방채권 130억유로(6.6%), 연방재무부중기채권 130억유로(8.8%), 물가연동국채 120억유로(27.3%) 증가
 - 재무부할인채권의 경우는 전년 대비 약 71억유로(9.1%) 감소

〈표 3-V-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유로, %)

구분	'09.05.31	'10.05.31	'11.05.31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물가연동국채(Index Linked Bonds)	22,000	32,000	44,000	12,000	27.3
연방채권(Federal bonds) ¹⁾	610,218	624,204	640,736	16,532	2.6
특별연방채권(Special federal bonds)	166,000	185,000	198,000	13,000	6.6
연방저축채권(Federal savings bonds)	9,535	9,437	8,503	-934	-11.0
연방재무부중기채권(Federal treasury notes)	123,000	134,000	147,000	13,000	8.8
재무부할인채권(Treasury discount paper)	90,598	84,782	77,704	-7,078	-9.1
연방재무부단기채권(Treasury financing paper) ²⁾	1,849	758	563	-195	-34.6
독일정부일일채권 (German government day-bond)	3,313	2,173	1,826	-347	-19.0
Loans against borrowers' notes	12,935	12,374	12,370	-4	0.0
Treuhand medium-term notes	51	51	51	0	0.0
Other intra-annual credit-market funds	100	829	633	-196	-31.0
합계	1,039,601	1,085,609	1,131,385	45,776	4.0

주: 1) 재정적자 보전용 장기국채, 10년 및 30년 만기

2) 1년 및 2년 만기 연방재무부중기채권

자료: Abstract of the Federal Ministry of Finance's Monthly Report, 2009.5~6월, 2010.5~6월, 2011.5~6월

VI

캐나다 (2011년 5월 기준³⁹⁾, FY2011-12: 2011.4~2012.3)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재정적자는 약 33억캐나다달러(CAD)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억달러(25%) 감소
 -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9%(11억 CAD) 증가한 383억CAD으로, 이는 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
 - 프로그램지출은 이전지출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1.9%(7.2억CAD) 감소한 359억 CAD이며, 이자지출은 전년 대비 13.5%(6.7억CAD) 증가한 565억CAD 수준

<표 3-V-1> 연방정부 재정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누계기준)	
	5월	누계 (2009.4 ~ 5월)	5월	누계 (2010.4 ~ 5월)	5월	누계 (2011.4 ~ 5월)	변동분	%
예산(발생주의)								
재정수입	17,453	34,541	18,586	37,198	18,281	38,281	1,083	2.91
재정지출								
프로그램 지출	-18,779	-36,917	-18,152	-36,650	-18,140	-35,933	717	-1.96
이자지출	-2,660	-5,154	-2,423	-4,977	-3,000	-5,649	-672	13.50
재정수지(a)	-3,986	-7,530	-1,989	-4,429	-2,859	-3,301	1,128	-25.47
예산외(b)	-5,244	-5,562	-2,388	-8,979	783	-6,789	2,190	-24.39
필요/잉여 자원규모 (a+b=c)	-9,230	-13,092	-4,377	-13,408	-2,076	-10,090	3,318	-24.75
순재원조달 규모(d)	-11,398	-8,345	9,975	11,129	15,198	19,799	8,670	77.90
순현금수지 변화분(c+d)	-20,628	-21,437	5,598	-2,279	13,122	9,709	11,988	-526.02
기말 현금수지		23,595		23,342		19,860	-3,482	-14.92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년 4-5월, 2011 4-5월

39) 국가채무 동향만 2011년 3월말 기준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1년 5월(누계) 재정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9%(10.8억CAD) 증가한 383억CAD
 - (소득세) 개인소득세(7.8%, 14억CAD) 및 법인세(10%, 3.8억CAD)가 증가하여 전체 소득세는 전년동기 대비 8.2%(19억CAD) 증가한 247억CAD 규모
 - 에너지세와 수입관세는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GST수입이 감소(7.5억CAD, 17.6%)하여 총소비세는 전년동기 대비 11.8%(7.7억CAD) 감소한 57억CAD 규모
 - (고용보험료 및 기타) 고용보험료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8.5%(3억CAD) 증가하였고, 기타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7.3%(3억CAD) 감소

〈표 3-V-2〉 연방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5월	
	5월	누계 (2009.4 ~5월)	5월	누계 (2010.4 ~5월)	5월	누계 (2011.4 ~5월)	변동분	%
조세수입								
소득세	11,045	22,963	11,436	22,838	11,202	24,703	1,865	8.2
개인소득세	8,569	17,591	8,904	18,325	8,553	19,761	1,436	7.8
법인세	1,996	4,363	2,082	3,775	2,318	4,152	377	10
비거주자	480	1,009	450	738	331	790	52	7
소비세	2,310	4,358	3,380	6,484	3,183	5,718	-766	-11.8
GST (Goods and services tax)	1,255	2,288	2,212	4,281	2,094	3,527	-754	-17.6
에너지세	388	760	407	796	434	826	30	3.8
수입관세	243	518	244	503	245	518	15	3
기타소비세	424	792	517	904	410	847	-57	-6.3
조세수입 소계	13,355	27,321	14,816	29,322	14,385	30,421	1,099	3.7
고용보험료	1,696	3,500	1,718	3,544	1,856	3,845	301	8.5
기타 수입	2,037	3,720	2,052	4,332	2,040	4,015	-317	-7.3
총재정수입	17,088	34,541	18,586	37,198	18,281	38,281	1,083	2.9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년 4-5월, 2011 4-5월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5월(누계기준)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0.1%(약 4,500만CAD) 감소한 41억CAD를 기록
 - (프로그램지출) 이전지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7억 CAD) 감소한 359억 CAD를 기록
 -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은 노인급여 및 자녀수당의 증가분을 초과하는 고용보협급여의 감소분으로 인해 전년동기 대비 0.3%(3,600만CAD) 감소
 -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은 보건 및 사회이전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지역 사회지출 감소로 인해 3%(2억 8천만CAD) 감소
 - 이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3.4%(8억 7천만CAD) 감소
 - 기타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4%(1억 5천만CAD) 증가
 -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13.5%(6억 7천만CAD) 증가한 56.5억CAD를 기록

〈표 3-V-3〉 연방정부 재정지출

(단위: 백만CAD, %)

구분	FY2009-10		FY2010-11		FY2011-12		전년 대비 증감 5월	
	5월	누계 (2009.4 ~5월)	5월	누계 (2010.4 ~5월)	5월	누계 (2011.4 ~5월)	변동분	%
이전지출	12,8098	26,368	12,341	25,580	12,195	24,708	-872	-3.4
개인에 대한 주요 이전지출								
노인급여	2,864	5,700	2,937	5,845	3,073	6,127	282	4.8
고용보험급여	1,867	3,735	1,559	3,610	1,753	3,260	-350	-9.7
자녀수당	1,019	2,048	1,074	2,156	1,122	2,188	32	1.5
소계	5,750	11,483	5,570	11,611	5,948	11,575	-36	-0.3
주요 정부간 이전지출								
보건 및 기타 사회보장 지원								
CHT(Canada Health Transfer) 보건이전지출	2,039	4,079	2,157	4,315	2,267	4,534	219	5.1
CST(Canada Social Transfer) 사회이전지출	905	1,810	931	1,863	959	1,919	56	3
소계	2,944	5,889	3,088	6,178	3,226	6,453	275	4.5
재정이전	1,551	3,177	1,657	3,228	1,663	3,328	100	3.1
지역사회		957	0	626	0	0	-626	-100
Quebec 주 CHT, CST 운영비 용대체지급 ¹⁾	-224	-448	-246	-492	-263	-525	-33	6.7
소계	4,271	9,575	4,499	9,540	4,626	9,256	-284	-3.0
기타 이전지출								
농업 및 농식품	83	171	60	141	64	119	-22	-15.6
외교·통상	457	588	484	533	188	432	-101	-18.9
보건	235	430	231	449	295	474	25	5.6
인적자원 및 사회개발	92	229	254	413	182	338	-75	-18.2
인디언 및 북부지역 개발	305	993	375	1,084	329	1,129	45	4.2
산업	50	191	78	250	55	291	41	16.4
기타	1,566	2,708	790	1,559	508	1,094	-465	-29.8
소계	2,788	5,310	2,272	4,429	1,621	3,877	-552	-12.5
기타 프로그램 지출	5,329	10,549	5,811	11,070	5,945	11,225	155	1.4
국영기업	615	1,414	787	1,702	939	1,766	64	3.8
국방	1,407	2,709	1,296	2,652	1,447	2,685	33	1.2
부처별 사업비	3,307	6,426	3,728	6,716	3,559	6,774	58	0.9
총 프로그램 지출	18,138	36,917	18,152	36,650	18,140	35,933	-717	-2.0
이자지출	2,494	5,154	2,423	4,977	3,000	5,649	672	13.5
총 재정지출	20,632	42,071	20,575	41,627	21,140	41,582	-45	-0.1

주: 1) 다른 주정부와 다르게 Quebec주에서는 CHT와 CST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에서는 현금대신 연방 개인소득세율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지출로 표기. 원명칭은 Alternative Payments for Standing Programs.

자료: The Fiscal Monitor(Dept. of Finance), 2010.5월, 2011.5월

4. 국가채무 동향(2011년 3월 말 기준)

- 2011.3.31 기준 연방정부의 비금융자산을 차감한 누적채무는 5,514억CAD로 전년 대비 6.2% 증가
 - 총부채는 9,127억CAD로 작년대비 3.3% 증가
 - 시장성 채권 및 이자부 부채가 각각 478억CAD, 367억CAD 증가
 - 자산과 부채를 합한 순채무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6,165억CAD

〈표 3-V-4〉 연방정부 채무

(단위: 백만CAD, %)

구분	09.03.31 (누계)	10.03.31 (누계)	11.03.31 (누계)	전년 대비 증감	
				변동분	%
부채					
미지급 부채 계정	113,999	120,525	113,245	-7,280	-6.04
이자부 부채					
만기 전 채무					
자국통화표시 채권					
시장성 채권	295,186	367,962	415,785	47,823	13.0
Treasury bills	192,275	175,849	162,949	-12,900	-7.3
Retail debt	12,532	11,855	10,101	-1,754	-14.8
기타	523	452	27	-425	-94.0
소계	500,516	556,118	588,862	32,744	5.89
외국통화표시 채권	10,381	8,243	7,629	-614	-7.5
이종통화 스왑 재평가 계정	3,690	-4,233	-5,090	-857	20.3
미상각 채권 할인액/할증액	-4,751	-5,092	-4,485	607	-11.9
자본리스와 관련한 채무	4,184	4,090	3,929	-161	-3.94
만기 전 채무 소계	514,020	559,126	590,845	31,719	5.7
연금 및 기타 채무					
공공부문 연금	139,909	142,843	145,835	2,992	2.1
기타 근로자 및 보훈급여	50,311	54,227	56,922	2,695	4.97
기타 채무	5,923	6,587	5,870	-717	-10.9
연금 및 기타 채무 소계	196,143	203,657	208,627	4,970	2.5
이자부 부채 소계	710,163	762,783	799,472	36,689	4.9
총 부채	824,162	883,308	912,717	29,409	3.33
금융자산					
현금 및 미수금 계정	122,147	101,205	89,986	-11,219	-11.1
외국환 계정	51,709	46,950	48,507	1,557	3.3
차관, 투자 및 선급금(순 급여)	125,093	152,681	157,761	5,080	3.3
총 금융자산	298,949	300,836	296,254	-4,582	-1.5
순채무	525,213	582,472	616,463	33,991	5.9
비재정자산	61,503	63,375	65,083	1,708	2.7
연방정부 채무(누적 적자)	463,710	519,097	551,380	32,283	6.2

자료: The Fiscal Monitor (Dept. of Finance), 2010. 3월, 2011. 3월 (업데이트)

VII

호주 (2011년 5월 기준, FY2010-11: 2010.7~2011.6)

1. 세입 및 세출 동향

□ 2010.7~2011.5월 예산적자는 약 430억호주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6억 4,100만 호주달러) 증가

○ 재정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2%(88억호주달러) 증가하고, 재정지출은 4.7%(143억호주달러) 증가하여 재정지출 증가분이 수입 증가분보다 큼

□ 미래기금(Future Fund)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1.0%(39억호주달러) 증가한 390억호주달러

□ 2011년 5월(누계기준) 순채무는 790억호주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10.3% 증가

〈표 3-VII-1〉 일반정부 주요 재정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누계 ('08.7~'09.5)	5월	누계 ('09.7~'10.5)	5월	누계 ('10.7~'11.5)	누계 기준	%	FY2010~11
수입	25,015	275,929	23,444	273,326	27,202	282,129	8,803	3.2	310,779
지출	27,656	285,919	30,167	303,745	29,524	318,101	14,356	4.7	350,803
순운영수지	-2,641	-9,990	-6,723	-30,419	-2,321	-35,972	-5,553	18.3	-40,024
순자본투자	553	2,343	738	4,728	581	3,029	-1,699	-35.9	5,713
재정수지 ¹⁾	-3,194	-12,333	-7,461	-35,147	-2,902	-39,001	-3,854	11.0	-45,737
예산수지 ²⁾	-4,605	-21,100	-5,232	-42,341	-2,199	-42,982	-641	1.5	-49,369
총자산	-	299,168	-	327,246	-	332,365	5,119	1.6	323,027
총부채	-	247,495	-	337,935	-	408,190	70,255	20.8	391,297
순채무	-	-19,405	-	37,551	-	78,971	41,420	110.3	82,381

주: 1) 재정수지(fiscal balance) = 순운영수지(수입 - 지출) - 순자본투자 (발생주의 기준)

2)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 재정수지(순운영수지 - 순자본투자) - Future Fund 수익금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2. 세목별 세입동향

□ 2010.7~2011.5월까지 총재정수입은 조세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3.2%(88억호주달러) 증가한 2,821억호주달러

- 소득세는 전년 대비 6.6%(116억호주달러) 증가한 1,865억 호주달러
- 간접세는 재화 및 서비스세(GST), 소비세 증가의 영향으로 5.0%(38억호주달러) 증가
- 배당소득이 74.1%(56억호주달러) 크게 감소하여,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8.1%(65억 호주달러) 감소

〈표 3-Ⅶ-2〉 일반정부 재정수입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 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누계 ('08.7~ '09.5)	5월	누계 ('09.7~ '10.5)	5월	누계 ('10.7~ '11.5)	누계 기준	%	FY2010 ~ 11
총재정수입	25,015	275,929	23,444	273,326	27,202	282,129	8,803	3.2	310,779
조세수입	23,697	257,327	21,778	250,044	25,709	265,395	15,351	6.1	290,298
소득세	16,978	185,135	14,406	174,971	17,623	186,542	11,571	6.6	206,040
개인소득세	13,248	114,697	12,659	112,049	14,690	124,198	12,149	10.8	136,330
원천징수	9,702	108,145	10,351	109,981	11,346	119,536	9,555	8.7	131,320
기타 개인소득세	5,020	29,420	3,707	25,375	4,682	28,560	3,185	12.6	29,860
환급	1,475	22,869	1,399	23,308	1,338	23,898	590	2.5	24,850
기타소득세	3,730	70,438	1,747	62,922	-	-	-	-	-
법인세	3,000	55,730	1,495	51,739	2,052	51,353	-386	-0.7	57,880
국민연금기금	453	9,250	-31	6,291	537	6,786	495	7.9	7,220
석유세	-9	1,930	8	1,272	67	806	-466	-36.6	940
간접급여세	286	3,529	275	3,622	278	3,399	-223	-6.2	3,670
간접세	6,720	72,192	7,373	75,073	8,086	78,853	3,780	5.0	84,258
재화·서비스세(GST) ¹⁾	3,757	40,673	4,252	43,523	4,860	45,675	2,152	4.9	48,180
소비세	1,939	22,214	2,296	22,591	2,289	23,782	1,191	5.3	26,060
관세	483	5,776	445	5,271	501	5,349	78	1.5	6,040
기타 간접세	541	3,529	270	2,573	322	2,913	340	13.2	2,758
세외수입 ²⁾	1,318	18,602	1,666	23,283	1,493	16,734	-6,549	-28.1	20,481
재화 및 서비스매출	536	5,714	695	7,046	723	7,189	143	2.0	8,058
이자	277	4,728	422	4,071	291	2,943	-1,128	-27.7	5,277
배당소득	104	3,190	112	7,500	244	1,941	-5,559	-74.1	1,839
기타	401	4,970	437	4,666	235	4,661	-5	-0.1	5,307

주: 1) 재화·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 GST) 항목은 FY2009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이전에는 기타간접세(Other indirect tax)에 포함되어 있음

2) 세외수입 소계는 하위분류 값을 합산함. 단위 미만 반올림으로 합계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3. 기능별 세출동향

- 2011년 5월(누계) 총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7%(144억호주달러) 증가한 3,181억호주달러
 - 공공서비스, 의료, 사회보장 및 복지가 재정지출의 주된 요인임
 - 공공서비스(전년 대비 27억호주달러, 16.0%), 의료(전년 대비 32억호주달러, 6.9%), 사회보장 및 복지(전년 대비 63억호주달러, 6.2%) 증가
 - 이외에도 기타목적(전년 대비 87억호주달러, 16.1%)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정부 간 이전은 전년 대비 32억호주달러(7.7%) 증가
 - 교육(43억호주달러, 12.7%), 주거 및 지역사회 개선(29억호주달러, 37.5%), 연료 및 에너지(19억호주달러, 25.6%)부문 등은 감소

〈표 3-Ⅷ-3〉 일반정부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5월	누계 ('08.7~ '09.5)	5월	누계 ('09.7~ '10.5)	5월	누계 ('10.7~ '11.5)	누계 기준	%	FY2010 ~ 11
공공서비스	2,022	14,707	2,075	16,610	2,233	19,261	2,651	16.0	21,239
국방	2,037	17,007	1,674	17,553	2,145	18,441	888	5.1	20,136
공공질서 및 안전	565	3,114	236	3,238	310	3,285	47	1.5	3,943
교육	3,398	19,158	2,186	33,344	1,679	29,093	-4,251	-12.7	32,555
의료	4,361	43,788	4,445	46,558	4,729	49,759	3,201	6.9	57,240
사회보장 및 복지	10,132	111,195	8,788	100,956	9,518	107,246	6,290	6.2	116,739
주거 및 지역사회개선	1,331	4,965	1,694	7,721	1,852	4,828	-2,893	-37.5	5,741
여가 및 문화	6	1,611	214	2,512	309	2,542	30	1.2	3,342
연료 및 에너지	384	4,910	478	7,516	507	5,589	-1,927	-25.6	6,269
농업, 산림, 어업	434	2,237	286	2,444	248	2,201	-243	-9.9	3,067
광업	288	1,729	254	2,000	131	1,822	-178	-8.9	2,039
교통 및 통신	841	4,746	651	4,061	379	3,698	-363	-8.9	4,748
기타 경상비	739	6,197	538	5,390	845	7,802	2,412	44.7	9,055
기타 목적	1,118	50,556	6,648	53,842	4,638	62,532	8,690	16.1	64,692
공공채무 지급이자	215	2,557	640	5,685	859	8,422	2,737	48.1	9,286
연금 지급이자	451	5,772	750	6,098	587	6,445	347	5.7	6,958
정부간 이전	452	42,148	5,245	41,934	2,611	45,179	3,245	7.7	48,919
자연재해 구조비용	0	59	13	125	581	2,486	2,361	1,888.8	997
긴급예비비 ¹⁾	0	20	0	0	0	0	0		-1,468
총지출	27,656	285,919	30,167	303,745	29,524	318,101	14,356	4.7	350,803

주: 1) 긴급예비비(contingency reserve)에 자산매각 관련지출 포함

1. 단위미만 반올림으로 표의 수치합계와 총지출 값이 다를 수 있음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5월 보고서

4. 국가채무 동향

□ 2011년 5월 말 일반정부 순자산은 전년동기 대비 609.4%(651억호주달러) 감소한 758억 호주달러 적자 기록

○ 자산은 51억호주달러(1.6%) 증가하였으나, 부채가 703억호주달러(20.8%) 증가하여 순자산 감소

– 부채 중 연금 등 의무지급금을 제외한 이자발생 부채규모는 2,129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8%(501억호주달러) 증가

□ 2011년 5월말 순채무 규모는 790억호주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10.3%(414억호주달러) 증가 (채무구조 악화)

〈표 3-Ⅶ-4〉 일반정부 채무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FY2008-09	FY2009-10	FY2010-11	전년대비 증감		연간 전망치
	2009.5.30.	2010.5.30.	2011.5.30.	증감액	%	2011.6.30.
자산	299,168	327,246	332,365	5,119	1.6	323,027
금융자산	207,352	229,303	228,167	-1,136	-0.5	214,649
비금융자산	91,816	97,943	104,198	6,255	6.4	108,378
부채	247,495	337,935	408,190	70,255	20.8	391,297
이자발생부채	107,163	162,732	212,858	50,126	30.8	211,224
예치금	329	233	154	-79	-33.9	232
정부채권	98,968	150,603	202,370	51,767	34.4	200,569
차입	6,921	11,040	9,420	-1,620	-14.7	9,633
기타	944	856	913	57	6.7	791
의무지급금	140,333	175,203	195,332	20,129	11.5	180,072
순자산 ¹⁾	51,673	-10,689	-75,825	-65,136	609.4	-68,270
순금융자산 ²⁾	-40,143	-108,632	-180,023	-71,391	65.7	-176,648
순금융부채 ³⁾	60,182	135,137	205,973	70,836	52.4	200,199
순채무 ⁴⁾	-19,405	37,551	78,971	41,420	110.3	82,381

주: 1) 순자산(net worth) = 자산 - 부채

2) 순금융자산(net financial worth) = 금융자산 - 부채 (비금융자산 제외)

3) 순금융부채 = 부채 - 금융자산 + 금융자산 중 기타공공부문투자

4) 순채무 = (예치금 + 선수금 + 정부채권 차입 및 기타 차입) - (현금 및 예금 + 선지급 + 투자, 차입 등)

자료: 호주 재무부(Minister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Australian Government Monthly Financial Statement' 2009~2011년 각 연도 5월 보고서